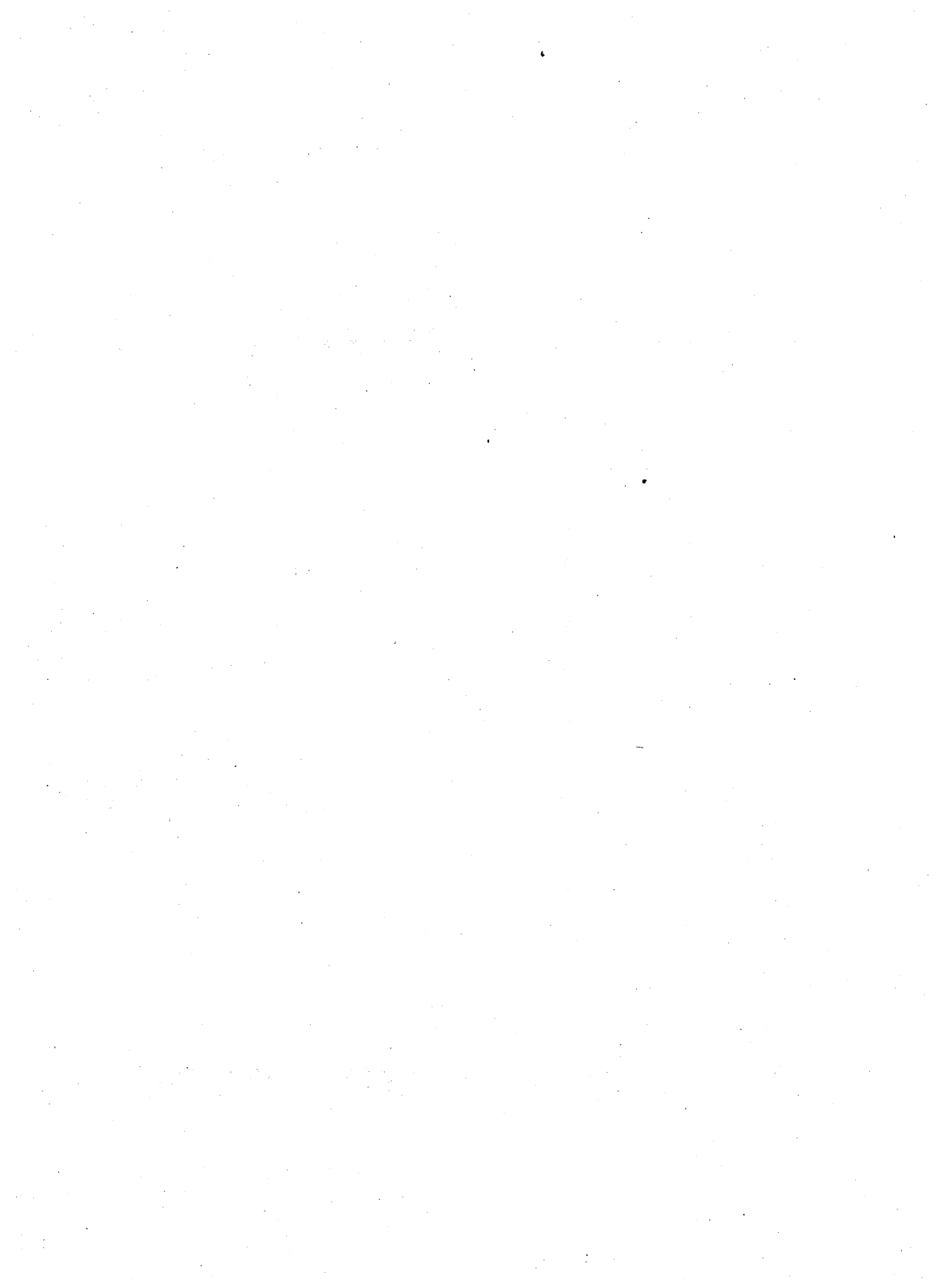


입양제도의 개선

1994. 12.

연구책임자 이준우 (수석연구원)
공동연구자 김정순 (선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제1편 입양제도의 개선

I. 문제의 소재	7
II. 각계 입법의견	13
1. 입양특례법 개정안 관련의견	13
2. 입양제도의 기본방향	15
3. 국내입양의 활성화문제	20
4. 완전양자제의 도입여부	24
5. 요보호아동의 입양방식	30
6. 사후관리	31
7. 입양의 취소와 파양	33
8. 장애아입양의 문제	34
9. 사회복지서비스 - 위탁보호사업, 아동복지 일반	36
10. 입적절차(호적법과의 관계)	38
11. 비밀입양실무와 불법개인입양의 문제	39
12. 기타 입양활성화를 위한 방안	43
III. 입법방향	45
1. 각계의견의 검토	45
2. 입법방향	52

〈참고자료〉

I. 입양, 요보호아동의 발생통계	61
1. 연도별 요보호대상자 발생상황	61
2. 미아발생 및 처리상황	61
3. 기아발생 및 처리상황	62
4. 국내외 입양 현황	62
5. 입양아의 발생요인별 분포	63
II. 아동복지시설 수용보호 현황	63
III. 완전양자법(시안)	64

제2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I.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중관련 입법의견	69
1.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중관련 입법의견목록	69
2.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중관련 입법의견요지	71
II. 최근입법의견 동향	82
1. 최근입법의견목록	82
2. 최근입법의견요지	87
III. 주요입법예고법률안	133
1. 주요입법예고법률안목록	133
2. 주요입법예고법률안내용	136
IV. 최신법령 목록	204

제 1 편

입양제도의 개선

I. 문제의 소재

입양의 문제는 사회가 아동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부모적인 책임을 지는 하나의 형태이다. 아동의 친가정이 부모사망·부모이혼·미혼모·혼외임신·경제적 파탄 등으로 해체되어 친생부모의 아동양육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지역사회가 아동에게 친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가정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양은 영구가정이 없는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하여 준다는 아동 중심적인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하는 아동복지사업으로서의 본질을 가지는 것이며, 아동이 없는 입양가정을 위해 아동을 제공하는 입양부모중심적인 사업은 결코 아니다.¹⁾

넓게 아동복지라는 관점에서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이 해체되어 아동의 친생 부모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양육보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회가 아동의 부모역할을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보호하는 것으로서 대리가정의 제공과 집단보호 시설 및 경제적·인적 지원이 행하여 진다. 대리가정의 제공에는 위탁가정과 입양가정의 형태가 있고, 집단보호시설로는 각종 보호·수용시설이 있으며, 경제적·인적 지원으로 저소득가정의 생계비지원이나 탁아서비스,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위해로부터의 보호 등이 있다.

입양은 이러한 아동복지시책 중에서 직접적인 대리가정의 제공을 통하여 아동의 생존·보호·성장발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물질적 자원과 정서적 자원을 성인에 의하여 제공하여 아동의 복지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입양의 본질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입양이 이와같은 이상적인 형태에 얼마만큼 근접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더구나 현대 입양법이 子本位의 입양법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家中心, 부모중심의 입양관행에서 양자 본위의 입양으로 전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겪고 있는 기아·장애아의 급증은 현대

1) 배태순, “兒童福祉 발전을 위한 國內入養法 改正 提案”, 『국회』 제307호, 1992.5., 88쪽.

적 입양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이혼, 미혼모, 각종 사고나 재해로 인한 요보호아동의 급증²⁾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종래의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의 이행, 개인적·이기주의 가치관의 팽배는 입양의 영역에 중대한 난관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고아가 많이 발생하고, 급격한 사회 변화 및 가치관의 변화로 棄兒와 婚外子의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이들 불우한 아동에 대한 인권사상이 고조됨에 따라 養子制度는 큰 변천을 겪게 되었다.³⁾

1차대전후 양자법의 입안 내지 개정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프랑스는 1923년 법에서 민법 제8장 양자에 관한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였고, 양자법이 없었던 영국과 소련이 1926년에 양자법을 제정하여 1927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독일도 1925년 이래 민법중 양자 및 사생아에 대하여 여러번 개정운동이 일다가 2차대전후 자를 위한 단행법규를 제정하였다.

양자제도도子を 위한 양자사상이 굳어졌다. 즉 영국 친자법은子を 위하여 (for the welfare of the infant)가 아니면 안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소련민법은「절대로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동민법 제57조)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를 위한 양자제도가 더욱 철저해지고 마침내 양자의 養家에서의 完全 摘出者化를 지향하는 완전양자제도가 출현하기에 이르렀다.⁴⁾ 미국(주에 따라

2) 보건사회부 통계(1993년)에 의하면, 입양아의 발생 요인별 분포를 보면 미혼모, 기아, 결손가정별 입양아의 수는 1986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경찰청의 통계(청소년백서 1993년)에 의하면, 연도별 요보호대상자 발생상황은 미아와 기아가 모두 1988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전체 입양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혼모 자녀는 1971년~1980년은 42.0%, 1981년~1985년은 65.4%, 1986년에는 80.2%, 1992년에는 84.0%로 나타나고 있다(보사부, 보건사회부 통계연보).

3) 외국의 양자법에 관하여는, 김우덕, “西歐諸國의 養子法에 관한 考察”, 부산여대 논문집 제 29집, 1990, 151쪽 이하; 김우덕, “완전양자 입법의 동향과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가족법학논총, 1991, 419쪽 이하; 이덕환, “완전양자”, 『고시계』, 92.7., 115쪽 이하; 천중숙, “養子法과 棄兒”, 한국민사법학의 현대적 전개, 박영사, 1991, 175쪽 이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분석(93-14), 53쪽 이하 등을 참조 바람.

4) 현대완전양자제도의 표본은 1926년의 영국양자법과 1939년에 개정된 프랑스의 양자법으로 볼 수 있다: 崔錦淑, “入養制度의 發展過程”, 이화여대 『사회과학논집』 제11집, 1991.12., 59쪽.

그 시행시기와 내용이 차이가 있음), 프랑스(1939년 準正養子·斷絶養子에서 1966년 完全養子로), 소련(1943년) 등의 국가에서 채용된 완전양자제도는 1960년 유엔의 주최로 개최된 유럽세미나에서 완전양자는 「양자법의 이상이라 기보다는 오히려 완전양자제도 없이는 진실한 양자의 복지목표는 달성할 수 없는 필수적인 제도」라고 정의하고, 각국이 이 제도를 채용할 것을 호소한 후 1967년 유럽양자협정에서 완전양자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그후 1973년 로마에서 열린 국제법학회에서 「입양의 국제사법상의 입법」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여러 경험과 실적이 결국 유럽각국의 양자법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유럽양자협정에 영향을 받아 완전양자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예로는 이탈리아가 1976년에 특별양자(adopzioni speciale)의 명칭으로 일종의 완전양자제도를 채용하고, 벨기에의 입양준정(legitimation par adoption), 1971년 스웨덴의 완전양자, 1973년 스위스의 완전양자, 1976년 영국의 완전양자(full adoption), 그리고 1976년 서독의 완전양자(Volladoption)의 채용을 들 수가 있다. 주요국가의 양자 현실이 종전의 전쟁고아 중심에서 탈피하여 현대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아동복지상의 문제, 즉 미혼모의 증가와 이혼 내지 사고 등으로 인한 요보호아동의 증가라는 질적인 변화를 맞이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적 적용이 아동복지 차원에서 연장아의 개방적 입양과 함께 영유아의 완전양자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입양에 관한 사회적 프로그램이 아동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공개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 양자제도의 재편과 정비는 비교적 공통적으로 행하여 졌다. 즉 첫째 완전양자화, 이는 친생부모와 친족관계를 법적으로 단절하고 양부모의 완전적출자가 되는 것이다. 둘째 미성년양자의 강화, 이는 성년양자의 후퇴라든가 성년양자의 비중의 상대적 저하를 뜻한다. 셋째 자의 보호의 철저, 이것은 친권의 권리적 제한의 면에서 현저하다. 예컨대, 법원에서 일방적인 유기선언이라든가, 생친의 입양동의권의 박탈에서 나타난다. 넷째 입양계약에서 관청선언형으로, 이것은 입양의 계약성의 후퇴와 입양의 아동보호수양제도로의 질적 전환을 의미하며, 입양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여의 강화를 의미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의 강화, 이는 입양알선기관의 충실을 전제로 한다.⁵⁾

5) 천중숙, 전개논문, 184~185쪽.

이상과 같이 현대양자법은 양자중심의 아동복지라는 차원으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가중심, 부모중심의 입양관과 현대적 의미에서의 양자를 위한 입양관이 혼재되어 있고 더구나 아직도 전자의 가치관이 훨씬 비중이 큰 현실에서 아동의 복지라는 차원에서 입양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실천방법론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舊民法下에서는 입양의 요건으로서 양자될 자는 양부와 동성동본인 남자로서 昭穆之序를 지켜야 하고, 1인에 한하였으며, 양친은 기혼남자만이 될 수 있었고 장남자의 타가입양은 금지되었으며, 사후양자와 유언양자가 인정되는 등 「家를 위한 입양」이라는 목표하에 입양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⁶⁾ 그러나 6·25이후 수많은 전쟁고아와 미망인의 발생으로 이들을 위한 입양사업이 1952년 10월 보건사회부훈령준칙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1961년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1976년 12월31일 「입양특례법(법률 제2977호)」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⁷⁾ 한편, 민법상의 양자제도는 제정민법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昭穆之序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나아가 異姓養子까지도 가능하며, 양친의 요건도 성년일 것을 요하는 외에는 제한이 없었다. 다만 구민법에서와 같이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의 타가입양은 금지되었고,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가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주상속을 위한 양자는 양부와 동성동본이어야 하며, 호주인 양자는 파

6) 우리나라의 완전양자제에 관한 민법시행 이전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대명률: 遺棄한 소아로서 3세 이하에 수양한 자이면 비록 타성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수양함을 聽許하고 바로 그 성을 좇게 한다(其遺棄小兒 年三歲以下 雖異姓 聽收養 卽從其姓) (戶律 卷第四 입적자법, 대명률직해, 법제자료지 제13집, 196면).

②고려: 양자는 원칙으로 동성자라야 입양하였으나 3세 이전의 기아에 대하여 적자를 삼을 수 있었다(文宗二十二年, 制, 凡人無後者, 無兄弟之子, 則收他人三歲前棄兒, 養以爲子, 卽從其姓, 繼後付籍, 已有成法, 其有子孫, 及兄弟之子, 而收養異姓者, 一禁: 고려사, 지권제38, 311면).

③조선: 3세전의 유기된 소아를 수양한 때에는 實子和 동일하다(無子息人 全爲繼嗣三歲 前節付及遺棄小兒收養子 卽同己子 雖無傳明文 其奴婢令全給: 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7월 갑술).

7) 최근 정부의 개정법률안 입법예고(94.9.1) 및 국회통과(12.16)로 공포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양을 금하고, 孀養子制度를 신설하여 여전히 「家を 위한 양자제도」라는 기본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이후 1990년1월13일 민법개정을 통하여 가를 위한 양자제도(사후양자, 서양자, 유언양자제도)를 폐지하였고, 호주의 직계 비속장남자의 입양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성양자를 허용하고, 호주가 된 양자의 경우도 파양이 가능하게 개정되었다. 이 민법개정은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규정하고, 부부공동입양원칙을 규정하여 그 동안 문제되었던 「家を 위한 양자제도」의 폐단에 관하여 많은 개선을 가져왔으나 적극적으로 「子の 이익을 위한 양자제도」에는 미흡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입양의 비밀성과 혼외출산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건강신생아만이 입양대상아동이 되며, 장애아동들이나 신생아가 아닌 연장아동들의 입양이 힘들고, 따라서 입양의 현대적 발전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입양부모중심적인 입양실무와 관행이 불식되지 않고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고아의 해외입양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반면에 국내입양신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입양이 오히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해방이후의 전쟁고아나 혼혈아의 입양을 위하여 시작된 해외입양이 이제는 국내입양으로 해결하여야 할 장애아 등의 棄兒를 여전히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입양정책과 입양부모들의 인식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입양실무에 있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①혈통에 의한 가계 계승 관습으로 인하여 혈통이 없는 요보호아동을 입양한다는 것은 어렵고(특히 장애아동, 연장아동), ②부부 또는 가족중심으로 입양을 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생겼을 때는 입양아동을 일방적으로 파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③대부분 양부모가 입양하는데 아동의 배경, 연령, 성별, 혈액형 등 지나치게 선별적이며 입양방법 또한 비밀입양이 대부분이다. 입양방법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나 인식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인데 부정적이고 편견이 있는 사회고정관념의 벽은 아직도 높다는 점, ④입양법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로 입양특례법 제5조의 입양취소청구의 訴와 제6조의 입양의 효력에 대한 조항은 양부모가 보호받을 수 없는 조항인 점, ⑤외국의 여러나라가 선택하고 있는 완전양자제도가 채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친생자로 허위출생신

고하는 형식으로 입양을 하고 있는 관행의 문제점, ⑥입양사업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상의 양육비, 의료비, 세제혜택 등은 입양부모들이 호적상에 친자로 입적한 결과 혜택을 받고자 하는 권리를 처음부터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것, ⑦국내입양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내입양 알선기관이 전국적으로 40개소를 넘고 있지만, 전문종사자의 부족과 알선기관간의 운영이 평균화되지 못하고 정부지원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상 미흡한 상태인 점, ⑧우리나라 입양사업이 기관을 통해 시작된 지도 30여년이 지났고 그 수도 대단히 많은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통계나 입양의 성공여부에 관한 사후관리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 점 등이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⁸⁾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입양으로 요보호아동을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당면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나 정책의 변화, 사회적 인식이 제대로 전환되고 앞으로는 여전히 입양의 모든 문제점은 사회의 큰 부담과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더구나 보건사회부가 1989년 입양사업 개선 계획으로 국내입양의 활성화와 1996년부터 국외입양의 중단을 발표하였다. 미혼부모의 자녀를 위한 복지대책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거나, 국민의 의식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 한, 1996년 이후에는 요보호아동의 대부분은 국내 보호시설에 강제적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다. 위탁보호사업⁹⁾과 국내입양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당면의 과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입양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다음의 쟁점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사·분석·검토하고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양자법의 기본방향, 2) 완전양자제의 도입여부, 3) 요보호아동의 입양방식 - 계약식, 알선식, 4) 입양당사자의 자격요건 - 양자될 자, 양친될 자의 자격, 5) 입양기관, 6) 사후관리, 7) 입양의 효력발생, 입양의 취소와 파양, 8) 장애아입양의

8) 박영옥, "국내입양에 관한 사회인식의 전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국내입양활성화세미나 주제발표, 1992.12.10.

9) 요보호아동의 보호시설수용보다는 위탁보호가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1990년부터 위탁보호사업을 실시하였다. 광주 28가정에 34명, 인천 18가정에 34명의 아동을 위탁보호하기 시작했으나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박영옥, 상계 "국내 입양에 관한 사회인식의 전환", 16쪽.

문제, 9)비밀입양의 문제, 10)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민법·호적법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현행 입양특례법과 민법 및 호적법 등 관련법령상의 규정과 개선점 및 개선방안을 살피고자 한다.

Ⅱ. 각계 입법의견

1. 입양특례법 개정안 관련의견

○보사부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하여, 양자로만 입적할 수 있도록 규정해온 것을 부모의 의사에 따라 친자 또는 양자로 입적할 수 있도록 하며, 성년이 된 입양아의 출생에 대한 알 권리의 인정, 양자관계를 끊는 파양의 조건 신설, 입양기관의 입양 전 양부모교육 및 입양후 입양아 사후관리의무 부과, 국민주택 분양 또는 임대시 입양가정에 대한 우선분양 등의 규정을 신설하기로 함(세계일보 94.8.6., 21면).

○중앙일보 사설

고아수출국이란 부끄러운 이름도 씻으면서 날로 늘어나는 棄兒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국내입양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5일 보사부가 마련한 「입양특례법 개정법률시안」의 취지에 우리는 공감한다. 개정안은 입양자녀를 친자로 입적시킬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혈통을 중시하여 왔기 때문에 현행법에도 입양의 경우는 양자로만 입적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 국내입양의 장애가 되어 왔다. 개정안이 입양가정에 대하여 국민주택분양 우선권을 주고, 양육비·의료비·교육비 등의 양육보조금을 주는 등 지원책을 새로 마련한 것도 큰 진전이다. 그러나 빈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복지재정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찾고, 실제로는 그러한 지원을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집중시키는 게 현실적일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지닌 결함도 국내에서는 거

의 없다시피한 장애아동의 입양장려방안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장애아동의 입양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더 보완해야 한다(중앙일보 94.8.6., 3면).

○서울신문 사설

보사부가 마련한 「입양특례법 개정법률안」의 기본방향은 잘 된 것이라고 우리는 본다. 입양아도 친자로 입적시킬 수 있게 하고 입양가정에 국민주택우선분양권과 양육비·의료비·교육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해주며 가정위탁보호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등 개정내용은 부진한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친자입적제 도입은 국내입양의 걸림돌을 제거한 것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현행법은 양자를 호적에 친자로 입적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국내입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입양이라는 부담감없이 타인의 아동을 길러봄으로써 입양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입양확대에 꼭 필요한 제도다. 이 제도의 적극적 활용은 입양에 대한 우리사회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바꾸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양아의 사후관리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은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 공개입양보다는 비밀입양을 선호하는 우리사회의 분위기탓이긴 하겠지만 최소한 1년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입양가정에 대한 사전 입양준비 교육의 강화와 관련업무를 담당할 인적 자원의 양성방안도 마련하고 입양기관 이외의 기관을 통한 불법입양의 방지 대책도 보완되어야 한다.

한편 당국이 96년부터 해외입양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아동은 집단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요보호 아동의 64%가 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전체 입양아중 국내입양 비율은 33%에 불과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고아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벗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양정책은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행복한 삶과 장래성을 위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서울신문 94.8.7., 3면).

○정기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야 함을 천명하는 「가정보호 우선

의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의 입양촉진 책임과 국민의 협조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양자」로만 입적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허위출생신고를 통해 친자로 가장하는 사례가 많은 바, 親子 또는 養子 중 택일해 입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야 한다.

입양특례법 개정시안의 주요내용은 1)가정보호 우선의 원칙을 명시하고, 2) 국내입양절차를 합리화하여 호적법에 따라 양자 또는 친생자로 신고할 수 있게 함, 3)기관입양만을 인정하고,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하며, 5)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6)입양기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7)轉院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정기원, “입양특례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입양특례법 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994.6.14).

2. 입양제도의 기본방향 - 해외입양의 중단

○보사부

- 보사부는 고아수출국 1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하여 96년부터 고아·미아 등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전면 중단하고 앞으로 국내입양을 실행하는 가정에 대하여 소득세 인적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등 국내입양활성화대책을 마련함.

①국내입양을 하는 가정에 대하여는 교육비공제, 국민주택우선분양, 공직자의 경우 가족수당·학비보조수당 지급 등의 혜택을 주며, ②국내입양 알선기관을 확대지정하고 인건비·운영비를 정부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한편, ③양부모의 연령자격기준도 종전 45세이하에서 50세이하로 늘리고 불임부부의 경우도 결혼 후 3년이 지나면 입양자격을 주던 것을 3년이내에도 입양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함. ④「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정보호원칙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시설수용을 가급적 피하기로 하고 가정위탁보호제도를 활성화시키기로 함(경향신문 90.3.13., 19면).

- 해외입양감소현상은 생활여건과 교육수준향상으로 이혼모와 기아발생이 줄어든 데다가 최근 해외입양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대두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96년 이전에 해외입양은 자연히 중단될 전망이다(보사부관계자, 한국일보 90.2.14., 18면).

- 해외입양제도의 대안으로도 가정위탁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85년부터 소요자금을 국내입양기관지원예산에서 충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해온 시범사업을 정식예산사업으로 확대시키기로 방침을 정함. 91년에 우선 520명의 어린이를 일반가정에 위탁양육시킨 뒤 순차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며, 양육비는 1인당 월 4만5천원씩 지급하기로 함. 보호가정은 위탁아동과 연고관계가 있는 가정을 선택하되,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자녀양육의 경험이 있는 집을 선정하게 할 방침임(조선일보 90.7.30., 14면).
- 국내외 입양이 함께 줄어드는 것은 무엇보다 고아가 줄기 때문이며 이는 여권신장과 여성취업기회 확대 등 사회여건의 변화 때문에 미혼모들이 친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국민일보 92.1.27., 19면).
- 최근 국내입양이 1,154건(93년)에 머물러 절반이하로 격감하고 있는 바 기·미아 등 입양대상 아이들의 숫자가 계속 줄고 있는데다 이들마저 미숙아나 장애아들이 주류를 이루어 양부모들이 입양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96년부터 장애아동을 제외한 해외입양을 금지하기로 한 기존방침을 수정하기로 함(경향신문 94.5.6., 21면).
- 입양대상 아동을 국내입양으로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양중단 조치는 아동들이 건전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며, 최근 2년간 장애아의 국내입양 실적이 전무한 형편에서 일부 아동만 국외입양을 허용할 경우 비인도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아 및 혼혈아를 제외하고는 96년부터 국외이양을 전면중단키로 한 지난 89년의 결정을 철회, 모든 아동의 해외입양을 계속 허용하기로 함(조선일보 94.8.6., 22면).

○외무부

매년 4천여명에 이르고 있는 해외입양아 수를 오는 95년까지 매년 10~20%씩 줄인 후 96년 이후에는 이를 완전 중단할 방침임(국회 외무위 제출자료, 동아일보 90.11.28., 18면).

○정기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993년에 입양된 어린이는 모두 3,444명(국내입양 1,154명, 국외입양 2,290명)으로 해마다 발생하는 3,500여명의 입양대상 아동에게 국내의 입양가정을 찾아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며, 국내의 입양가정을 찾지 못한 아동은 국외입양의 금지정책에 따라 국내의 보호시설에 수용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가정보호 우선의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이 되고, 특별한 보호나 치료를 요하는 아동(예, 장애아동 등)을 국외입양금지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체면을 더욱 손상시키고 있으므로 국외입양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문화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되지 못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국내의 시설보호보다는 국외입양이 우선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정기원, 전제 “입양특례법 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 21~22쪽).

○서울신문 칼럼

6.25로 인한 고아들의 해외 입양은 자연스런 인도주의 정신의 발로였다고 하겠다. 특히 천대받기 십상인 혼혈고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 것... 그것이 시일이 흐르면서 많이 변질되어 온다. 고아가 아닌 기아를 「처분」하는 인상이기 때문이다. 입양 알선기관에서 입양아 확보 경쟁을 벌여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을 정도다. 정부의 해외입양 폐지는 앞당길수록 좋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 「파이한 혼혈아」에 대해서도 배려해 볼 수 있어야 하겠다. 그들은 베트남에 있는 한국계 2세로 줄잡아 5천명이다(서울신문 90.12.10., 1면).

○세계일보 사설

당국의 집계로는 지난 85년에 1만4천여건이었던 기아가 지난해에는 4천2백여건으로 5~6년사이 해마다 30%이상씩 감소추세를 보이고, 미혼모 역시 89년에 6천2백여명으로 85년의 절반정도로 줄어들긴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기아와 미혼모에 의한 사생아들 가운데 많은 수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해 적절하고 장기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악한 범죄자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사실이다. 버

려진 어린이를 입양시킨 후 모진 가혹행위로 돈벌이를 해온 50대부부의 범행이 우리 사회의 어두움을 여실히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다(세계일보 91.10.15., 3면).

○조선일보 사설

- 40여년간이나 계속되어 온 고아들의 해외입양을 주무당국의 의지와 관계법규의 개정 그리고 세제상의 특혜만으로 중단시킬 수가 없다는 인식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관련 법규를 이용한 대책수립도 필요하겠지만 정부 자체가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여 고아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고 입양 이전의 고아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철저히 하지 않는 한, 고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해외입양 고아를 확보하기 위한 입양 알선기관의 과당경쟁을 철저히 방지함으로써 사생아들의 수를 줄여 나아가는 데 보사부와 관련 부처들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야만 한다. 작년말부터 보사부는 입양기관의 과당경쟁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인원과 예산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관계법규를 개정해서라도 고아를 확보하기 위한 출산의 경우는 당사자와 관련기관에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고아발생 원인을 하나씩 제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내입양의 확대이다. 어느 정도의 고아가 태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그 정도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해외입양을 96년도가 아닌 그 이전에라도 전면 금지시킬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조선일보 90.3.14., 3면; 90.11.27., 3면).

- 「고아수출국」의 불명예를 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입양대상자들의 「가정을 가질 권리」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국내 실정에서 별다른 대책도 없이 해외입양중단계획을 고집한다는 것부터가 무리이다. 입양대상 어린이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책임지고 양육해야 한다는 논자들의 주장에도 분명히 일리는 있다. 그러나 그 뜻과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실현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입양을 무조건 금기시하는 일부의 시각도 수정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인구과잉으로 해외이민을 적극 권장하는 우리의 실정에서

해외입양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 입양어린이들이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훌륭한 양부모를 만나 정상가정의 어린이들과 다름없이 성장토록 도와주려는 자세가 긴급하다고 본다(조선일보 94.6.13., 3면).

○한겨레신문 사설

해외입양 중지방침은 정부나 이 사회가 아이들을 우리 손으로 돌봐야 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이나 의지가 있는 연후에 결정되었어야 했고, 그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내입양의 걸림돌이 되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며,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특혜를 입양가정에 한시적으로라도 주고 법과 제도, 예산의 뒷받침을 얻어 당분간 아이들을 보호할 시설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니면 아기수출국 1위의 오명을 몇 해 정도 더 감수하더라도 해외입양 중단방침을 유보하는 방안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 이것이 이 사회와 나라가 못 거두는 아이들을 남이라도 잘 거두게 하는, 창피하지만 차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해외입양 중단방침 포기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한겨레신문 94.6.13., 3면).

○김진규(국민일보 논설위원실장)

「사랑」도 없고 정부적 지원도 시답잖은 마당에 「창피하다」는 이유로 해외입양을 중단하는 일이야말로 이만저만한 속단이 아니다. 국내입양의 길이 웬만큼 트여 「이제는 해외입양 안해도 되겠다」 싶을 때 그 문을 닫는 게 순리일 것이다. 해외입양을 오기로 막을 수는 없다. 누가 고아에게 돌을 던질 참인가(국민일보 93.11.2., 5면).

○변광수(외국어대 스웨덴어과 교수)

국가가 제도개선을 통한 고아 수용방법은 강구하지 않고 고아를 해외로만 내보내는 것은 국가의 1차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입양 양부모에게 세계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해외입양이 야기한 고아수출국의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국민일보 94.6.11., 19면).

○김금래(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우리나라의 입양조건이 외국보다 한결 까다롭고 사회적 의식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가 이같은 현실을 개선할 생각없이 해외입양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국가적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재산권, 혈통, 결혼후의 관계 등 사회의식 개선이 진행되어야 한다(국민일보 94.6.11., 19면).

○천종숙(국립경찰대학 교수)

현재 민법상 양자제도의 유형을 찾을 수가 없고 기아의 신분으로 하락하여 사회복지정책 속의 과제로서 외국에 입양하는 것에 그친다면 양자제도의 대의와 민법상의 법리도 현실에 타당한 규범으로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의 가정은 양자가 無要하다면 양자제도의 신분상·재산상의 효력을 개정하여 대의의 입양보다 대내적 면에서 각가정에서 자선적 의의에서 기아도 같은 형제자매로서 수양하여 前進國의 「貌」를 자랑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실천이념의 장이라고 보고 민법대의의 「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은 기아 출현의 사회현장부터 소각시키는 것도 보다 긴요한 일인 것 같다(천종숙, “양자법과 기아”, 한국민사법학의 현대적 전개, 박영사, 1991, 176쪽).

3. 국내입양의 활성화문제

○보사부

- 96년부터 해외입양이 중단됨에 따라 국내입양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양부모자격요건중 「학력수준 고졸이상」, 「부부간 연령차 10세 이내」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연령제한을 50세에서 55세로 확대하여 완화할 방침임. 국내입양을 신청해 오는 가정의 숫자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같은 자격기준 때문에 실질적인 입양률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다(조선일보 92.1.19., 18면).
- 국내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무주택인 경우 주택청약의 최우선순위를 부여,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입양부모가 원할 경우 입양아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생계비 및 교육비 등을 정부가 보조하도록 함. 또 입양장애아에 대해서는 입양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재활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임. 이는 국내입양부모의 연령을 55세로 상향조정하는 등 입양조건을 크게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이 늘지 않고 오히려 국내입양은 줄고 있으며 기아의 45%에 달하는 장애아에 대해서는 국내입양이 전무한 실정을 반영한 것임(국민일보 94.3.29., 19면).

○배태순(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 동안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의식도 변화되어 입양이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해 왔으나, 현실은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수가 오히려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매년 5,000명 이상의 가정이 없는 요보호아동들의 발생을 고려해 볼 때 국내입양 감소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부각된다고 하겠다.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의식변화에 의존하여 입양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즉 세월의 흐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일반의 입양에 대한 의식에 변화가 오면 국내입양도 자연히 발전되리라고 기대하는 소극적인 태도로써는 입양의 발전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30여년전인 1960년대나 현재의 1990년대의 입양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현재의 국내입양 양상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하겠다. 즉 입양을 원하는 거의 모든 한국 입양부모들이 30여년전과 마찬가지로 입양의 비밀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유형의 아동들인 건강신생아만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소극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입양이 발전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허망한 꿈에 지나지 않으며, 오로지 과감한 제도적인 변혁을 통해서만이 입양에 대한 의식변화나 입양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라 하겠다.

그 동안 국내입양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입양기관으로 인가받지 않은 병·의원, 조산소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개인입양이 가능했고 입양기관들의 폐쇄적인 입양처리 때문이다. 쉽게 자녀를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인우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국내입양전문기관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

과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처지의 어린이를 위해 친가정을 대신 만들어주는 이른바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전국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배태순, “입양 활성화 위한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입양특례법 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994.6.10).

○국내입양기관

40세미만 부부가 국내입양신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부간 연령차가 10세 이상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양부모자격요건에 관한 보사부의 완화조치로는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국민일보 92.1.27., 19면).

○박영옥(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부장)

국내입양가정의 대부분이 불우어린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가정을 위해 입양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가정의 입양태도와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국내입양활성화를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다. 국내입양가정의 입양동기를 보면 불임(57%)과 가정화목(33.1%)이 주된 이유이고 불우아동복지를 위해서라고 대답한 경우는 0.2%에 불과하다. 강한 혈통의식으로 인해 국내 입양가정의 대부분이 3개월미만의 영아를 원하며, 선별입양과 비밀입양형식으로 친자입적 형식을 택하고 있다.

입양제도는 입양 어린이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입양 뒤 신체이상 발견되면 파악할 수 있는 현행 입양특례법을 어린이의 복지권 보장 쪽으로 바꾸고, 현재 비밀입양제도 때문에 입양 후 알선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현실도 개선, 입양기관에서 양부모와 입양아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박영옥, “국내입양에 관한 사회인식의 전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국내입양활성화세미나 <1992.12.10> 주제발표, 8~15쪽).

○세계일보 사설

오늘날의 선진형 공공부조는 고아원이나 정박자수용시설을 관리하는 집단중심의 「그룹워크」에서 서비스대상자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케이스워크」로 바뀌고 있다. 우리도 이 제도를 확충해 나아가야 한다. 고아들을 집단수용하고 보호

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아를 미연에 방지하는 모자보건이나 미혼모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고아의 해외입양 대신 국내 입양을 권장해야 한다. 이같은 대책은 서비스대상자에게 유연하게 접근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이어야 하며 국가예산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에 봉사하는 전문가가 말하자면 케이스워커 곧 사회복지사다. 이들은 미혼모나 심신박약자 내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적 약자로 하여금 자활이나 갱생을 통해 정상인으로 복귀하는 일을 돕는다. 그동안 공공부조는 고아원, 정박차수용시설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근소한 급부가 전부였다.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전혀 배출되지 않아 각종 복지시설을 종교단체에 위탁, 운영케 하는 실정이다. 복지행정 전문종사자를 대량으로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세계일보 91.11.11., 3면).

○한국일보 사설

국내입양이 더욱 어려운 까닭은 지나친 입양 비밀주의와 장애아 기피현상 때문이다. 엄격한 혈연의식 탓으로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우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여긴다. 출산과 동시에 입양순서를 밟는 영아는 흔히 미혼모에게서 생긴다. 입양기관이 그들을 잠시 보호해 주지만 근본대책이 아쉽다. 해외입양 중단 이후를 대비함도 중요하거니와 지금부터라도 되도록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우리 자식들을 우리가 키우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미혼모 보호시설을 늘리고 적극적인 생계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한국일보 93.8.9., 3면).

○카트린느 슈발리에(프랑스 르망시 거주 간호사)

프랑스에 살기만 할 뿐 나의 근원은 어디까지나 한국입니다. 우리 입양아들은 자기 땅의 자녀를 스스로 거두지 않으려는 한국 국민에게서 비접함을 느낍니다. 이제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스스로 입양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강렬하진 않지만,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조선일보 94.5.29., 27면).

4. 완전양자제의 도입여부

○김우덕(부산여자대학 교수)

결국 오늘날 각국의 양자입법은 입양요건의 완화 내지는 단순화에 의하여 입양의 성립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공적기관의 관여로 입양의 남용을 방지하고 일단 성립한 양친자관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효과를 부여하려는 방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완전양자만이 아무런 모순이 없는 유일한 양자형태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며 이런 점에서 오늘날 일부 국가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양자제도를 인정하여 이를 각기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양자제도는 시험기간형이고, 서독은 법원허가형, 프랑스는 양자이익형, 스위스는 연령제한형, 소련은 국가기관관여형, 미국은 복지기관의 양친조사형이라고 할 수 있다(김우덕, “完全養子 立法의 動向과 그 問題點에 관한 考察”, 박병호교수화갑기념(1) 가족법학논총, 1991, 444쪽).

○배태순(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입양의 세 주역과 연관된 입양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에, 입양부모는 입양아의 생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며, 입양을 입양으로서 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한 인간의 출생에 관한 진실은 도덕적 차원에서도 왜곡되지 말아야 한다. 입양과 출산의 차이는 근본적인 것이며 결코 동일시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나아가 입양은 입양으로서 밝혀져야 하며 입양아에게 입양사실을 밝히지 않는 비밀입양실무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는 국내입양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배태순, 전계 “입양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8~9쪽).

○정기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국내 입양아의 80%이상은(93년)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며, 대부분의 양부모들은 입양아를 양자 아닌 친생자로 호적에 올리고 있다. 양자를 친생자로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한국일보 94.5.5., 17면).

○김주수(연대대 법학과 교수)

완전양자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인위적으로 단절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를 얻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양자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호적제도의 체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가로놓여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 외국이 비교적 간단하게 생가부모와의 관계단절을 인정하고, 그 때문에 생기는 신분등록부의 형식과 신용의 희생을 감수한 것은 양자로 되는 자의 이익(행복)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며, 거기에는 아동의 인권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인권존중사상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도 진정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완전양자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①특별양자의 경우 생가부모와의 단절이라는 점에서 볼 때에 일정한 요보호아동에 한정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②양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부부공동입양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 민법은 부부공동입양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민법 제874조), 처가 있는 자가 양자를 하거나 양자가 되는 때에는 처와 공동으로 하도록 하여, 夫가 주도적 입장에서 서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부평등하게 입양당사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③양자를 양육하는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혼인기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④이미 양친에게 친생자가 있다는 것은 양자에게 형이나 누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나쁠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양친도 양육의 경험이 있으므로 오히려 양자의 양육상 이점이 많기 때문에, 특별양자의 경우에 無子를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⑤양친의 연령조건은 특별양자를 채용한다면 양부모의 육아·감호교육능력 등을 고려할 때에 배우자의 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5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⑥양친의 최고연령의 제한은 통상의 자연혈족관계를 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0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⑦우리 민법과 입양특례법은 연령차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 없으나, 완전친생화를 지향하는 특별양자에서는 연령차의 요건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연령차이는 통상의 친자간의 연령차나 혼인적령을 고려할 때에 18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자를 양자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령차요건의

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⑧입양절차상의 문제: 국외입양 뿐만 아니라 국내입양에 있어서도 특별양자에 대해서는 입양신고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적 구성을 지양하고, 입양을 司法上의 행위로 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성립요건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미성년자의 보통양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⑨자, 부모·법정대리인 등의 동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의를 철회는 가정법원의 허가제도를 신설할 경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전 또는 일정한 기간은 철회를 인정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⑩입양동의권의 박탈: 부모가 6개월간 부모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행할 수 없을 때와 같이 자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입양동의권의 박탈이나 친권정지의 조치는 필요할 것이다.

그밖에 모의 동의는 출산 후 6주간내에는 수리되지 않도록 제한할 것이며(유럽양자협정 제5조제4항 참조), 입양의 성공을 위한 시험동거기간을 충분히 두어야 하며, 혼인장애를 제외하고는 친가와의 법률관계는 단절되어야 할 것이다. 양친에게 입양아의 명명권을 인정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하며, 입양기록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것도 성년이 된 입양아에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파양의 제한규정도 필요하다(김주수, 한국가족법과 과제, 삼영사, 1993, 621~632쪽).

○정희근(동아대학교 법과대 교수)

세계사적 경향에서 보거나 매년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할 때에 양친의 적출자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양자실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금이야말로 완전양자법을 채용하여야 할 시기로 생각된다.

완전양자를 위한 입법상의 문제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①實親側과 법률상 단절되며 따라서 자로부터의 또는 자에 대한 認知의 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 등은 일절 인정되지 않으나, 다만 혼인장애(근친혼 금지)는 존재한다.

②양친의 적출자로 되는 시기: 입양은 입양신고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나, 완전양자는 양친의 호적에 양친의 자로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출생한 때에 소급하여 당연히 적출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프랑스의 완전양자는 적출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지만 그 효과는 입양신고일로부터 발생하고, 출생일에 소급하

지 않는다. 따라서 프랑스의 완전양자는 準正으로서의 효력에 가깝다(프랑스 민법 제355조)).

③자의 요건: 3세전의 유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되는 경우는 5개월 미만의 유아로서 호적을 갖지 않는 경우에만 국내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양자로 될 자는 棄兒,孤兒,親을 알 수 없는 자에 한정할 것인가, 또는 親에 의한 '유기'가 선고(또는 허가)된 자, 적출이 아닌 자, 인공수정자 등에 한정할 것인가 등도 문제가 된다. 입양특례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및 인공수정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④양친의 요건: 양친은 법률상의 부부로서 혼인후 5년 이상을 경과하고, 혈연상의 實子가 없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호적상에서도 '양자취급'을 하는 단절양자의 경우에는 독신자도 양자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장은 없을 것이다. 완전양자는 적출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자연적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또한 혼인 후 5년이 경과될 것을 감안하면 양친과 양자의 연령차이는 2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입양절차상의 문제: 요보호아동의 양자입양은 사적 계약 관념을 폐기하고, 공적 알선과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성립하는 子の 보호수용(양자수용)의 일체도로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는 구미와 같이 양자협회라든지 기타의 결연시설의 설치와 그들 시설에 대한 공적 면허의 부여가 바람직하다. 또한 입양은 최종적으로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심판)에 의하여 성립한다. 자에게 實親이 있는 경우에는 입양에 즈음하여 그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子の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법원에 친권의 정지, 또는 친권의 강제박탈과 그 결연기관 등에로의 이행, 유기의 선고 등도 입법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입양특례법상의 친권상실선고도 좋은 예이다.

⑥親의 결연동의의 철회는 인정할 것인가? 가정법원의 결연허가의 심판전이거나 또는 일정기간 전에는 철회를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후회기간(délà de repentir)은 동의후 3개월이다: 프랑스민법 제348조의3제2항>. 그러나 3개월 경과 후라 할지라도 子가 결연을 위해 위탁(placer)되기 이전이면, 친자신분의 회복청구를 할 수가 있다(동 제4항).

⑦과양의 금지: 양친측으로부터의 과양은 인정하지 않는다. 완전양자는 양친측에서의 자의 완전적출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연의 친자관계와 동일하게 생각하여 계약의 합의해제를 의미하는 소위 과양을 예상할 수는 없다.

⑧입양기록의 보존: 입양의 기록은 반영구적으로 이것을 보존하지만 비공개로 하고 단지 양친의 신청이나 또는 자가 성년에 달한 후 그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것을 열람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동시에 유전조사상 필요한 경우라든지 근친혼의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의 '實親을 알 권리'의 보장이라든지, 자의 면회권의 확보를 위해 예외로서 일정요건하에 그 열람권을 규정하여야 한다(1968년 캘리포니아주 건강안전법 개정: 실친의 성명과 주소를 알리는 것이 신청자의 '법적 권리의 확립에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을 허용하였다).

(정희근, “完全養子制에 관한 考察”, 한국가족법학회 학술대회(1990.8.24) 발표논문, 『가족논총』, 한국가족법학회, 1991, 803~807쪽).

○최금숙(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①입양제도의 방식: 완전양자제는 양자에게 양부모의 적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반면에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혈연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관념과 충돌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 養父母들이 입양시 입양신고가 아니라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친생부모가 자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로도 보여지므로, 養父母, 친생부모 및 입양되는 자와 養父母의 자 및 그밖의 친족들과의 상호 이해관계를 적당히 조절하여, 완전양자제를 도입하되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현행의 불완전양자제와 병행으로 완전양자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에 관하여, 영국은 완전양자제, 프랑스·독일 및 일본은 완전양자제(미성년양자제)와 불완전양자제(성년양자제)를 병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최근 영국에서는 12·13세의 양자에서 생부모측의 친족과의 단절이 문제로 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현실에서 영국에서와 같은 단일한 완전양자제를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현행의 불완전양자제와 새로운 완전양자에의 병존적 방법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②양자의 연령: 완전양자제를 도입한다면 이의 대상이 되는 양자의 연령은

영국 및 독일이 미성년자, 프랑스는 15세미만자, 일본은 6세미만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는 5세 내지 15세미만 사이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의 혈연중시의 사고를 참작하고 입양의 실태에서 입양대상아가 대부분 1세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완전양자의 대상이 되는 자의 연령은 구미제국에서보다는 좀 더 낮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에서와 같이 6세미만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영국에서 미성년자중 고연령(예컨대, 12세, 13세 등)인 자에게서 나타나는 문제 즉 생부모의 친족 및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그 기억을 지울 수 없는 경우 과연 생부모와의 관계를 모두 단절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비판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입양에서의 익명제: 완전양자에서 요구되는 것인데, 우리의 입양실태에서는 유아에 대한 대부분의 입양이 입양신고가 아니라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볼 때, 이 제도는 절실히 요청된다. 양부모의 익명이 법원에서 입양을 선고할 때에 요구됨은 물론, 법원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보관시키고, 호적에는 입양사실까지 비밀로 할 수 있는 제도도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양자가 생부모를 알기 원할 때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것을 요건으로 진실을 알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데, 그 연령은 15세 내지 18세가 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④민법과의 관계 및 양자의 성: 앞으로 완전양자제를 도입하고, 입양제도를 정비하게 되면, 입양특례법의 내용은 민법내로 조화를 이루며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양자의 성은 완전양자에서는 양부 또는 양모의 성을 따라야 할 것이고, 불완전양자에서는 당사자간의 선택에 맡겨두어도 좋을 것이다.

⑤단독입양의 허용여부: 현행 민법은 배우자 있는 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874조),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 있는 자라도 단독입양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민법개정이후 문제로 된 적모서자간 및 계모자간에서 적모 또는 계모가 夫의 혼인외의 자나 전처의 자를 입양함으로써 법적으로 모자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겠고, 처의 혼인외의 자나 前夫와의 자를 입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혼의 夫 또는 母가 자기의 혼인외의 자를 양자로 하는 것도 각국의 입법례와 같이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친생자를 양자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으나 자 또는 부모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⑥우리에게는 養父母가 될 자와 양자가 될 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합의형 입양제도만 있기 때문에 養子の 이익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法院宣言型(법원이 입양을 결정)의 입양제도도 요구된다.

(최금숙, “入養制度의 發展過程”, 『사회과학논집』제11집, 이화여대법정대, 1991.12., 73~75쪽).

5. 요보호아동의 입양방식 - 계약식, 알선식

○보사부

- 양친될 자가 요보호아동을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사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도록 함(입양특례법 개정안 제7조).
- 보사부장관은 입양될 아동이 미아 등인 경우에는 국외입양을 위한 해외이주허가를 제한하여 국외입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동 개정안 제18조제3항).

○김주수(연세대 법대 교수)

입양특례법은 입양알선기관이 입양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양친이 될 사람에게 동 법상의 자격요건을 상세히 조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입양특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에 의하여 입양할 경우 입양알선기관을 반드시 통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서류만 갖추면 양친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입양신고만 하면, 호적공무원에 의하여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입양의 효력이 생기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적 절차로서는 ‘양자를 천업·고역 기타 인권유린 우려가 있는 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양자될 자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면, 입양신고를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며, 입양알선기관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든가 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입양신고를 할 때에 ‘양친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서(입양특례법 제6조제2항 2호),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②아동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상담소 또는 아동입양위탁시설의 장, ③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알선기관의 장, ④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시행령 제3조)로 양친될 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다원화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형식화될 우려가 다분히 있다(김주수, 전거서, 615쪽).

○배태순(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산이 아닌 경우에는 오로지 공식적 입양에 의해서만 아동을 호적에 자녀로서 입적시킬 수 있게 허락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입양부모들이 굳이 입양절차를 밟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다. 입양부모가 입양기관의 도움으로 입양아에 대한 입양허가 신청을 자신이 거주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이 되어 입양아를 가정에 갖게 되고 일정기간의 입양사후지도를 거쳐 입양이 종결되면, 양친의 성과 본을 딴 새 출생증명서를 법원이 발급해 주도록 호적입적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불법적인 개인입양에 참여하거나 협조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또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배태순, 전거 “입양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10쪽).

○정기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현행 국내입양은 아동복지법에서, 국외입양은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알선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산부인과, 조산소 등)을 통한 불법적 개인입양 또는 아동의 '비밀거래'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아동의 '비밀거래'를 근절하고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관입양만을 인정하여야 함(정기원, 전거 “입양특례법 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 25쪽).

6. 사후관리

○보사부

입양기관의 장은 양부모에 대한 사전교육과 입양후 적응상태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입양의 내실화를 기함(입양특례법 개정안 제13조 제4항 및 제5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 후 6월간 양친자의 상호 적응상태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입양 아동은 국적취득시까지로 한다(입양특례법 개정시안 제19조제4항).

○황우익(홀트아동복지회 차장)

입양기관은 입양직후 양부모로부터 호적등본을 제출받아 친자신고여부를 확인할 뿐 아무런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입양가정이 입양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예 입양기관과 연락을 끊어버리는 실정이다. 입양후 사후관리도 법제화해야 한다(한국일보 94.5.5., 17면).

○박영옥(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부장)

국내입양은 비밀입양이어서 사후관리로는 6개월안에 입적된 호적을 1통 받는 것으로 종결되며, 양부모 대부분의 경우가 이사를 가거나 기관과 더 이상 연결을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입양부모들은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권을 가지는 유일한 부모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하며 입양아동에게 생부모의 존재를 알리려 하지 않는다. 부모로서의 정당성과 피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생부모는 양육보호권을 포기했다라도 입양아의 행방과 생·사여부, 성장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한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권익에만 치우치지 않는 입양실무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 입양부모들의 요구에 부합하여 비밀입양을 지원·보장해 주는 실무를 아동복지에 입각한 입양실무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 적절한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국내 사후관리(Post placement)도 법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박영옥, 전계 “국내입양에 관한 사회인식의 전환”, 15쪽).

○배태순(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입양사후관리규정은 입양후에 입양가정에서의 입양아의 복지에 관한 보고서를 입양전문 사회사업가가 입양부모 거주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입양의 마지막 단계인 입양종결이 되며, 이 공식적인 입양종결이 없이는 입양부모의 호적에 입양아가 자녀로서 입적될 수 없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입양사후지도와 감독은 첫째 단계로서 입양전문 사회사업가가 입양을 신청한 입양가정을 가정조사를 통해 승인을 한 후에 입양아의 양자될 자격에 관한 서류와 함께 입양부모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입양 부모 거주지의 가정법원에 입양인가를 신청하게 되며, 가정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입양을 심의한 후 입양을 인가하게 될 것이다. 둘째 단계로서 일단 입양인가가 되면 입양아동은 입양부모의 자녀로서 입양가정으로 들어 갈 수 있으며, 그 후 6개월간을 입양사후보고기간으로 설정하여 이 기간동안 입양사회사업가는 2회이상의 사후방문을 통한 사후보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이 보고서에 기초하여 가정법원은 입양종결을 시킴과 동시에 입양부모의 성과 본을 딴 입양아의 새 출생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세째 단계로서, 이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입양부모는 자신의 호적에 입양아를 친자로 입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때 입양사후보고기간은 '입양취소청구의 소' 제기기간과 일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입양사후지도에 대한 규정은 가정법원의 국내입양 관여가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배태순, 전제 "입양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12~13쪽).

7. 입양의 취소와 파양

○보사부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1년이 경과된 때에는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또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입양특례법 개정안 제10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여 「①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한 때, 또는 ②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성립된 입양을 양친자의 일방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파양청구시의 첨부서류로서 ①양자이었던 자가 제4조제1항 각호의 1(양자될 자격)에 해당되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

류, ②입양으로 인하여 말소된 양자의 원적 사본, ③입양기관이 발행한 입양사실 확인서, ④입양기관의 파악상담보고서를 첨부하게 하도록 규정함(입양특례법 개정시안 제15조).

○사회복지법인 합동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된 때에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앞의 약취 등의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인정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할 때에는 동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입양특례법 개정법률(안)의견서<4개 사회복지법인>, 2쪽).

○박인선(대한사회복지회 부장)

파양아가 전에는 2~3년에 한두명이 고작이었으나 작년에 입양기관에 접수된 건도 40여명에 이른다. 96년 해외입양 중단을 앞두고 국내입양의 비중이 커지면서 오히려 파양아가 늘고 있다.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입양했다가 나중에 재산상속 문제가 얽히자 파양한 사례도 있다(조선일보 92.5.11., 23면).

8. 장애아입양의 문제

○보사부

- 기아 가운데 33%가 장애아들이며 최근 입양신청을 하는 가정 가운데 장애아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96년이후에는 이들을 영·유아 보호시설을 거쳐 장애자 시설 등에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임(국민일보 92.1.27., 19면).
-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로 인하여 입양기관에서의 입양알선이 곤란하거나 파양된 아동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시설에의 입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행하도록 함(입양특례법 개정안 제16조).
-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하여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함(동 개정안 제24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행법상 장애 등으로 입양이 곤란한 아동에 대한 轉院의 규정이 없는 탓으로 이들을 시설에 보호의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관할 구역의 범위를 넘어서도 보호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양이 곤란한 요보호아동에게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에 「①입양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제2호에 의해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자의 입양알선이 불가능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고된 아동이 관할내 또는 관할외의 보호시설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입양특례법 개정시안 제22조)는 규정을 두어야 함.

○박영옥(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부장)

1976년까지 국내입양대상 아동이 입양을 원하는 가정수보다 많았던 관계로 신청가정의 99%가 입양을 할 수 있었지만 1985년에는 87.3%, 1990년에는 67.5%, 1991년에는 56%만이 국내입양을 할 수 있었다. 이는 국내입양이 가능한 가정의 수가 증가했다고는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관에 입소한 아동 중에서 국내입양대상 아동의 수가 적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 큰 이유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의료문제아동의 발생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의료문제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경우는 35년간 18명뿐이다.

입양특례법 제5조는 입양후 1년 이내에는 소송을 통하여 입양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내입양된 아동이 의료문제아동이나, 장애아동이 되었을 경우 파양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 아동을 사이에 두고 양부모와 기관이 아동을 주고 받고 한다는 것은 아동복지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입양된 장애 아동의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대책이 정부에서도 세워져야 한다(박영옥, 전 계 “국내입양에 관한 사회인식의 전환”, 8~10쪽).

○김도미니카(성가정입양원 원장)

중증 장애아동은 국내·국외 입양에서 대부분 배제된 채 보호시설에서 희망 없는 삶을 이어가게 된다. 이들은 국내 29개 영아시설과 218개 육아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연고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국외입양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

히 보호시설은 의료장비와 관계자들의 장애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장애아동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아동은 키우지 않겠다며 보육하던 입양아마저 서슴없이 내던지는 우리 현실에서 국외입양금지 조치는 버려진 장애아들을 더 큰 절망 속으로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 신중한 재검토를 요한다(세계일보 94.4.21., 26면).

9. 사회복지서비스 - 위탁보호사업, 아동복지 일반

○ 보사부

- 유엔이 정한 「세계가정의 해」를 맞아 95년부터 국내입양아동의 중·고교수업료 면제, 노인부양가구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액 2배인상 등 가정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함(동아일보 94.1.12., 31면).
- 해외입양을 계속 허용하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아 등 요보호아동들을 고아원 등 시설에 보내지 않고 1년이내의 범위에서 위탁부모가 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제」를 도입, 생계비를 지원한 뒤 국내입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함(세계일보 94.8.6., 21면).

○주정미(보건사회부 아동복지과)

국내에서 입양되지 못하는 요보호 어린이의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9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일반가정에 위탁보호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원대책의 미흡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애요인은 호적에 올리지 않아도 남의 아이를 맡는다는 것 자체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식이다. 입양을 떳떳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국내입양활성화 세미나 토론발표, 1992.12.10).

○ 김수남(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을 위한 전국협의회 회장)

아동복지관계법은 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모자보건법·사회복지법·민법 등에 산재되어 있으나, 중첩된 규정이 많아 복잡하고 규정상호간에 관계가 불

명확할 뿐만 아니라 법이해에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또 많은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각 아동복지관계법은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많아 개정이 요구된다. 먼저 아동복지법의 경우 대상을 요보호아동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법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학대아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아와 유아의 보육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조기유아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놀이방의 정원을 엄격히 규정해 놀이방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빈곤가정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생활보호법과 모자복지법도 가장 중요한 주택문제 지원을 빠뜨리고 있어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이밖에 민법은 부모편의위주로 이혼한 부모의 면접교섭권만을 인정해 아동의 부모 면접교섭권은 아예 무시하고 있으며, 입양특례법은 입양되는 아동의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허점을 지니고 있다(『제2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전국대회』, 1993.5.1; 서울신문 93.5.5., 16면).

○박영옥(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부장)

심한 지체부자유아, 맹아, 농아 및 정신박약아, 정신질환아, 특수보호아동을 위해서는 양부모가 이용가능한 좋은 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며 장애아의 예방대책도 시급하다(박영옥, 전개 “국내 입양에 관한 사회인식의 전환”, 14쪽).

○배태순(경남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한국의 문화적 요소인 강력한 혈연의식은 입양발전에 장애요소가 되어 왔다. 장기적 안목의 입양발전을 위해서는 가정위탁사업의 존재가 반드시 요구된다 하겠다. 입양에 선호되는 건강신생아가 아닌 나이 든 아동이나 신체장애 등을 가진 아동을 키워 본 위탁부모가 이러한 아동들을 입양할 확률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약70%가 이 아동들을 먼저 위탁받아 키워왔던 위탁가정이었다는 사실은 입양과 가정위탁서비스와의 밀접한 관계를 잘 말해 준다고 하겠다(전계 “입양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15쪽).

10. 입적절차(호적법과의 관계) - 법원의 출생증명서제도 도입 여부

○김주수(연세대 법학과 교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몇가지 있다. 첫째, 양친자관계는 파양이 있는데, 친생친자관계에는 그것이 없다. 호적상의 친생친자관계의 파양이라는 것도 묘하며, 후에 파양하고 싶은 경우에 곤란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점은 파양의 필요가 생겼을 때에, 당사자로부터 양친자관계라는 사실과 파양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여 호적을 입양으로 정정하여 후에 파양의 기재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과의 관련이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 내지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친측으로부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자신이 허위신고를 하면서 후일 정정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클린 핸드'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으로 무효주장을 제한하는 해석도 할 수 있다(김주수, 전거서, 617쪽).

○배태순(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재 호적예규상 출생증명서 없이도 자녀를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는 용이성은 공식적인 입양절차 없이도 타인의 아동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며, 이것이 산부인과나 조산소를 통한 불법적인 개인입양의 증가와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감소의 주원인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산에 의한 경우에는 병원발행의 출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나, 병원외의 장소에서의 출산시에는 현재 2인의 인우보증인만으로 대체하는 것을 폐지하고 대신 각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의 직원에 의해 발행한 출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다. 아동의 출생증명서 제출이 강화되면 자신이 불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시키게 된다.

입양부모가 입양기관의 도움으로 입양아에 대한 입양허가신청을 자신이 거주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이 되어 입양아를 가정에 갖게 되고 일정기간의 입양사후지도를 거쳐 입양이 종결되면, 성명과 본적, 생부모에 관한 정보

가 기재된 입양아동의 원호적은 법원에서 보관하고 입양아에게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딴 새 출생증명서를 법원이 발급해 주도록 한다. 이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입양부모는 입양아를 자신의 친자로서 호적에 입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양아는 후에 자신의 진정한 혈통 및 뿌리에 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동안에 부와의 다른 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게 된다(배태순, 전계 “입양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11쪽).

호적이 없는 상태에서 입양된 어린이들은 나중에 입양부모들이 친생자부인 확인소송을 내어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하루 아침에 무적자가 되기 때문에, 입양어린이에 대해 먼저 호적·출생증명서를 만든 다음 이를 제적처리하는 절차를 거쳐 친자입양하는 방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한겨레신문 94.6.4., 14면).

○정희근(동아대학교 법과대 교수)

입양의 실태는 한결같이 양친의 친생자로 허위출생신고되고 있으며, 입양신고로 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이 현실이고 우리의 실정이며 우리 시민의 입양감정이다. 만약 법이 이 현실을 도외시한다면 허위출생신고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호적부의 신빙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오히려 국민들의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만약 이를 호적법에 따라 처벌한다면,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알선기관을 통한 입양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입양은 불우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자의 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며 더욱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한편 완전양자제도는 범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허위출생신고의 효력을 입양의 효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떠나서 완전양자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누구나가 법에 따라 양친의 적출자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정희근, 전계 “완전양자제에 관한 고찰”, 808쪽).

11. 비밀입양실무와 불법개인입양의 문제

○보사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입양에 관한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입양특례법 개정안 제29조). 아울러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을 둠(동 개정안 제30조).

○정기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입양은 호적법에 따라 양자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을 이용하여 불법 또는 허위로 출생신고하고 있다. 따라서 파양이 될 경우 입양아동은 무적자가 되며, 불법의 출생신고라는 범법인식은 국내입양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호적법에 따라 양자 또는 친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의 인우보증을 이용한 불법 또는 허위 출생신고를 근절하고, 친생자 출생신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파양된 입양아동의 원적 복귀가 가능하며, 친자로 입적하고자 하는 국민적 정서에 부합되어 국내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완전양자제도를 도입해야 함(정기원, 전개 “입양특례법 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 24~25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입양은 양친될 자가 입양기관의 장과 함께 양친될 자의 본적지에 서류를 갖추어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양자될 자를 양친될 자의 친생자 또는 입양자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입양특례법 개정시안 제9조제1항).

- 「제9조에 의하여 양자될 자를 양친될 자의 친생자로 신고할 경우 새로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동 개정시안 제10조제1항).
- 「제1항에 의한 출생신고시에는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첨부되는 서류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한다」(동 개정시안 제10조제4항).
- 「제10조에 의하여 양자될 자를 양친될 자의 친생자로 신고할 경우 양자될 자와 그 친부모 및 혈족과의 친족관계는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종료한다」(동 개정시안 제12조제2항).

○배태순(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입양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에, 입양의 비밀성이 주류를 이루는 입

양실무는 입양의 비밀성을 용이하게 해 주는 유형의 아동들만이 입양가능한 아동들로 간주된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다. 즉, 눈에 띄는 신체적 결함이 없는 건강한 신생아만이 입양대상 아동이 되며, 남들과 다른 신체적 및 정신적 특성을 지닌 신체장애아 및 정신지체아, 그리고 나이가 든 연장아동들의 입양은 신생아보다 입양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입양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입양부모들의 약 95%가 생후 5개월 미만의 건강신생아만을 입양하고 있으며, 1991년의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신청 가정수가 4,597명인데 비해 국내 입양된 아동의 수는 단지 1,241명이라는 사실에도 잘 나타난다 하겠다.

그러므로 입양의 발전은 입양의 비밀성을 지양하고, 입양부모들이 입양을 입양으로서 수용·인정하는 태도를 전제로 해야 한다(배태순, 전계 “입양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5쪽).

- 현재 국내에 공공연하게 확산되어 있는 입양알선기관외의 제3자에 의한 불법 개인입양을 우선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차원에서 입양을 입양으로 인정, 수용하는 진정한 입양태도 조성이 중요하다. 입양아동의 이중호적제(완전양자제), 입양사후관리규정, 가정법원의 국내입양인가 관여, 출생에 의한 호적입적시 출생증명서 제출강화 등 현실에 맞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입양아동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통계상 보이고 있으나, 이는 자연적 감소가 아니라 소위 암시장으로 불리는 조산소 및 산부인과 병원 등에 의한 불법적인 「아동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입양제도가 시행된 지난 30여년동안 국내입양실태는 입양을 원하는 가정은 적고 대상아동수는 많은 현상 때문에 이같은 비밀입양을 정부차원에서 지원보장해주는 입양제도가 적용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해(91년)의 경우 입양아동은 1,241명인데 반해 입양신청가정은 4,597명으로 늘어나는 등 과거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입양의 본질과 아동복지에 입각한 입양업무로 전환할 시기가 되었다. 또 정부가 오는 96년부터 해외입양을 전면중단키로 한 만큼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더욱 늘어날 불법개인입양의 폐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배태순, “국내입양문제와 관련한 입양법 개정 제안”, 한국아동복지학회 학술발표회 주제발표논문; 배태순, “아동복지 발전을 향한 국내입양법 개정 제안”, 『국회』307호(92.5), 95쪽).

- 불법개인입양은 자신들의 금전적인 보상에만 관심이 있는 입양알선기관으로 인정받지 않은 산부인과나 조산소의 비전문인들에 의한 아동거래이므로, 이렇게 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대해 보장할 길이 없게 되며, 또한 아동을 악이용 - 유흥업소 강제출연 등의 아동착취 및 아동학대 - 하기 위해 입양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게 된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전문인들에 의한 국내아동들의 입양이 더 이상 방치된다면, 국내입양은 무질서의 혼미속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어 진정한 입양의 발전은 요원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현상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입양특례법에는 불법적 개인입양을 규제하는 벌칙은 없다. 다만 1981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8조(금지행위) 제6호에 국내아동의 입양을 위해 입양알선기관으로서 인가받지 않은 자가 국내아동의 입양알선업무를 행하였을 경우에 명시된 벌칙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아주 미약하다.

처벌대상자로서는 불법 개인입양에 직접 관여하게 되는 입양을 알선한 자 - 산부인과 및 조산소 - 와 불법적으로 아동거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입양부모 및 친생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의 출생증명서의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서 가짜 출생증명서를 발행하는 병원, 구청의 보건소 직원, 이러한 출생증명서 없이 자녀의 호적입적을 가능케 한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 직원 등 처벌대상자와 벌칙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벌칙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배태순, 전계 “입양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5.11.12쪽).

○박영옥(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부장)

입양알선 기관외에 제3자에 의한 불법적인 개인입양을 막아야 한다. 산부인과나 조산소에서 불법 개인입양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아동복지에 입각한 입양은 저해되고 있다. 비전문인들에게 국내입양이 행해지도록 계속 방치하여 둔다면 국내입양은 무질서의 혼미 속으로 그 진정한 발전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입양은 인가받은 입양알선기관이 안전한 가정을 조사하고 아동에게 적격한 가정을 제공해야 한다(박영옥, 전계 “국내입양에 관한 사회인식의 전환”, 13쪽).

12. 기타 입양활성화를 위한 방안

○박영옥(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부장)

미국이나, 해외입양아를 받는 유럽국가에서도 15~17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2~3세 이상된 아동들과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결함을 가진 어린이들, 또는 출생이 불확실하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비천한 부모의 어린이들까지도 입양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전문가들이나, 기관에서 또는 양부모 옹호단체들이 이러한 특별 도움을 요하는 아동들을 입양할 가정을 찾았으며 계속 찾고 있다. 한국에서도 입양 가능한 아동들에 대한 재정의가 요청되며, 인식이 바뀌어져 모든 아동은 입양가능하여야 하며 물론 이에 적합한 가정이 발견되어야 한다. 국내입양은 지금 인식에의 획기적인 전환을 절실히 요구한다. 입양부모의 개방적인 성공발표(세미나, TV, 라디오, 신문, 방송매체 등)로 인한 입양확산으로 외국의 양부모처럼 입양을 공공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되어지면 입양아들이 아무런 편견없이 대우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양부모의 조직단체가 구성되면 보다 국내입양발전은 앞설 것이다. 그러나 전망은 쉬우나 실행은 어렵다. 시작이 반이다. 有籍兒를 공개입양으로 입적했고 이미 18명의 장애아도 입양되었기에 입양기관, 정부, 민간단체가 합동하여 부담없이 전력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박영옥, 전계 “국내입양에 관한 사회인식의 전환”, 16~17쪽).

○배태순(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미국의 경우에 아동들의 입양은 공공아동복지기관(public child welfare agency)이 주가 되어 담당함으로써 정부가 인적 자원의 확보 및 훈련 등을 위해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가 투자하여 입양을 주담당하는 공공아동복지기관이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내입양은 거의 정부의 지원없이 민간입양기관에 의해서 수행되어져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부가 국내아동들의 입양을 위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입양기관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배태순, 전계

“입양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15쪽).

- 입양기관의 입양과정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가 요구된다. 이는 입양대상 아동에 따라서 수수료에 차이를 둬으로써 건강신생아외의 아동을 입양하는 입양부모를 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6개월 미만의 건강신생아를 입양하는 부모: 현재 입양기관에서 8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더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6개월 이상 만 2세 이하의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 입양가정의 수입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한다. (3) 만2세이상의 아동이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부모: 입양서비스 수수료를 거의 감면해 준다.

나이드은 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입양부모가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입양보조금 지불을 고려한다. 이것은 입양아 양육보조금 및 한국의 재정형편상 큰 폭의 세제 혜택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입양이 개방적으로 됨에 따라서 입양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곧장 입양아를 포기하는 과장으로 치닫지 않고 외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 입양기관은 입양가족을 위한 가족치료서비스가 제공되어 질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구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배태순, 전개 “입양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14~15쪽).

○사회복지법인 합동

입양가정에 대하여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아동을 이용할 위험성이 많으며, 양친될 자격요건으로 들고 있는 개정안 제5조제1항제1호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과도 배치된다(전계 개정법률(안) 의견서, 3쪽).

○박병호(서울대 법대 교수)

양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이기는 하나 계모자관계나 적모서자관계와는 상이하다. 부부동적원칙에 따라서 부부동적원칙은 혼인관계(혼인신고)를 매개로 형성되는 계모자관계와 역시 혼인관계(혼인신고)나 인지신고를 매개로 형성되는 적모서자관계에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민법 제775조). 따라서 적모·계모의 이혼이나 夫死後의 親家復籍·去家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소멸되면 법정모자관계가 소멸하지만 모자관계형성에 있어서 입양신고라는 엄격한 요식행위로

인하여 형성되는 양친자관계(양모도 입양당사자임)에서는 부부(養父母)의 동적 여부는 입양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宗法養子與否에 따라 다름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은 오직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인하여만 종료함은 변함없다(제776조) <박병호, “양부모의 이혼과 양모자관계”, 민사판례연구 13집(91.5.), 174~175쪽>. -> 대법원 1979. 9.11 제4부 선고, 79 트 35,36판결(친생관계부존재확인)(원심 서울고법 1979. 6.5 선고, 77 르 46,47 판결) 참조.

Ⅲ. 입법방향

1. 각계의견의 검토

양자제도의 개선에 관한 입법의견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하나는 가족법학계를 중심으로 한 완전양자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민법상 양자제도의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보건사회부가 1989년 입양사업 개선계획을 발표하면서 각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입양특례법상의 양자제도 내지 입양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전자는 주로 외국에서 1960년대를 기점으로 입법화된 완전양자제도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후자는 국내입양의 활성화와 국외입양의 중단에 따른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학계쪽에서는 완전양자법(안)이 제시되었고, 보건사회부와 입양기관쪽에서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입양제도에 관한 전술한 각계각층의 입법의견이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나 상당한 부분을 담고 있는 시안도 있고, 우선 실현가능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반영한 개정(안)도 제시되어 있다.

보건사회부를 비롯한 각계의 입법의견을 주요 논점별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입양특례법 개정관련

보건사회부의 입양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제기된 개정

의견은 그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완전양자제도의 도입여부와 불법개인입양의 방지책 및 정부의 입양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다.

①친생자 입적제도의 도입, 입양아의 사후관리, 사전입양준비교육의 강화는 완전양자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입양지원책 신설, 기관입양제, 불법입양의 처벌은 불법개인입양의 방지책에 관한 것이며, ③가정위탁보호제도, 관련업무 담당 인적 자원의 양성방안, 장애아동의 입양장려방안, 입양지원책의 확대는 입양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입양기관의 역할 등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④가정보호 우선의 원칙 천명, 해외입양 중단의 문제는 입양제도 일반원칙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완전양자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는, 보건사회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마련한 시안, 학계일반, 언론계 및 입양기관 등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에 포함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건사회부의 최종 개정안에는 보류되고 말았다. 따라서 현행 입양특례법상의 규정처럼 양자로서만 입양이 가능하고 여전히 친생자로 허위출생신고하는 관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입양될 양자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입양아의 사후관리, 사전입양 준비교육의 강화는 반영되었다. 사후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그 기간의 장단에 대하여 좀더 연장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6월로 하자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둘째, 불법개인입양의 방지에 관한 것으로는, i)입양의 방식에 대하여 입양기관의 알선을 통하여야 하는 알선식과 입양당사자간의 입양계약을 통하는 계약식 중에서 전자의 입양기관의 알선을 통하여서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불법개인입양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요보호아동이 아닌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여전히 민법상의 계약방식에 의한 입양이 가능하게 되며, 현재와 같은 이원적 입양이 이루어진다는 문제는 있다. 다만, 불법개인입양이 거의 대부분 5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장치는 될 것으로 보인다. ii)불법개인입양 관여자의 처벌에 관하여 그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알선자 뿐만 아니라 양친이 될 자도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 및 법인과 개인의 양벌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셋째, 입양활성화에 관하여는, i)정부의 입양지원책으로서 입양기관의 입양 알선비용 수납, 양육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양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입양가정에 대한 각종 특혜 및 세제지원 등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체로 찬성하는 경향이나, 정부의 아동복지예산의 규모로 볼 때 단지 정부의 지원 근거규정이 신설된다는 의미로만 볼 수밖에 없다는 회의적인 견해와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 아동을 이용할 악용의 소지가 있는 국민주택분양우선권 등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ii)가정위탁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관하여는 정부측과 입양기관측의 견해는 이를 가정보호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혈통중심의 입양문화를 지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대대적인 홍보와 인식의 전환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iii)장애아 입양문제는 이들 입양가정에 대하여 특별히 우대하는 규정을 두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시안, 양자가 아닌 가정위탁보호의 견지에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당분간은 현실적이라는 의견 및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설보호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입양문화가 개선될 때까지 해외입양을 통하여 이들에게 영구적 가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하여는 국내적으로 소화할 방안이 당분간은 여의치 않음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입양의 원칙적인 문제로서 가정보호우선의 원칙에는 이의가 없으며, 보건사회부 역시 국외입양보다는 가정위탁보호를 우선한다는 방침을 마련하고는 있다. 첨예한 현실적 문제로서 국외입양의 중단 문제는 찬성과 반대가 대립된 사항이다.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체면치레의 정책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당연한 입양정책이라는 찬성의 의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나, 결국 정부는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의 문제로 중단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정하였고, 이에 대하여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국외입양제도의 대안으로 가정위탁보호제도와 국내입양의 활성화정책으로서 각종 지원방안이 정부측에서 제안되었고, 국외입양이 자연히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하기도 하였다. 해외입양의 중단은 앞당길수록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따이한 혼혈아」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한다는 의견, 40여년간이나 계속되어 온 고아들의 해외입양을 주무당국의 의지와 관계법규의 개정 그리고 세제상의 특혜만으로 중단시킬 수가 없다는 비판적 견해,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나 입양아를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훌륭한 양부

모를 만나 정상의 가정의 어린이와 다름없이 성장토록 도와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다.

2) 국내입양의 활성화문제

이는 국외입양의 중단문제와도 직결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정도로 발전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다. 이제까지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전적으로 국외입양에 의존한 원인에 대한 분석적 의견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계층의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에 대하여, 불법개인입양의 성행, 지나친 입양의 비밀주의, 선별적 입양, 장애아 기피현상, 자 중심보다는 여전히 가정이나 혈통중심의 입양문화 내지 의식, 소극적인 아동복지정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한 활성화대책으로 보건사회부에서는 양부모자격요건의 완화, 입양가정에 대한 각종 혜택과 지원,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전국적 확대를 들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보사부의 소극적 대책에 대하여 회의적인 의견과 함께 불법개인입양의 방지, 입양기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인우보증제도의 개선을 통한 비밀입양의 방지, 미혼모 보호시설의 확충과 생계보호 등의 지원을 통한 근본적인 요보호아동의 발생방지, 대규모의 입양캠페인을 통한 일반의 의식변화 유도, 집단보호방식에서 개별적 보호방식, 유연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확립, 복지행정 전문가의 대량양성 등의 의견이 있다.

3) 완전양자제의 도입여부

이에 관하여는 첫째 입양제도의 방식에 관한 것으로, 입양제도를 완전양자제로 일원화할 것인가, 기존의 일반양자제와 함께 병존시키는 이원적 양자제로 할 것인가 하는 의견으로 대별된다. 둘째 완전양자제의 구체적 내용으로, 완전양자제를 도입할 경우 그 요건과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제도적 내용에 관한 의견으로 나타난다.

현재의 입양관행이 입양아를 양자가 아닌 친생자로 호적에 올리고 있는 관행

및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양효과 인정에 근거하여 완전양자제의 도입여부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고 할 정도이다. 그러나, 현행 일반양자제도와 관련하여 완전양자제로 일원화할 것인가 병존적 이원화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찬반이 갈리고 있다. 완전양자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각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는 학계에서 주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 보건사회부의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마련한 시안에는 도입되어 있다. 혈연을 중시하는 우리의 입양관념과의 관계, 구체적인 호적절차상의 기술적인 문제, 입양아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의 보장문제 등이 관련문제로 남는다.

4) 사후관리.

입양을 위하여 양부모에 대한 사전교육과 함께 입양후 적응상태에 대한 사후관리의 문제는 국내입양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 비밀입양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입양후의 아동학대나 파양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양육권을 포기한 친생부모가 가지는 최소한의 보장으로로서 입양아의 행방과 생사여부 및 성장변화에 대한 정보의 접근가능성 보장 등의 이유에서 사후관리는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

5) 입양의 취소와 파양

이에 대한 의견으로서는 입양취소청구의 소에 대하여 그 요건을 현행대로 1년의 기간제한을 두는 보건사회부의 의견과, 그 사실을 인정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더욱 제한하려는 사회복지법인 합동의 의견으로 대별된다.

한편, 입양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근거한 입양취소의 경우 입양아의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장치는 의견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대한 사유의 대부분이 의료적 문제이나 장애아인 경우이며 이들에 대한 사후 지속적 치료와 보호에 대한 장치가 없고, 입양아의 대부분이 5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호적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호적상의 문제와 입양아의 보호문제가 남게 된다.

6) 장애아 입양의 문제

장애아의 문제는 의료문제아동과 함께 그 발생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 장애아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외입양을 제외하고는 이들을 영·유아 보호시설을 거쳐 장애자 시설 등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 국내 입양된 아동 중에서 입양 후 의료문제가 발생하거나 장애아로 판명되는 경우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아동복지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장애아 보호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 보사부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급방침 등이 있다. 장애아에 대하여는 이를 당분간 국외입양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외입양금지조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이와 관련된다.

7) 사회복지서비스 - 위탁보호사업, 아동복지 일반

가정위탁보호사업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사회부가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있고, 이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다만 그 실효성에 관하여 입양을 떼뻗이 여기는 분위기가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 장기적 안목의 입양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정부의 지원대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정보호우선의 원칙 확립과도 관련이 되며, 이의 명시적 선언규정을 두자는 의견도 있다.

아동복지 일반에 관하여는 아동복지관계법이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법, 민법 등에 산재되어 있으나 중첩된 규정이 많고, 규정상 호간의 관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많은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 아동복지법의 대상범위를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일반에 관한 법으로 개정해야 하며, 피학대아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부족하고, 입양특례법은 입양되는 아동의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허점을 지니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심한 지체부자유아, 맹아, 농아 및 정신박약아, 정신질환

아, 특수보호아동을 위한 양부모가 이용가능한 좋은 시설의 확충, 장애아의 예방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다.

8) 입적절차(호적법과의 관계)

이는 주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통하여 입양을 하는 관행에 따른 호적상의 문제점 개선에 관한 것이다. 그 첫째로는 입적절차상으로 출생증명서 제도의 개선이며, 둘째는 과양시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전자는 친생자출생신고가 비밀 개인입양을 실질적으로 성행케 하는 원인이라는 시각에서 아동의 출생증명서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는 병원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인우보증제를 폐지하고, 각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의 직원에 의한 출생증명서제도 도입 의견, 입양종결시에 법원에서 새로운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자는 의견, 입양 전에 먼저 법원에 의한 호적·출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자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후자의 과양시 문제점은 출생증명서 내지 호적과도 관련이 있는데, 호적이 없는 상태에서 입양된 어린이들은 나중에 입양부모들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과양하는 경우 하루 아침에 무호적자가 되기 때문에 아동의 보호가 문제가 되며, 완전양자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의 비밀유지와 친생자로서의 호적상 보호를 위하여도 기술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출생증명서의 허위발급에 대한 처벌대상자와 벌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입양에 관한 비밀준수의무의 강화 및 위반에 대한 처벌의 강화도 같은 맥락에 서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9) 비밀입양실무와 불법개인입양의 문제

비밀입양실무는 입양의 발전적 측면에서 볼 때 입양의 비밀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아동들만 선별적으로 입양하게 되고 그들만이 입양가능한 아동들로 간주하게 한다는 역기능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양의 비밀성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선결문제로서 입양을 입양으로 인정, 수용하는 아동복지차원의 입양태도가 우선적으로 보편화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출생에 의한 호적 입적시 출생증명서 제출강화 등 현실에 맞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 불법적 개인입양을 규제하는 벌칙을 입양특례법상에 명시하고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다.

비밀입양실무와 불법개인입양은 종전에 수많은 요보호아동의 입양 성사에만 집착한 아동복지행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입양알선기관의 건전하고 완전한 역할과 정부의 역할 강화, 출생과 입양에 관한 호적절차의 문제가 함께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0) 기타 입양활성화를 위한 방안

입양가능한 아동의 범위 확대문제, 입양을 주담당할 기관으로서의 공공아동 복지기관 설치 및 입양기관의 육성 내지 지원, 기타 입양지원정책으로 입양과정 수수료의 현실화, 수수료의 차등화, 양육보조금의 지원, 입양의 개방화, 가족치료서비스 및 그 인적 자원의 확보 등이 제기되고 있다.

2. 입법방향

입양제도는 가정문화, 혈연의식, 가족제도, 국가의 아동복지정책, 더 나아가 결혼관과 성문화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입양관련법의 개정만으로 획기적인 변화나 개선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는 것은 단견이다.

세계적으로 입양제도는 家 중심의 입양에서 子 중심의 입양으로 변화되고 있다. 더구나 아동복지 차원에서의 입양제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입양이 이미 가정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아동복지문제로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입양의 근본적 관점 변화는 요보호아동의 형태, 입양형태, 입양방식, 국가의 입양정책, 아동복지정책 등이 따라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입양에 대한 일반의 의식 또한 전환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입양제도의 변화 추세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종전의 家 중심 내지 입양부모 중심의 입양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사회적

인식 또한 아동복지차원의 공개된 입양은 커녕 비밀입양과 개인입양을 선호하고 있고, 호적이 없는 건강한 신생아의 입양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대적인 입양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입양제도의 개선문제는 1989년 보건사회부가 국내입양활성화정책과 국외입양중단방침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그간에 민법 특히 가족법학계에서 논의해온 완전양자제를 중심으로 한 입양제도의 개선방안과, 보건사회부의 개정시안, 개정안, 각종 공청회와 세미나, 언론의 사설, 관련단체의 의견개선 등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입양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가능한 방안은 거의 제시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렇듯 다양하고 견해가 각각인 개선방안과 현재의 우리나라 입양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입양정책방향 및 입양문화 내지 사회의 인식을 어떻게 조화시켜 입법에 반영하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각계각층에 대한 입법의견을 분석,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향후 입양특례법을 비롯한 입양제도에 대하여 그 입법방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1) 요보호아동의 인적 구성 변화와 법적 개선

1960년대를 전후로 하여 우리나라의 요보호아동은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은 전쟁고아와 혼혈아가 주를 이루었고, 60년대 이후에는 기아, 미아 등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미혼모의 급증과 그에 따른 양육포기나 기아, 장애아가 주된 비중을 이루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통계를 통하여 살필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요보호아동의 인적 구성의 변화는 연장아동의 문제를 아울러 심화시키고 있다. 가치관과 성윤리의 변화는 미혼모의 급증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게 하고, 이는 곧 새로운 형태의 요보호아동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생활의 변천과 여건의 변화는 장애아의 급증과 유기라는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입양에 있어서 새로운 과제로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혼, 각종 사고의 증가와 가정파탄으로 인한 학대받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결손가정아동이 증가하는 것도 입양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 내지 인적 구성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양정책은 예전 그대로에서 근본적인 변화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에 대한 근본적 근절 대책이 없는 입양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임은 당연한 논리이다. 아동복지차원에서 입양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보호아동의 격리 내지 시설 수용의 차원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개 가정의 혈통유지 차원의 개별입양에 의존하거나 국외 입양으로 해소하려는 소극적인 기존의 입양정책은 수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 입양 형식의 변화와 법적 개선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이 변화한 것처럼, 현대사회의 특징인 개인주의의 확산과 핵가족제도의 일반화는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인한 사실상의 대가족제도의 법적 포기과 함께 종래의 입양목적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곧 입양 방식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이전에도 3세 이하의 棄兒를 완전입양의 형식으로 입양하는 전통적인 입양제도도 있었으나, 해방이후에는 대가족제도의 잔존과 가중심의 입양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에 따라 성년양자 내지 아동의 입양이 일반양자로서 이루어졌다. 반면에 일본과 같은 收養制度는 일반화되지 못하고 사실상 오늘에 있어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와 취지를 같이 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입양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가정위탁보호제도는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서구를 중심으로 1960년대에 일기 시작한 아동복지를 위한 완전양자제도의 채택은 현대 입양제도가 주 중심의 아동복지차원의 제도임을 뜻한다. 이는 입양의 개방성과 입양대상아동의 무제한성을 근거로 삼고 있고, 아동의 가정보호 우선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친중심의 입양, 家 중심의 입양 문화에서 탈피한 연후에라야 가능한 입양의식의 변화인 것이며, 법제도화인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별입양 즉, 입양의 비밀성을 보장할 수 있고, 가중심 내지 양친중심의 입양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까다로운 선택조건을 입양의 전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실제 입양신청 가정의 요구인 것

이며, 입양이 받아들여지는 여건인 것이다. 아직도 아동복지를 중심으로 한 입양이 아니라 家 중심, 또는 양친중심의 입양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입양의 활성화는 제한적인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각종 입양지원책은 오히려 입양의 비밀성을 바라는 입양가정에게는 성가신 것으로 될 수밖에 없는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양목적 내지 입양관이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과 인적 구성 변화에 부응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입양의 방식은 개별입양과 기관입양, 공개형입양과 비밀입양, 알선식과 계약식으로 나눌 수 있고, 국가기관(법원 포함)의 관여형과 자율형으로도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별입양(개인입양)과 기관입양, 비밀입양, 계약식 입양으로 이루어져 왔다. 전술한 입양 목적의 시대적 낙후성으로 개별입양과 비밀입양을 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형식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법을 관례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다. 비밀입양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아동거래'라는 비윤리성은 차치하더라도 입양의 적정성과 입양후의 입양아 보호 내지 관리문제에 행정적 공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입양후의 문제 발생으로 인한 과양, 입양아 학대 내지 천한 직업에의 종사 등에 대하여 사실상 무방비인 것이다. 아동복지차원에서의 입양은 기관입양 내지 법원 등에 의한 허가입양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의 아동복지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이 또한 개인입양을 병존시키고 있는 다원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차원의 입양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곧 기관입양과 국가기관관여형으로 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입양기관의 알선을 통하여서만 요보호아동의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비밀입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개별적 불법입양은 철저히 규제하여야 한다. 성년입양의 경우는 입양당사자의 계약에 의한 일반입양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는 양자를 양자로서 입양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요보호아동 특히 영·유아의 입양은 입양아동 중심의 입양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완전양자제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입양정책 관련 입법방향

정부의 입양정책은 크게 입양, 시설수용, 가정위탁보호로 나눌 수가 있다. 입양은 다시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으로 나뉜다. 이제까지 입양정책은 국외입양과 시설수용으로 주류를 이루어왔다. 국외입양은 60년대 전후로는 전쟁고아, 혼혈아, 장애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기아나 미아의 경우도 대부분 국외입양에 의존하였고, 국내입양은 그 부담을 내지 성사율이 낮았다. 그러나 요보호아동 발생원인 자체가 이제는 전쟁고아 대신에 기아 등이 차지하였고, 그 중에서도 기아, 장애아가 국외입양의 주 대상으로 되고 있고, 미혼모의 신생아는 건강아동의 경우 국내입양으로 흡수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입양정책은 입양의 비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양실무가 이루어졌고, 당국의 방조와 법원의 판례를 통한 허용을 통하여 입양의 폐쇄성을 자초하였다. 즉, 입양가능아동대상이 건강신생아만을 대상으로 한 친생자로의 출생신고 형식의 국내입양만으로 한정시키는 역기능을 낳았던 것이다. 이는 지금 국외입양의 중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입양환경을 조성한 것이며, 국외입양 중단 방침의 철회라는 정책의 번복을 불가피하게 한 것이다.

국내입양의 활성화는 아동복지차원에서, 또한 국외입양의 축소 내지 중단을 위해서 불가피한 정책방향이다. 문제는 실현방안인데,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인 여건변화와 입양에 대한 의식전환에서부터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收養制度가 없는 현재의 풍토에서는 국민의 의식전환 정책을 대폭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진정한 아동복지를 위한 子 중심의 입양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이루어질 때 정착될 것이며, 입양의 비밀성에서 벗어나 공개성을 확보하면서 입양가정의 모임이나, 성년양자들의 조직체 결성 지원 등이 아동복지정책의 하나로 시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사회적으로 정착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비로소 입양대상아동의 선별 내지 제한이 불식될 것이며,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것이며, 장애아나 유적아의 입양이 가능할 것이다.

국외입양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국내입양으로 대체되어야 할 과제이기는 하나, 집단적 시설보호보다는 외국의 가정이 아동복지 차원에서는 더 바람직하다

는 아동중심의 입양 관점에서는 국내입양으로 대체될 때까지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입양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현재의 입양관행을 합리적으로 제도권으로 흡수·수용하는 것이며, 불법적 개인입양 내지 아동거래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아의 입양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의 친생자로의 입적관행은 완전양자제의 도입으로 양성화 내지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1960년을 기점으로 세계 주요국가가 완전양자제를 입법화한 것이 좋은 예가 된다.

불법적 개인입양은 허다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하고, 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통하여야만 요보호아동을 입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과 이를 위반한 경우 강한 처벌을 가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는 물론 입양알선기관의 전문성과 적합성 및 관리감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복지 전문가가 대량으로 양성되어 이러한 입양기관에 종사하도록 육성되어야 함도 마찬가지다.

입양기관이 전적으로 민간기관으로서 정부의 지원없이 현재처럼 알선수수료 등의 자체수입으로 운영된다면, 입양경쟁 내지 탈법운영 또는 편법입양에의 가담이 불식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미국처럼 아동들의 입양을 공공아동복지기관이 위주가 되어 담당함으로써 정부가 인적 자원의 확보 및 훈련 등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든지, 이러한 역할을 민간 아동복지기관이 충분히 대신할 정도로 보조금 등의 현실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혀 입양가정의 입양목적과 정서를 무시하고 입양의 비밀성을 보장받기 원하는 가정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행하여도 이는 회피될 것이 뻔한 것이다. 완전양자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입양가정의 정서가 입양의 비밀성을 원하는 한 직접적인 지원은 회피될 것이며, 우회적인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아들의 치료서비스 등을 통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입양의 공개성이 확보되는 일반양자나 입양가정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적 지원이 행하여져야 함은 물론이다.

4) 아동복지정책관련 개선방안

장애아의 입양은 이들을 치료서비스할 기관과 전문요원의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져도 입양에 대한 아동복지중심의 의식전환을 동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데, 이러한 기본시설조차 등한시하고서는 단순히 일반인의 자애심에 호소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입양장애아에 대한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시책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국립의료원에 한정하고 있어 일반성이 없다. 장애아를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 자체가 부재한 현실에서는 요원한 문제이나, 시급히 장애아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마련되어야만 그나마 장애아입양이 국내에서 가능할 것이다.

미혼모의 급증은 요보호아동의 증가로 직결되고 있는 바, 미혼모에 대한 대책이 동시에 전개되지 않고는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가 없을 것이며, 미혼모의 신생아 양육포기로 인한 입양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미혼모보호시설의 확충과 지원은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도 입양대상이 건강신생아에서 장애아, 기아, 기타 연장아 등으로 확대된 것은 불과 15~17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 전에는 대부분 2~3세 이상된 아동들과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결함을 가진 어린이들, 또는 불확실하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비천한 부모의 어린이들까지도 입양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아동복지 전문가들이나 기관에서 또는 양부모 옹호단체들이 이들에 대한 특별한 도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입양가능 대상아동의 확대에 전력으로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 이들 단체나 기관에 대한 지원, 육성책 및 정부의 의무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향후 입양특례법과 민법상의 입양규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①완전양자제의 도입으로, 현재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판례가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친생자로의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을 현실화하여 호적의 신뢰성과 입양사후관리 및 비밀입양 내지 불법개인입양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며, 양자 중심의 입양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입양사후관리규정을 명문화하여 입양후의 파양 내지 아동의 학대나 천업에 의 종사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국내입양의 인가에도 가정법원의 관여를 포함하여 입양기관의 알선을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불법개인입양을 방지하고 입양사후관리를 체계적,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불법적인 국내입양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벌칙을 강화하여 입양알선행위에 가담한 입양부모와 친생부모도 처벌하며, 가짜 출생증명서 발급행위의 처벌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④출생에 의한 입적시에 반드시 병원의 공식적인 출생증명서, 자녀출생지의 통장을 포함한 주민다수의 보증서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현재의 실효성없는 인우보증제를 보완하여야 한다. 완전양자제를 도입하고, 입양기관의 알선을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출생증명서로 갈음하게 될 것이다. 출산이 아닌 경우에는 오직 공식적 입양에 의해서만 아동을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 개선과 함께 입양의 인식 전환과 입양알선기관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한다. 즉, i)입양을 공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인식이 바뀌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입양의 개념을 홍보, 계몽하여 편견없는 입양이 정착되어 사회적인 책임으로 요보호아동이 영구가정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ii)장애아 및 의료문제아동의 입양에 대한 확산이 요구된다. 공개입양이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결손가정과 이혼한 가정에서 포기되어지는 유적아의 경우도 해결될 것이다. 즉 이중호적문제로 국내입양이 되지 못했던 유적아나 연장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심한 지체부자유아, 맹아, 농아 및 정신박약아, 정신질환아, 특수보호아동을 위해서는 양부모가 이용가능한 좋은 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며, 장애아의 예방대책도 시급하다. iii)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민간단체, 특히 여성단체들이 선구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입양기관은 아동·양부모·친부모에게 최선의 선택과 결정이 되도록 상담의 질을 높여야 한다. 입양시기, 아동의 입양공개적 적절한 시기, 의학적 심리, 사회사업적 이론에 기초하여 입양후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여 입양을 위한 준비, 교육, 개별·집단교육, 양부모의 경험을 나누는 모임 등 다양한 사회사업방법을 통하여 적합한 양부모로 수준을 높이는

상담을 해야 한다.

최근의 입양특례법 개정(94.12.16 국회 본회의 의결)법률은 당초 시안에 포함되어 있던 완전양자제와 입양기관의 알선을 통한 입양의무가 삭제된 채로 사실상 일부 개정에 그쳐, 국내입양의 활성화, 비밀입양 내지 불법 개인입양의 근절, 미혼모와 기아 및 장애아 비중의 급증에 따른 아동복지차원의 입양제도 확립이라는 당면과제를 달성하기에는 요원한 느낌을 준다. 민법상의 양자규정을 개정하거나 입양특례법의 차기 개정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I. 입양, 요보호아동의 발생통계

1. 연도별 요보호대상자 발생상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미 아	22,573	16,004	10,572	10,110	8,425
기 아	350	294	183	136	168
계	22,887	16,298	10,755	10,246	8,593

자료: 경찰청<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1993년), 444쪽〉

2. 미아발생 및 처리상황

(단위: 명)

구분 연도	발생	연령		처리		
		5세미만	5~8세	보호자인계	보호시설인계	위탁보호
1988	22,537	12,917	9,620	20,504	1,482	551
1989	16,004	9,589	6,415	14,425	1,142	437
1990	10,572	4,686	5,886	9,862	590	120
1991	10,110	4,961	5,611	9,691	313	106
1992	8,425	4,035	4,390	8,092	190	143

자료: 경찰청<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1993년), 444쪽〉

3. 기아발생 및 처리상황

(단위: 명)

구분 연도	발 생	연 령		동 기 별				처 리		
		1세 미만	1세 이상	생활고	질병	가정 불화	기타	보호자 인계	시설 보호	위탁 보호
1988	350	205	145	79	32	6	233	42	259	49
1989	294	187	107	59	17	3	215	15	278	1
1990	183	137	46	58	21	-	104	18	162	3
1991	136	101	35	43	9	-	84	8	113	15
1992	168	81	87	13	18	9	128	18	150	-

자료: 경찰청(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1993년), 445쪽)

4. 국내의 입양 현황

(단위: 명)

연 도	1981	1985	1990	1991	1992	1993
국내입양	3,267	2,855	1,647	1,241	1,190	1,154
국외입양	4,628	8,837	2,962	2,197	2,045	2,290
계	7,895	11,692	4,609	3,438	3,235	3,444

자료: 보건사회부 내부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분석(93-14), 88쪽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백서(1994년), 339쪽

5. 입양아의 발생요인별 분포

(단위: 명, 퍼센트)

연 도	계	미 혼 모	기 아	결혼 가정
1958~1960	2,700	290(10.7)	1,755(65.0)	655(24.3)
1961~1970	11,481	2,467(21.5)	6,975(60.8)	2,039(17.8)
1971~1980	63,551	26,702(42.0)	22,220(35.0)	14,629(23.0)
1981~1985	50,502	33,051(65.4)	8,748(17.3)	8,703(17.2)
1986	11,534	9,253(80.2)	866(7.5)	1,415(12.3)
1987	10,329	8,183(79.2)	698(6.8)	1,448(14.0)
1988	8,787	7,528(85.7)	450(5.1)	809(9.2)
1989	6,063	5,100(84.1)	399(6.6)	564(9.3)
1990	4,609	3,734(81.0)	323(7.0)	552(12.0)
1991	3,438	2,758(80.2)	301(8.8)	379(11.0)
1992	3,235	2,717(84.0)	243(7.5)	275(8.5)
계	176,229	101,783(57.8)	42,978(24.4)	31,468(17.9)

자료: 보건사회부 내부자료(1993)

II. 아동복지시설 수용보호 현황

('94.3월말 현재)

구 분	계	영 아	육 아	직업보호	교 호	자립지원
시설수	275	37	217	7	7	7
수 용 인 원	19,580	2,077	16,543	342	492	126

자료: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백서(1994년), 340쪽

Ⅲ. 완전양자법(시안)

제1조(목적) 본법은 3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의 완전입양을 위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자의 자격) 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만 3세미만의 자로서 입양특례법 제2조 제1~4호에 해당하는 자 및 인공수정자이어야 한다.

제3조(양친의 자격) 입양당시 5년이상 부부로 생활한 자로서 입양특례법 제3조 제2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4조(양자의 호적)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라 양부의 호적에 적출자로 입적하며, 양친의 호적에 입적함과 동시에 실친과의 모든 신분관계를 출생시에 소급하여 단절한다.

제5조(인지의 소 등의 금지) 자에 대한 인지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의 소는 금지된다.

제6조(가정법원의 허가) 완전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자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입양의 효력발생) 입양의 효력은 자가 출생한 때에 소급하여 양친의 적출자로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과양금지) 양친으로부터의 과양은 금지된다. 단, 자를 위해 불이익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친자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제9조(경과규정) 이 법 시행 이전에 양친의 친생자로 신고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완전입양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타법의 준용) 입양특례법 제12조 내지 제15조는 이 법에 준용한다.

(정희근, 전계 “완전양자제에 관한 고찰”, 808~809쪽)

〈입양의 흐름도〉

출생: 친생부모(혼인중의 자), 혼인외자, 미혼모(친생가정, 병원등 분만장소)

요보호원인: 기아·미아·고아, 양육불능(입양동의·친권포기), 친권상실
(유기선고)

중간과정: ①아동일시보호시설

→ 요보호의뢰(신고, 발견)

②수용시설(영아·육아시설)

③입양알선기관(아동상담소, 아동복지법인 등)

→ 위탁보호, 입양알선, 가정조사 ← 재입양신청

④입양신청가정

→ 입양신고, 입양아 인수 ← 파양, 입양취소청구의 소, 입양무효

⑤호적계

→ 입양종결 / 해외거주허가신청 → 국외입양

⑥입양가정, 친생가정, 수용시설

↳ 18세 퇴소 (연장아)

연장아: ⑦직업보도시설,

(18세)

⑧자립생활관,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 자립지원금 지급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I.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관련 입법의견

1.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관련 입법의견목록

(1994.8.11.~1994.10.10)

◎ 경제기획원	71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내무부	71
○ 지방공무원법 개정의견	
◎ 재무부	72
○ 국민은행법 폐지의견	
○ 보험업법 개정의견	
○ 상속세법 개정의견	
○ 소득세법 개정의견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외자도입법 개정의견	
◎ 법무부	73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상법 개정의견	
○ 행형법 개정의견	
◎ 국방부	75
○ 군인사법 개정의견	

◎ 교육부	75
○ 학교용지확보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관련 입법의견	
◎ 농림수산부	77
○ 농지법(가칭) 제정의견	
◎ 상공자원부	77
○ 공업발전법 개정의견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의견	
◎ 보건사회부	78
○ 국민건강증진법(가칭) 제정의견	
○ 식품위생법 개정의견	
◎ 노동부	79
○ 공인노무사법 개정의견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견	
◎ 교통부	79
○ 도시철도법 개정의견	
○ 자동차관리법 개정의견	
○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의견	
◎ 환경처	80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의견	
○ 폐기물관리법 개정의견	
◎ 국가보훈처	81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2.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관련 입법의견요지

(1994.8.11.~1994.10.10)

◎ 경제기획원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때에는 최고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물리는 등 매점매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신설,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며, 형사고발절차도 간소화,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주무부장관이 곧바로 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경제기획원).

: 한겨레 94.9.25., 1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1호(64면) 참조

◎ 내무부

○ 지방공무원법 개정의견

- ①지방자치의 본격실시에 대비해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사회개발 유공자의 공무원 특별임용제도가 폐지되고, ②모든 지방직 여성공무원들에게는 임신·출산에 따른 60일간의 특별휴가와 1년간의 휴직이 보장되며, ③장기근속 6급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할 때 심사승진제·시험승진제·공개경쟁시험제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④인사위원회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사전심의권을 부여하며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인사(공무원)와 외부인사의 수를 같게 함(내무부).

: 경향 94.9.9., 2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1호(77~78면) 참조

◎ 재무부

○ 국민은행법 폐지의견

- 「국민은행법」을 없애 '일반은행'으로 바꾸되 서민·소규모기업 위주의 대출 의무를 정관에 못박아 서민금융기능은 유지함(재무부).

: 중앙 94.8.28., 5면

○ 보험업법 개정의견

-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개인 연금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보험상품간 자산·부채를 따로 관리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되어 (11명→25명, 임기 1년→2년) 보험분쟁조정이 다소 쉬워짐(재무부).

: 중앙 94.8.28., 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31면) 참조

○ 상속세법 개정의견

- 배우자가 세금을 안물고 상속할 수 있는 한도를 현재 1억원+결혼연수×1천2백만원에서 법정상속분(8억원 이내)까지 늘림(재무부).

: 서울 94.8.23., 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83~84면)·제8호(93~94면)·제9호(101면)·제12호(87면) 참조

○ 소득세법 개정의견

- 자녀수에 관계없이 1인당 1백만원씩 똑같이 공제 혜택을 줌(재무부).

: 서울 94.8.23., 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3면)·제12호(87~88면)·제94-2호(98면) 참조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 신용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를 육성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을 허

용함에 있어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개인간의 경제적 이해 다툼에 관해 대가를 받고 감정·중개·화해·청탁·법률상담 등을 못하게 하여야 함(법조계).

- ①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 업무와 관련해 재산보전처분 결정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변호사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고, ②신용불량자에 대한 사후 관리업무 즉 채권추심업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며, ③변호사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게 하여 고객의 부담을 줄여야 함(재무부).

- 신용정보를 업무의 목적으로 유출, 누설하거나 인가없이 신용정보사업을 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재무부).

: 서울 94.9.2., 9면; 경향 94.9.24.,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71~72면) · 제94-4호(88면) 참조

○ 외자도입법 개정의견

- 첨단기술을 갖고 들어오는 외국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대폭 깎아 주며 재무부와 각 시·도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외국인들의 공장 설치관련 민원처리기간이 15~45일로 단축됨(재무부).

∴ 중앙 94.8.28., 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0호(91면) · 제13호(72면) 참조

◎ 법무부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국제화·개방화추세에 따라 증가일로에 있는 외화 등 불법수출입사범, 지적재산권침해사범과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범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세관·체신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당정회의).

: 조선 94.8.19., 2면

○ 상법 개정의견

- 주식회사의 발기인수를 3인이상으로 한 정부의 「상법」개정안에 대하여 미국·일본 등 선진국처럼 1인만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발기인수를 1인

이상으로 하고,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발행의 활성화로 개방화시대에 국내기업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로 제한하고 있는 우선주 발행한도를 3분의 1로 확대하고, 회사채 발행한도도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의 총액 또는 순재산의 2배까지에서 4배까지로 확대, 우리기업들이 자금조달면에서 외국의 대형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대한상의).

: 경향 94.9.24., 8면

○ 행형법 개정의견

- ①교도소 또는 구치소내 질서문란행위를 한 재소자에게 가할 수 있는 징벌의 종류중 감식, 접견·서신금지, 작업정지, 운동정지 등이 없어지며 도서열람제한도 3개월 이내에서 1개월이내로 단축되고, ②경고, 1개월 이내의 도서열람제한, 청원의 정지, 직업상여금의 삭감, 2개월 이내의 금치 등 5가지만을 유지하기로 하고, ③접견 및 서신에 관한 규정을 대폭 완화, 친족이 아니더라도 교화에 필요할 경우 접견을 허용하는 것과 함께 재야 범조계로부터 비인도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입막음장치(일명 방성구)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수감·포승·쇠사슬 등 호송장비의 사용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함(철무부).
- 미결수의 변호인접견시 교도관이 접견내용을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소자에 대한 징벌중 감식, 접견·서신금지, 작업·운동정지 등을 없애는 한편, 선진국의 개방교도소 외부통근작업의 근거를 마련함(당정회의).
- 「행형법」 개정안은 다른나라의 행형수준에는 물론, 기본적인 인권차원에서 볼 때 포승의 존속, 기간의 축소로는 미흡함. 채워기 금지의 징벌로서의 존재 가치, 우수재소자에 한정하고 있는 신문열독·TV시청·집필, 취업중 부상·사망했을 때 위로금이나 조의금을 법무부장관이 정상을 참작해 주도록 되어있는 규정의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교도소의 시설·급식·환경에 관한 규정도 내부규칙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별도의 법이나 「행형법」에 규정되어야 하는 것 등 미흡한 점이 많음(중앙일보 해설).

: 중앙 94.8.17., 3면; 경향 94.8.17., 1면; 조선 94.8.19.,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105면)·제13호(105면) 참조

◎ 국방부

○ 군인사법 개정의견

- 장교 및 하사관이 비리 등과 관련,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이등병으로 강등시키던 제도를 폐지하고, 국방부와 각군 본부에 각각 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장기복무 전역자에 대한 직업보도교육, 군 복지나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행방불명자 처리 등의 관련조항을 명시하기로 하고, 학생군사교육단(학군·ROTC) 출신 장교들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2년에서 6개월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며, 20년 이상 근속한 직업군인은 정년 잔여기간 10년 이내까지 명예전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국방부).

: 서울 94.8.25., 21면; 한겨레 94.9.27., 2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39면)·제8호(69면)·제13호(52면) 참조

◎ 교육부

○ 학교용지확보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최근 잇따른 신도시건설과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초·중·고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개발공사 등 택지개발사업자가 지방교육청에 개발지역내의 초·중·고교 용지를 공급할 때는 현재는 조성원가(중·고교), 또는 조성원가의 70%(국교)에 공급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무상제공하고, 고교용지는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하도록 하며, 그린벨트내에 고등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그린벨트에 관한 특례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현재는 지방교육청이 전담하는 학교용지비용을 지방정부도 분담하도록 함(교육부).
- 학교용지공급조건을 교육부안대로 변경할 경우 아파트분양가가 가구당 평균 4백만원가량 인상될 것임(건설부).

: 세계 94.10.9., 7면

○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관련 입법의견

- 국교생들의 학원과외를 허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뜻

으로 현장경험이 없는 일반직 관료들의 탁상공론이며, 이번 기회에 교육부 조직을 전문직(교사출신)으로 재편하여야 하고, 과목당 15만~50만원인 대학생 과외는 허용하면서 3만~5만원인 학원과외를 규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임(한국학원총연합회).

- 학원과외를 허용하면 국민학교에까지 과외열풍이 몰아닥쳐 서민생계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어린 학생들을 입시경쟁의 중압감에 빠져들게 만들 것임(학부모).
- 배우고 가르칠 권리를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고, 미진한 학습을 보충하기 위해 학원과외를 오히려 장려해야 함(학원관계자).
- 학원수강을 허용하지 말고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 특활 등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만 예산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는 이상론일 뿐임(교육부).
- 조기과외과외를 부추기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부담을 증가시키는 폐해를 막기 위하여 국교생의 일반과목 과외교습을 허용하려던 것을 유보하고, 개별지도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도교육청별로 교습과정을 개발, 보급하도록 함(당정협의).
- 고교졸업생의 70% 정도가 대학에 진학을 못하는 상황에서 고액 불법과외를 할 경제적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집근처의 학원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고, 수강료가 5~6%선에서 인상폭이 묶여 있고 올해는 동결된 상태여서 일선 학원의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임. 만연된 불법 학원대신 일반교과과목을 보충할 수 있는 "보습학원" 개념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최순현 한국학원총연합회 사무총장).
- ①학원관계법령은 상위법과 시행령·규칙·조례가 서로 어긋나거나 담당공무원조차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관계규정이 복잡하고,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커 민원소지가 상존하며, 하위법령으로 내려갈수록 관계법령의 규제강도가 강화되는 반면 이를 강제할 수단은 미미함. ②학원의 등록제 일원화, 지역별 시설기준 다양화, 수강료 책정의 자율화와 함께 재능이 우수한 국·중·고등 학생들에 대해 조기 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할 수 있도록 속진·월반의 특례를 두기로 하고, 교육위원이 직무 또는 공무여행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설립된 학교부지내에 학교시설을 건축할

때는 교육감이 건축허가를 하도록 함(중앙일보 기획·연재).

: 한겨레 94.8.23., 16면; 서울 94.9.28., 22면; 중앙 94.10.9., 19면; 세계 94.10.9., 2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63면)·제10호(83~84면)·제11호(86면)·제12호(82~83면)·제13호(67~68면)·제94-1호(62면)·제94-2호(93면) 참조

◎ 농림수산부

○ 농지법(가칭) 제정의견

- 「농지개혁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 농지관련 5개법안을 통합해 마련한 농지법안은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농민의 농지소유상한을 완전 폐지함(농림수산부).

- 「농지법(안)」은 부동산투기와 토지소유집중 및 환경파괴의 가속화 우려 등으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함(민주당).

: 동아 94.9.10., 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1호(91~93면) 참조

◎ 상공자원부

○ 공업발전법 개정의견

- 첨단기술의 범위에 엔지니어링·디자인·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해 고시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적극 확대지원하기로 하고, 재정·금융·세제면에서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함(상공자원부).

: 중앙 94.9.15., 3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79면)·제94-4호(83면) 참조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의견

- 배관공사비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시공자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단속대상으로 지금까지의 수도권 위주에서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대도시로 확대하기로 함(공정거래위원회).

: 경향 94.8.31., 22면

◎ 보건사회부

○ 국민건강증진법(가칭) 제정의견

- 담배자판기를 없앨 경우 자판기를 소유한 담배소매인들과 관련업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담배판매활동에 대한 규제가 기존 「담배사업법」으로 가능하므로 굳이 「국민건강증진법(가칭)」으로 이중규제할 필요가 없음(재무부).
- 자판기를 없애면 소매인과 소비자 모두가 불편을 겪게 되므로 영업은 할 수 있도록 해야함(한국담배자판기 주식회사).
-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금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청소년층이 주로 담배를 구입하는 자판기를 없애야 함은 업자의 영업권도 중요하지만 국민건강이 더 우선하기 때문임(보건사회부).
- 담배자판기를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유흥업소 및 담배소매점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표시하거나 금품 및 경품등을 제공하는 일등을 금지함(보사당정회의).
- 담배광고를 일체 금하고, 법상 금한 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에 실행을 포함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후 구성될 기금운영위원회에 민간대표를 과반수 포함시켜 기금운영의 합리성과 시민적 감시기능을 높임.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동아 94.9.15., 29면; 세계 94.9.16.,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107면) · 제11호(98면) · 제94-1호(78면) 참조

○ 식품위생법 개정의견

- 서울시내 일부백화점이 냉장·냉동식품의 가공일자를 변조해 판매해오다 적발돼 처벌문제가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유통기한을 강화하기로 하고, 상품포장과 인쇄글씨의 색깔이 다르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을 갖춘 사업자만의 규제에서 모든 식품판매업소로 확대하고, 가공식품만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현행기준을 철폐해야 함(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 식품위생 감사원의 자격증에 한의학·한약학을 포함하고,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은 '건강보조식품'만을 판매하도록 하며, 1종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증에 한의학·한약학 전공자를 포함시키고, 건강원 또는 개소주집 등에서 가공식품의 근거로 남용되는 한약재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해야 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서울 94.8.17., 1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70~71면)·제94-2호(112면) 참조

◎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개정의견

-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을 주는 것을 5급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헌법」의 합리적 차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가 「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 제29조의 경영지도사와의 범위와 중복되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하고, '개업노무사'를 '개인 또는 법인노무사'로 개업노무사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공인노무사 2인과 경영지도사 1인으로 지도법인을 설립하여 컨설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견

- 남성 노동자도 배우자인 여성노동자 대신 1년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모성보호 차원에서 임신한 여성노동자를 상대로 월 1일의 태아검진 휴일제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중임(노동부).

: 한겨레 94.9.14., 22면

◎ 교통부

○ 도시철도법 개정의견

- 지하철건설로 인한 피해건물에 대해 「건축법」 및 「주차장법」규정에 관계없이 종전규모대로 개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토지

소유주와 협의없이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당정).

: 동아 94.9.12.,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1호(96면) 참조

○ 자동차관리법 개정의견

- ①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기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며, ②자동차판매사업자에게 신규등록신청 대행업무를 의무화, 무등록차량 운행소지를 없애고, 자동차등록번호도 시·도지사가 제시하는 번호중에서 자동차소유자가 임의로 선택하도록 하며, ③자동차계속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과하던 벌금과 과태료 가운데 벌금을 없애는 한편,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업체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정기검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④완성차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 및 성능검사를 실시하게 하는 대신 중대결함시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공개리콜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함(교통부).

: 경향 94.9.12., 2면; 국민 94.9.17., 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0호(97면) 참조

○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의견

- 부두운영회사제의 도입에 따른 대량실업 유발에 대한 보상대책 수립, 조합원 전원 동시 상용화 및 현 근로조건 유지, 작업권의 보장으로 기존업자 뿐만아니라 하역노동자에 대한 보호·보장책을 마련해야 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환경처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의견

- 자동차의 급증으로 높아지고 있는 오존오염도를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경보제'를 도입·실시하기로 함. 이 경보제는 예보와 주의보, 경보 등 3단계에 걸쳐서 발령되며 예보단계에서는 실외 운동경기를 삼가도록 하는 등의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주의보 및 경보단계에서는 자가용운행 통제, 배출업소의 조업감축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짐을 내용으로 함(환경처).

- '배출부과금제도'가 현행 농도규제방식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내보내는 기업은

그만큼 많은 배출부과금을 물어야 하는 총량규제방식으로 개편되며, 수질분야에 있어서는 '최저수준기준'을 설정하여 ①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30ppm, ②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0ppm, ③부유물질은 70ppm 이상의 오염물질을 내보낼 경우 이들 3가지 물질량(폐수배출량 × 농도) 만큼 배출부과금을 물리도록 하며, 대기분야는 96년부터 배출량이 많은 1·2종 사업장에 한해 우선 총량규제를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오염물질은 아황산가스와 먼지 등 2종의 오염물질로, 부과금은 오염물질 배출량과 연료 사용에 비례해 부과할 예정임(환경처).

: 경향 94.8.20., 22면; 한겨레 94.9.2., 22면

○ 폐기물관리법 개정의견

- 일반 및 특정폐기물의 2종류로 구분되어온 현행 유해성기준의 폐기물 분류체계를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로 변경해 처리시설 설치·관리 등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며, 유해폐기물의 성격상 일정한 제한을 두어왔던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업자자격과 폐기물처리업 등 3종류에 불과하였던 폐기물처리업에 종합처리업과 재활용처리업을 추가로 신설하고, 처리업자의 위반행위때 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벌규정을 완화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함(환경처).

: 경향 94.9.4., 2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72면) 참조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양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의 보훈혜택을 주어야 하고,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을 때 입양한 1명에 대해서만 보훈혜택을 주도록 함(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서울 94.10.7., 10면

Ⅱ. 최근입법의견 동향

1. 최근입법의견목록

(1994.8.11. ~ 1994.10.10)

- ◎ 憲政 87
 - 감사원법 개정의견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헌법재판소관련 법개정의견

- ◎ 統一·外交·國防 88
 - 남북경제협력사업관리규정(가칭) 제정의견
 - 병역법시행령 개정의견
 - 순국선열애국지사예우에관한법률안(가칭) 제정의견
 - 통일기금법(가칭) 제정의견

- ◎ 內務·地方行政 89
 - 경찰공무원법 개정의견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가칭)관련 입법의견
 - 공무원임용령등 개정의견
 - 공직자부정재산환수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
 - 국가공무원법 개정의견
 - 재난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정보공개법(가칭) 제정의견
 - 주민투표법(가칭) 제정의견

-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지방재정법 개정의견

◎ 社會 · 文化 · 教育 95

- 건강안가정범국민캠페인관련 입법의견
- 고령자취업촉진에관한특례법(가칭) 및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특례법(가칭) 제정의견
- 교육개혁관련 입법의견
-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귀순북한동포보호법 개정의견
- 기술대학신설관련 입법의견
- 기초질서확립관련 입법의견
-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 민간단체지원육성법(가칭) 제정의견
- 방송법 개정의견
- 사회복지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영유아보육법 개정의견
- 영화법 개정의견
- 음란 · 폭력물유통규제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자원봉사자지원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개정의견
-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정의견

◎ 産業 · 經濟 105

- UR관련 입법의견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개정의견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의견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부정자금유통거래방지법(가칭) 제정의견
- 불공정거래행위근절관련 입법의견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견
-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개정의견
-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의견
- 세제개편관련 입법의견
- 소비자보호법 개정의견
- 외환제도관련 입법의견
- 유통단지개발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은행법 개정의견
- 정부조달계약법 개정의견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의견
- 조세범처벌법 개정의견
- 주세법 개정의견
- 중소기업관계법관련 입법의견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의견
- 특별소비세법 개정의견
- 한국은행법 개정의견

◎ 農林·水産 117

- 농수산물수입관련법 개정의견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의견
- 농협 등 협동조합법 개정의견
- 연안어장보호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建設 119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의견
-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의견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의견
- 도시계획법 개정의견
-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견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의견
- 자가공시법(가칭) 제정의견

◎ 科學技術 · 交通 · 遞信 12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의견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 개정의견
- 소형차량보급확대관련 입법의견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의견
- 지식산업육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행정규제완화관련 입법의견

◎ 環境 · 保健 125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부정불량식품근절을위한 입법의견
- 수산물검사법시행령 개정의견
- 유전자정보은행설치법(가칭) 제정의견
- 음용수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 의료보험법 개정의견
- 의료분쟁조정법(가칭) 제정의견
- 장기이식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전염병예방법 개정의견

◎ 法院 · 法務 128

- 강력범죄예방관련 입법의견

- 검찰청법 개정의견
- 기초질서확립관련법 제·개정의견
- 민법 개정의견
- 범죄신고자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법령용어정비관련 입법의견
- 사법제도개혁관련 입법의견
- 양심선언자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입양특례법 개정의견
-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2. 최근입법의견요지

(1994.8.11. ~ 1994.10.10)

◎ 憲 政

○ 감사원법 개정의견

- ①문화방송, 에너지관리공단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자와 정부출연단체가 재출자한 기관까지 감사대상에 포함시키고, ②감사원에 정부기관감사기관에 대한 조정기능을 부여, 각 감사기관의 감사계획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각 기관의 감사책임자가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구하는 책임요구제를 도입하며, ③감사원 출장소를 전국 3곳에 설치하고, ④공직자의 예금계좌추적허용은 일단 명문화를 유보하고, 앞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대체입법 될 때 추진하기로 함(감사원).
- 각부처 감사책임자에 대한 교체임명요구제는 인사권의 침해이며, 지방사무소 설치와 감사교육실의 교육원격상은 감사원의 기구확대임(경제기획원).
- 감사원의 공직자계좌추적권과 윤리위의 금융실사확대는 실명제의 정착에 역행하는 조치임(재무부).

: 서울 94.10.4., 4면; 동아 94.8.20.,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88면) 참조

○ 정치자금법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현행 국고보조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인식하에 추후 국민여론을 보아가며 법개정여부를 재검토 하기로 함(민자당).
- 정당지정 기탁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려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임(김옥두 의원).
- 아예 모든 기탁금을 비지정으로 하여 야당에 나눠주는 것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함(조순환 의원).

: 서울 94.10.7., 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23면) · 제6호(68면) · 제8호(66~67면) · 제9호(86면) · 제11호(69~70면) · 제12호(69~70면) · 제13호(46~47면) · 제94-1호(48~49면) · 제94-4호(76면) 참조

○ 헌법재판소관련 법개정의견

-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좌우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함(이승우 교수, 경원대법정대학장).
- 헌법재판관의 자격범위를 확대하고, 재판관 9명중 3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6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국회중심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하도록 해야함(차병직 변호사).
- 헌법소원심판의 변호사 강제주의로 인해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불이익이 큼(홍금애 공정사회구현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
- 재판관 자격을 법관 자격자에 국한하지 말고, 재판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임기제를 없애고 정년까지 보장하여야함(한겨레신문 해설).
- 차관급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직급을 다른 헌법기관들과의 형평에 맞도록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함(여야).

: 한겨레 94.9.4., 12면; 세계 94.9.2., 2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0호(69면) · 제13호(47~48면) 참조

◎ 統一 · 外交 · 國防

○ 남북경제협력사업관리규정(가칭) 제정의견

- 북한 핵문제 해결 진전에 따라 대북 투자와 교역등 남북한 경제협력을 총괄할 「남북경제협력사업관리규정(가칭)」을 제정하기로 함(김태연 경제기획원차관보).

: 국민 94.9.27., 1면

○ 병역법시행령 개정의견

- 공익근무요원제도와 관련 공익근무요원 배치후 8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즉각 현역입영조치하고, 무단결근 등으로 현역입영 조치된 공익근무요원에게 적용될

복무기간 등에 관한 「공익근무요원복무규정(가칭)」을 제정하기로 함(국방부).
: 경향 94.8.20., 2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70~71면) · 제12호(73면) · 제13호(53면) · 제94-2호(80면) 참조

○ 순국선열애국지사예우에관한법률안(가칭) 제정의견

- 해외에서 영구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정착금과 보상금지급특례를 인정하기로 하되, 기존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은 폐지함(당정).
: 동아 94.8.27., 2면

○ 통일기금법(가칭) 제정의견

- 국회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수정하거나, 통일기금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민간의 모금활동을 뒷받침해야 함(김찬진 변호사).
- 국민 1인당 GNP의 1%정도를 매년 비축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 먼저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김기택 통일비용조성위원회 총재).
: 세계 94.9.5., 8면

◎ 內務 · 地方行政

○ 경찰공무원법 개정의견

- 경감이하의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경정과 총경의 정년도 2년씩 연장하며, 경사에서 경위 진급자 선발 때 시험과 심사비율을 50대 50으로 하고, 경장·경사에만 해당하던 근속승진제를 경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함(당정).
- 유능하고 전문화된 인력이 조기퇴직해 경찰조직의 안정화와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문제가 있으므로, 경찰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인사관리체계의 일환으로 경찰 고유업무의 전문성을 살려서 기능별로 우수인력을 확보하도록 근속승진제도를 확대하기로 함(백남치 민자당정책조정실장).
: 한겨레 94.8.28., 2면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가칭)관련 입법의견

- 공공전산망이든 개별자료망이든 정보전산망의 관리체계와 보안의식을 새롭게

하며, 법적으로는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거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자칫 정보의 보호보다는 이용쪽에 더 비중을 두어 개인정보의 유출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정보의 제공에는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어야 함(중앙일보 사설).

- 비디오대여점 같은 소규모상거래업체에서 관리하는 고객명단까지 법으로 완벽하게 보호하는 미국등 선진국과 같이 어떠한 성격의 개인정보도 유출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사생활비밀보호법(가칭)」의 제정이 시급함.

: 중앙 94.9.23., 3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2면) · 제8호(73~74면) · 제10호(79면) · 제94-3호(88면) 참조

○ 공무원임용령등 개정의견

- 중요 외교현안이 발생할 때 관련국 방문보다 주한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본부의 교체제를 강화하고, 현행 2급위주의 외무부분부 부서장의 직급을 상향조정, 공관장역임자 위주로 보임토록 할 방침임(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 ①모든 공무원시험에서 필수적으로 치르도록 돼있는 국민윤리과목을 완전히 없애고, ②기술고시 1차시험에서는 국민윤리와 함께 헌법과목도 삭제하며, ③행정고시의 경우 1차시험과목에서 민법총칙과 정보체계론을 빼는 대신 2차필수과목인 행정법과 행정학을 1·2차시험에서 중복해 치르도록 하고, ④외무고시도 1차시험과목에서 문화사와 정치학을 빼는 대신 국제정치학과 국제법을 중복 편성하기로 하고, ⑤신설된 행정고시 국제통상분야의 시험과목은 헌법, 국제법, 국제정치학, 영어, 한국사(이상 1차), 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영어(이상 2차필수) 등으로 확정함(총무처).

: 한국 94.8.19., 2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54면) 참조

○ 공직자부정재산환수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재정보증인의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고 부정한 재산자의 명의로 은닉했을 경우 숨겨준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들 필요가 있음(동아일보 해설).

- 법무부의 「공직자부정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안은 ①수뢰·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공무원에 대해 형확정 전에도 부정하게 취득·증식한 재산에 대하여 법관이 처분동결명령을 내리는 재산보존명령제를 도입하여, 부정재산으로 환수한 후 제3자와 국가간에 소유권분쟁을 빚을 가능성에 대하여 타인재산과 혼화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보존명령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게 하나 편법적 재산도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②부정자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검은돈이 예입되는 즉시 국세청등에 신고하도록 하나, 이는 부정자금 신고의무 또는 처벌조항을 신설할 경우 금융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큰손들이 은행거래를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③돈세탁처벌의 대상범죄와 대상자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재산의 초기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돈세탁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내용으로, 처벌법규를 만든 후 부정수익까지 몰수하는 외국의 입법선례에 모순되며, ④형사사건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에게 돌리는 것은 위헌의 가능성이 높음(국민일보 해설).
- 입증책임전환은 피의자가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 및 무죄추정원칙과 위배되므로 위헌소지가 있으나 공무원범죄를 근절한다는 보다 큰 공익을 위해서라면 기본권제한도 가능함(김철수교수, 서울대 공법학과).
- 몰수에 앞서 부정공무원이 재산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몰수 및 추정보전명령은 가압류, 가처분 등 기존 민사절차로도 가능함(송기성 변호사).
-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론을 추스르기 위하여 정부가 알맹이 없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형벌에 대한 불감증만 키울 우려가 있음(이석연 변호사).
- 범죄를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한 법은 오히려 지켜지지 않으므로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가 적발될 확률을 높여 범죄의 기대이익보다 기대비용이 크도록 해야 함(이진순 교수, 숭실대 경제학과).
- 검은돈을 뿌리뽑기 위하여 돈세탁행위는 반드시 처벌하여야 하나 검은돈 신고의무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부정자금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임(최명근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 공직자에금계좌추적권이 없는 법률제정은 공직부정을 막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미국의 경우 공직자의 예금계좌를 추적하는 것은 공공윤리확립차원에서 제약없이 행해지고 있음(박옥순교수, 명지실업전문대).

- 비리공직자만 처벌할 게 아니라 납세자, 법무사 등 결탁세력(특히 지방의 토호세력)까지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인 특례법 제정이 이뤄져야 함(이상목 세무사).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거액 세도들의 재산환수는 위헌이 아니며, 「지방세법」개정안에 '부정재산환수세'규정을 두어야 함(정균환 국회내무위 민주당간사).
 -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폭을 넓히고, 인맥으로 형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위원을 교체하며, 감사원에 예금추적권을 부여하든지 수사·기소권이 있는 별도의 부정방지위원회를 두어야 함(김성남변호사 경실련시민입법위원장).
 - 현행 범행자체가 대상일때는 공직자가 부정으로 모은 재산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함(정종섭교수, 건국대법학과).
 - 「지방세법」의 '도세징수의 위임'규정을 개편, 시·군이 그 지역내의 도세를 징수해 도에 납입하는 체제에서 시·도 등 광역단체가 지방세 징수기능을 담당해 기초단체에 교부해주는 체제로 전환하여 규모의 경제와 세정의 전문화를 이루며, 지방세 징세체계의 전산화, 부과와 징세기능의 2원화, 감사기능의 실질화를 이루어 세금착복을 줄여야 할 것임(박정수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 동아 94.10.1., 3면; 국민 94.10.6., 3면; 국민 94.10.10., 18면; 세계 94.10.10., 8면

○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

- 공직비리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대민업무 등 10개 민원분야 '취약분야' 공무원의 재산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①1단계로 국세청·관세청, 법무부·검찰, 감사원공무원의 경우 현재 6급까지에서 9급까지 전원, 소방공무원도 현재 소방경까지에서 소방사까지 전원으로 확대하며, 경찰공무원은 현재 경감까지를 경사까지로 확대하고, 중앙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련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관련 공무원도 9급까지 전원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②96년부터 시행될 2단계로는 1단계 5개 직군 가운데 경찰공무원도 경장, 순경까지 전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공사·토지·보건위생·환경 등 5개분야를 추가, 모두 10개분야의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포함시키며,

나머지 일반공무원은 현행대로 4급까지만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청와대수석 비서관회의).

- 모든 재산등록내용을 일반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해찬 의원).
- 최근 잇따른 공직자의 비리사건을 계기로 2급이하 비공개 재산등록자에 대한 재산실사를 가능하게 하고, 비리공직자의 금융거래 사실여부를 영장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거부제도를 없애는 대신 현재 공직자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되어 있는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를 다소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정부).
- 재산등록대상을 본인 및 배우자, 미성년자녀로 축소하고 부모 및 성년자녀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되 재산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하여야 함(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세무, 검찰, 경찰, 건축, 보건, 소방 등 대민접촉이 잦은 중·하위공직자들도 재산등록을 하고 재산변동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존·비속의 재산까지 등록·공개하도록 하며, 각급 공직자윤리위 구성시 3분의 1을 차지하는 내부인사 축소, 위원장의 윤리위원 선발전 축소와 전문성 갖춘 공인시민단체 참여확대로 등록재산에 대한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게 하여야 함(강경근교수, 숭실대 법학과).
- 중·하위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 관세청, 지방정부의 세무직, 검찰사무직, 경찰, 소방, 감사원과 각 부처 감사부서, 건축, 보건위생 근무 공직자 6만여명을 추가로 재산등록 하게 함(이형구 총무처윤리담당관).
: 중앙 94.9.27., 1면; 서울 94.10.8., 1면; 세계 94.10.10., 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3호(88면) 참조

○ 국가공무원법 개정의견

-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상여수당을 차등지급하거나 특별승진시키는 실적급제를 도입하고, 사무관승진시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사무관 승진자를 결정하며 소속부처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이상 근무자 모두에게 응시기회를 개방하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을 병행 실시 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승진심사기준을 법령화 하기로 함(당정).
: 세계 94.8.14.,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3호(88면) 참조

○ 재난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각종 재난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방재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재난관리 총괄기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재난관리대책기금을 신설하기로 하며, 재해영향 평가제를 실시하고 보험제도도 도입·운영하기로 함(당정).

: 중앙 94.9.21., 3면

○ 정보공개법(가칭) 제정의견

- 시민의 행정에 대한 감시·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공개법(가칭)」을 마련해야 함(한상범교수 동국대법학과).

: 동아 94.8.12., 8면

○ 주민투표법(가칭) 제정의견

- 주민투표의 대상이나 발의 및 실시구역 등을 제한하고,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요의결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주민투표의 발의와 청구에서는 자치단체장에게 발의권을 줄 뿐, 지방의회나 주민들의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민자당).
- 주민투표의 영역을 넓게 인정하고, 주민투표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합병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만이 발의할 수 있되 지방의회재적의원 과반수의결이나 투표권자 5분의 1이상의 연서명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민주당).

: 동아 94.9.10., 4면

○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국가직 공무원 1만2천40명 가운데 일반행정직 1백20여명과 농촌지도직 1백19명을 제외한 1만1천8백여명의 신분을 95년부터 97년1월까지 지방직으로 바꾸기로 함(당정).

: 중앙 94.8.15., 2면

○ 지방재정법 개정의견

- 입법예고된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 제118조는 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활동을 침해하고, 제3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에 관한 내무부의 사실상 사전심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에 대한 간섭임(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 사유지등 공유지를 빌려 사용하는 영세서민과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불제도를 없애고 대부료와 사용료는 50만원초과시 연 8%의 이자를 붙여 4회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고 변상금은 3년이내 분할납부하도록 함(행정쇄신위원회).

: 국민 94.8.18., 17면; 동아 94.10.8., 31면

◎ 社會 · 文化 · 教育

○ 건강한가정범국민캠페인관련 입법의견

- 우리사회의 심각한 도덕적 타락을 치유하기 위하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식개혁운동을 개혁차원에서 전정부·범국민적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건강한 가정만들기'를 핵심전략과제로 선정해 부처별로 자체계획을 수립, 우선적으로 추진함. 이를 위한 관련법률의 개정을 검토중임("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모임" 관계부처회의).

: 서울 94.10.8., 3면

○ 고령자취업촉진에관한특례법(가칭) 및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특례법(가칭) 제정의견

- 정부는 정상인들이 단순업무직에 종사하는 노동력배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앞으로 ①저임금·단순업무직 가운데 안마사·전화교환원·복권판매원·악기조율사·승강기안내원·포터(짐꾼)·별목원·청소원 등 8개 직종은 시각 및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만 취업이 허용되며, ②매·검표원, 주유원, 민원상담원, 주차장관리원, 전기·가스·수도검침원, 일반건물관리원, 주정차위반단속원 등 7개 직종은 고령자들만 취업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어기는 고용주는 최고 2백만원까지의 벌금형

에 처하기로 함(노동부).

: 경향 94.9.15., 23면

○ 교육개혁관련 입법의견

- ①교육재정확충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재원의 활용이나 정부의 투자우선순위 조정으로는 교육재정을 GNP 대비 5%까지 확대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교육비 부담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세원의 교육세를 부과하거나 기존의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고, ②대학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전공이수·교양필수학점에 관한 획일적 규제 등을 철폐, 대학모형의 다원화·특성화를 기하며, 연구·교육지원체계 혁신을 위하여 박사학위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교수연구실적을 중심으로 한 정부재정지원, 세계석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소 설립·전문학술지 발간 등을 하며, ③사학자율과 책임제고와 관련하여서는 사립 초·중등학교를 자립형·보조형으로 구분해 선별지원하고, 정부지원없이도 재정적 자립이 가능한 사립중·고에 학생선발권을 되돌려주며, 희망하는 학교에 학생선발권외에 교육과정·등록금책정 자율권도 부여하여 학군제의 일발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고교평준화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며, ④이 외에 내신제도 개선·대학의 연중 신입생 선발·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와 질높은 입시관련평가업무를 전담할 '교육과정 및 평가관리기구' 설치와 5-5-2, 6-3-4, 5-3-4제 등으로 학제 다원화를 꾀하고, 교원양성체제를 개편하도록 함(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혁건의안』).
- ①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국민학교에서 대학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기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②초·중등 사립학교에의 학생선발권 부여 및 납입금자율화, 학교발전기금 수입(이자·임대료)의 비과세, 기부금 전액의 소득공제 등을 하여야 하고, ③교육재원 확보 차원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20%를 교육세로 받던 것을 50%로 올리며 도시계획세의 50%를 교육세로 돌리고,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 11.3%에서 13% 또는 15%로 올리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5천4백억원 또는 6천6백억원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또는 특별예산을 배정하여야 함(윤건영 연세대교수).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유효세율을 2.5배만 높여도 교육세율 인상없이 교육재

정을 확보할 수 있음(이만우 고려대교수).

- 교육세율을 높일 경우 세원확대와 세율인하라는 정부방침의 효과가 반감되며, 법인세, 소득세 등에 교육세를 얹을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의욕감퇴가 우려됨(남궁훈 재무부 세제심의관).
- 재정 경쟁력을 갖춘 '자립형' 사학이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 입시제를 부활하는 방향으로 나갈 경우 자립형 사학은 등록금까지 자율로 책정할 수 있어 우수한 교육시설과 강사진을 바탕으로 부유층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어 영국의 전통적인 사립학교처럼 귀족화 될 우려가 있고, 이는 국민 누구나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대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며, 새로운 세금을 거두겠다는 방안은 세부담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사교육비가 필요 없을 만큼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구상이 필요함(한겨레신문 해설).
-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뤄진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회교육법」을 개정·보완하되 학교와 대학이 지역사회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유도하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도 「사회교육법」에 통합해야 함(권이종교수, 교원대 교육학과).
- 현행 6-3-3-4학제는 청소년들의 성장, 성숙, 지적능력 등이 20년전보다 크게 향상되었고, 통일을 대비해 남북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학제를 운용하며, 지금의 학제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취업하려는 욕구와 기업체의 수요가 조화되지 못하므로 이는 학제의 개편으로 해결하여야 함(한중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국제화 시대에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학사관리의 강화, 커리큘럼의 선진화, 재정의 확보가 요구되며 이는 국가의 지원확충과 기부금입학제 도입으로 함(구천서 국회교육위원).
- 교육관계법은 내용적으로는 교육민주화와 교육자치의 확대, 교육주체들의 권익신장을 기하고, 형식적으로는 상호 유기적이고 통합성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함(박석무 국회교육위원).
- ①유치원을 기간학제에 편입하는 것은 찬성하나, 어린이들의 지능이 발달했다는 이유로 5세아에게 국민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은 매년 6천여 명정도 적체되는 유치원교사 자격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방편으

로 유치원을 국민학교에 편성시키는 것에는 반대하며, ②유치원을 단독건물로 설치하여 중일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아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③국민학교병설로 설치해 오전 오후에 교육을 마치는 절름발이 유치원은 어린이에게도, 직장여성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어린이들이 놀이 등으로 경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이원녕 한국유아교육학회장·중앙대 교수).

- 중·고교의 기본과목수를 축소하며, 중구난방식의 교과를 주입시키는 교육은 고쳐져서, 장래를 생각하고 취미생활을 즐길 여유를 주어야 함(엄규백 사립중·고교장회 회장).

: 한국 94.9.6..3면; 한겨레 94.9.6., 2면; 세계 94.9.12., 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2호(84면)

○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①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조세정책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세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②기능조정측면에서는 초·중등교육, 주택·도시재개발, 생활보호, 사회복지사업, 도시교통사업, 치수·재해대책, 지방경찰행정 등을 장·단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한을 늘리고 중앙의 재정부담을 줄이며, ③지방정부의 자체수입의 증액을 위해서는 지방세구조의 단순화, 과표현실화를 통한 재산보유과세비중 상향조정, 자동차세·주민세·면허세·담배소비세·지역개발세·등록세일부등의 정률세구조 증가세로 전환, 탄력세율 활용 등으로 지방세·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법과 국세의 일부세목을 지방으로 이양하든지 아니면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배분비율을 높여 중앙재원의 이전규모를 증대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④국세·지방세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지방세 제정·개정시 국세·지방세의 중복여부, 주민부담 과중여부, 국가조세정책과의 상충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무부와 사전심의를 하도록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격상시켜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중복과세문제 등의 조정권한을 부여하도록 함(조세연구원 “지방자치하에서의 바람직한 지방재정조정제도”).

: 경향 94.8.13., 5면

○ 귀순북한동포보호법 개정의견

- 북한국적 중국교포들에게 북한에서 직접 귀순하는 북한주민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 영주귀국을 허용하되, 정착금 지원 등 보호조치는 하지 않으며, 이들의 불법체류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보호시설 형태의 수용소에 수용, 국내영주의사와 연고를 심사한 뒤 부적격자는 돌려 보내고 적격자는 직업교육 등을 실시해 국내 정착을 도울수 있도록 함(재외국민정책 심의위원회).

: 한국 8.25.,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3호(88면) 참조

○ 기술대학신설관련 입법의견

- 상공자원부와 산업체가 기술인 양성을 위해 기술교육에 투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기존기술교육기관의 육성·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기술대학과 기능대학의 설립은 특별법이 아닌 「교육법」에 의하도록 해야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기초질서확립관련 입법의견

- 무단횡단·침뺨기 등 기초질서위반행위, 불법정차, 심야 변태영업, 음란출판물 등을 집중단속하며 범칙금 납부조건을 강화하고 범칙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임(관계기관차관보급회의).
-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각종 범칙금상한선 3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범칙금상한액수를 20만원정도로 더 올릴 방침임(국가기강확립실무협의회).

: 국민 94.8.26., 19면; 동아 94.9.7., 31면

○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 철도·지하철과업, 전노대의 연대과업, 현대중공업 장기과업 등 일련의 노사분규 악화로 노조의 정치참여, 복수노조 인정등 노동관계법 쟁점조항에 대한

우려가 많아, 분위기가 안정되고 법외노조들이 성숙할 때까지 법개정추진을 유보하되 우선 노동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의 강화를 위해 관련법률을 개정하고자 함(남재희 노동부장관).

: 조선 94.8.29., 2면

※ 「국내입법건의조사」 제1호(45면) · 제2호(45면) · 제5호(50면) · 제6호(76면) · 제7호(61면) · 제8호(78면) · 제9호(94면) · 제12호(79면) · 제94-1호(57~58면) · 제94-2호(89면) · 제94-3호(93면) · 제94-4호(79면) 참조

○ 민간단체지원육성법(가칭) 제정의견

- ①새마을운동협의회등 민법상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과 「사회단체 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해 신고된 단체로서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비정치성 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지원을 해주며 이를 위해 정부자금과 민간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국민운동육성위원회를 구성,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②국가·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조성과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출연·기부된 금전과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상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며, ③민간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공익적 국민운동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을 하기로 함(민자당).

: 중앙 94.9.11., 2면

○ 방송법 개정의견

- 일본의 경우 위성 등의 무선국 임대제도가 「전파법」에 없으므로 인정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파법에는 무선국 임차규정이 있어 인정제도의 의미없으므로 위성방송국을 현행 방송국 허가와 마찬가지로 공보처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으로 시설허가를 해야 함(체신부).
- 위성방송은 새로운 미디어이기 때문에 공익성 감독 강화를 위하여 기존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위성방송국을 단순한 추천이 아닌 허가권으로 권한을 확대하고, 위성방송법인 가운데 보도·교양·오락·영화 등 전문 편성분야에 대해서는 일간신문사나 통신사의 겸영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보도전문위성방송에 한해 30%의 주식소유 상한을 두기로 함(공보처).

- 위성방송국 허가에 '인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는 정부가 언론기관의 사업허가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언론기관의 설립제한을 금지한 「헌법」조항(제21조제2항)에도 어긋나는 위헌의 소지가 있음(학계).
- 96년 실시될 위성방송 사업(프로그램 제작, 편성 주체)에 대한 공보처 장관의 승인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법개정하기로 함(당정).
- 입법예고안은 공보처의 사업자승인에 앞서 방송프로그램의 사전심의를 맡고 있는 방송위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가 빠져있어 보완해야 함(김창열 방송위원장).

: 서울 94.9.15., 4면; 동아 94.10.9.,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64면) · 제94-1호(58~59면) · 제94-2호(89~90면) · 제94-4호(79~80면) 참조

○ 사회보장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우리실정에 적합한 한국형사회복지모형을 개발하고 경제발전에 걸맞게 복지수준을 연차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호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여 2000년까지는 최저생계비수준을 보장하기로 하고, ①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학비지원, 생업자금융자 등을 통해 자활·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②노인과 장애인 등 특별보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 유료양로원 등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에 1천억원을 융자하고 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함(보건사회부).

: 한국 94.9.28., 10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0호(80면) · 제94-3호(96) 참조

○ 영유아보육법 개정의견

- ①농어촌과 도시변두리지역 등의 탁아소에 일부 보조금을 지급해오던 것을 운영비 전액 국고지원하도록 하고, ②영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출생부터 만 3세까지를 영아, 3세부터 6세까지를 유아로 구분해 △영아보육교사는 고졸학력이상으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유아보육교사는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한 전문대이상 학력자로 자격을 제한하나, 농어촌이나 도시빈민지역 등 취약지구의 가정탁아소 등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교사부족과

근무기피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자격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고, ③보육 시설지원을 위한 기업기부금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을 주는 한편 영유아보육시설 교직원과 영유아에 대해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기로 함(민자당).

- 민간보육시설의 설립을 촉진하고자 관련법을 고쳐 설치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그 외에 용도변경없이 보육시설이 근린생활시설·종교 및 학교시설 등에도 들어설 수 있게 특례조항을 마련하며, 기업의 보육시설에 대한 노동부의 운영·지도 감독규정을 신설하고, 직장보육시설의 사업주 의무부담률(80%)을 낮추며, 주부가 사회복지연수원에서 4백~6백 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보육보조사 자격을 주어, 보육시설당 3인 내외의 보육보조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 취업기회를 보장해 줄 방침임(보건사회부, 『영유아보육(탁아)사업 확대계획』).

: 동아 94.10.4., 29면; 한겨레 94.10.6., 22면; 중앙 94.10.6., 2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4~45면) · 제8호(83~84면) · 제94-3호(97면)

참조

○ 영화법 개정의견

- ①지난 2년간 동결됐던 관람료 인상과 영화별 관람료 차별화 등으로 국산영화 상영을 유도해야 하고, ②한국영화 상영에 대한 부가세와 문예진흥기금 감면 조치, 뉴스문화영화폐지로 상영횟수 확대, 극장시설 개선에 대한 금융지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극장경영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야 하고, ③스크린쿼터제는 존속돼야 하며 전국극장연합회가 낸 위헌심판제기는 스크린쿼터 조항을 없애기 위한 사전포석일 뿐임(한국영화인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 중앙 94.8.12., 3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46면) · 제94-2호(92면) 참조

○ 음란·폭력물유통규제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음란·폭력물을 성인용 및 절대금지물로 분류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판매 및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벌칙을 강화하고 몰수규정을 두며, 폭력성이 짙은

일본만화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하여 간행물윤리위원회나 만화가협회 등이 자율적으로 심의하도록 함(문화체육부).

- ①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컴퓨터를 통한 외국 음란·폭력물 시청을 막기 위해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정의에 CD-ROM, CD-I, 비디오 CD, 게임팩 등 신영상 매체를 모두 포함시켜, 단속근거를 마련하며, ②음반 비디오 산업을 영화산업과 함께 국제경쟁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제작사 사전신고제와 국내음반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폐지하며, 국내시장 개방전 음반·비디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음반및비디오물에대한법률」을 개정하기로 하되, 이에는 음반, 비디오물 수출시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한 현행 법규정이 우리 문화의 해외전파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함. ③1년이상 음반 또는 비디오물 제작실적이 없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줄속 작품제작을 유도,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이를 폐지하며,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제작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하여 불법제작업자에 대한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의 현행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함(당정회의).

: 서울 94.9.30., 3면; 조선 95.8.21., 2면; 한국 94.8.21., 2면

○ 자원봉사자지원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각 분야별로 법률이 제정되면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혼선이 우려됨은 물론 자원봉사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도 어려우므로, 모든 자원봉사 활동에 적용되는 단일법을 제정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정부기관 취업때 혜택을 부여하고 봉사경력을 인정하며, 대학생·고교생의 경우에는 학점인정과 내신반영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방침임(백남치 민자당조정실장).
- 부처별 입법시 자원봉사자 지원·관리기구가 여러개 생겨나 부처이기주의·예산낭비를 부를 우려가 있음(박상천 국회보사위원장).

: 중앙 94.8.21., 1면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개정의견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의 몇가지 문제점으로 ①장애인 고용

현황이 기업 0.39%, 정부 0.78%로 의무고용을 2%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정으로 장애인 복지의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와 노동부도 고용률이 각각 1.39%와 1.48%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이 경증장애인의 고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증장애인 고용 중심의 개정안이 마련된 것과, ② 장애인 고용은 사회통합의 원칙에서 시행되어야 하나 별도의 보호작업장에서 등급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중증장애인 고용이란 구실로 이들을 격리수용하는 범죄적 형태가 자행될 가능성이 크며, ③ 중증장애인 1인을 고용할 경우 경증장애인 2인 고용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중증장애인을 고용한다고 하여 별도로 부담금을 줄여주는 것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않으며, 특히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기업들에 면죄부만 줄 우려가 있으며, ④ 중증장애인을 1~2급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같은 급수라도 장애종류나 일하는 직종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중증장애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악용될 소지가 많고, 장애인을 9급으로 한정해서 임용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차별없이 임용해야 하고, 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을 장애정도와 직종에 맞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적극 환영하게 해야 함(한겨레신문 칼럼).

: 94.10.10., 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61~62면) · 제94-2호(92면) 참조

○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정의견

- 맹아학교 국·공·사립 특수교육기관 1백6개교 학교장이 직접 시각·청각장애 및 지체부자유 등 특수 교육대상자를 심사, 선정한 뒤 특수교육기관을 지정,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시·도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심사한 뒤 교육감이 주거지 등을 고려해 하도록 하며, 장애아 학부모들이 시설 등 교육여건이 좋은 31개 국·공립 특수교육기관에 취학을 신청했다가 수용이 안될 경우 아예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장애자교육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할 경우 국·공립기관의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최대 지원하도록 함(교육부).

: 세계 94.9.23., 2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87면) · 제10호(80~81) · 제11호(86면) 참조

◎ 産業 · 經濟

○ UR관련 입법의견

-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로 95년부터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입제한이 없게 됨에 따라 수입이 크게 늘어날 품목에 대한 관세를 UR농산물협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높여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입이 급증하는 농림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내외가격차(TE)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 TE의 3분의 1범위내에서 특별긴급관세를 추과 부과하기로 함. 개정안은 UR관세협상에서 TE 또는 한도양허세율(실링 과세)로 양허한 농림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세율을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한도양허품목은 TE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품목으로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 79개 품목이며, 관세행정과 관련, 관세부과에 불복해 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하급심 결정이 법정 결정기간내에 이뤄지지 않을 때는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하급심 결정 지연 기간만큼 연장해주는 등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함(재무부).

: 국민 94.8.26.,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72~73면) · 제94-1호(62~63면) · 제94-2호(93~94면) · 제94-4호(82~83면) 참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개정 의견

- 금융실명제 시행당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엄격히 규정해 두었던 금융거래비밀 규정을 앞으로 비리수사나 재산심사에 한하여 금융거래 사실여부 확인과 계좌추적이 용이하도록 함(청와대 실무회의).
- 예금주의 비밀보장에 대한 절충안으로 증거인멸 · 증인위협 등 사법절차를 방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동안 당사자에게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제공동의서의 효력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법무부).

- 긴급명령의 취지와 경제현실을 감안해 「감사원법」을 개정하는 선에서 해결책을 마련함(재무부).
- 대체입법이 고려되고 있지 않으므로 긴급명령의 예외규정에 감사원을 명시하거나 「감사원법」 개정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계좌추적권'을 관철하고자 함(감사원).
- 법관의 영장이 있는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선 다른 금융점포에서도 정보요구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이란 원칙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부패·범죄 추방의 효율적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하되 이는 일단 제공·노출된 정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하여야 함(중앙일보 사설).

: 조선 94.9.17., 1면; 한겨레 94.9.18., 2면; 중앙 94.10.10.,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2호(96면) 참조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의견

- 기금규모가 50억원 미만으로 영세하거나 장기간 조성되지않은 기금 등 불필요한 기금을 정비하기로 함(경제기획원).
- 국회심의를 받지않는 각종 기금을 과다하게 설치한 결과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되어 왔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기금은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임(신철식 경제기획원 기금관리과장).

: 경향 94.9.7., 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85~86면) 참조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기업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설치에 거쳐야 하는 사전적인 허가절차를 폐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자율적으로 설치하게하되 최종오염물질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의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상공자원부).

: 경향 94.9.22., 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90~91면) · 제94-1호(65~66면) · 제94-2호(96~97면) · 제94-4호(84~85면) 참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재벌회사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 등에 대한 출자총액한도를 3년 경과기간을 두고 순자산의 현행 40%에서 25%로 내림(경제기획원).

: 동아 94.9.10., 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47~48면)·제3호(61~63면)·제5호(52면)·제6호(82~83면)·제8호(91~92면) 참조

○ 부정자금유통거래방지법(가칭) 제정의견

- 사채시장단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액 이상의 비금융기관간의 거래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하여 세무당국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민주당).

: 세계 94.8.12., 2면

○ 불공정거래행위근절관련 입법의견

- 결혼예식업, 장의업, 부동산중개업, 이삿짐운송업, 도시가스설비업 등의 끼워 팔기와 가격담합, 불법·부당요금징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공정거래위원회).

: 국민 94.8.30., 6면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견

-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게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공개하는 유해물질 정보제공 제도의 실시와 새로운 설비 도입, 작업공정 변경, 직업병 및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보건문제의 결정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임종한 의사 등 인천지역 의료인 51면).

- 근로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하여 국내에서 사용중인 화학물질 전체에 대해 이미 알려진 유해성·위험성과 이에 따른 취급주의 및 응급조치사항 등 관련 정보일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화학물질정보공개제도(MSDS)를 도입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하여, 사업주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저장·양도할 때 유해물질의 성분 및 권고 허용농도 등 법에 규정된 각종 자료를 비치하도록 함(노동부).

: 한겨레 94.8.11., 1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70~71면) 참조

○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개정의견

-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보상조차 받을 수 없어 근로자들이 근무를 회피하고 있는 바, 산재보험을 전제조업체에 확대함. 또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하기로 하여 영세제조업체에 근무해 산재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외국인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함(노동부).

: 중앙 94.10.1., 25면

○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의견

- 신용금고에서도 예금·적금을 들수 있고 귀금속을 맡기거나(대여금고), 공과금을 낼 수 있고, 신용금고의 계·부금을 들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어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할부 상환외에 일시 상환 조건으로라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재무부).

: 중앙 94.8.28., 5면

○ 세제개편관련 입법의견

-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출범등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실효성있게 지원하기 위해 세율과 과세방법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함. 이에 따라 ①법인세율의 경우 과표 1억원이하는 현행 18%를 유지하고 1억원 이상은 현행 32%에서 30%로 2%인하 조정하기로 하고, ②감가상각 잔존가액제도를 폐지해 시설투자자본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며, 내용연수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③WTO상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는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의 성격의 세제지원제도는 유예기간 만료전까지 폐지하고 그외 각종 특례적 조세지원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기하기로 함(당정).
-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①동일한 교육기관으로 국·공립은 비과세하고 사립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세제상 모순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차별하는 조치이므로 학교법인을 국·공립과 동일하게 비과세법인으로 규정하거나 일반비영리법인과 구분, 특수공익법인으로 분류해 비과세하고, ②사립대학 부

- 속병원에 대해 일반영리법인과 같이 부과하는 법인소득세도 교육용의료행위라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③사립학교법인의 학생납입금에 대한 예금이자원천징수제도도 폐지함(민자당).
- 금융실명제 실시 및 국제교역여건의 변화로 인한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수용하여 마련된 “94년 세제개혁안”은 ‘토지초과이득세’를 포함하여 모두 12개 법률을 개정대상으로 하며 ①감가상각 자유화, 초과소유소득과세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율구조 간소화, ②주세율의 전면 손질 등을 주요골자로 함(강만수 재무부 세제실장).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상계처리하지 않고, 일단 걷은 뒤 다시 되돌려주도록 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개정되어야 하고, 납세고지가 유예된 수입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관세와 마찬가지로 상계처리하고, 특허보세구역 설정하며, 특허수수료를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어야 함(감사원).
 - ①복잡한 세법을 단순화하고, 월급여 50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80만원선으로 올리고, 가족공제나 의료비 특별공제 등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줄 것이며, ②법인세는 32%에서 30%로 낮춘후 추가 인하를 약속하고,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최고세율도 40%, 양도세는 50%로 내리고, 세율단계는 5~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함(재무부).
 - 「조세감면규제법」을 철폐하고 토지세제를 정비하여 증권양도차액까지 포함, 과세기반을 대폭 확충해야 함(이진순교수 숭실대경제학과).
 - 우리나라 가구당 금융자산액은 평균 3천만원으로 금융소득은 3백만원에 불과, 가계당 평균 금융자산소득의 13배가 넘는 금액(4천만원)을 종합과세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있음(최광교수 외대경제학과).
 - 기왕에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할 바에야 1~2천만원 수준으로 종합과세기준을 낮춰야 함(곽태원교수, 서강대경제학과).
 - 종합소득세 형평차원에서선 금융소득 과세기준액을 내려야 하고, 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법인세율도 추가 인하하여야 함(조운제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 종합과세의 금융소득기준금액을 4천만원으로 높게 잡은 것은 적정성 여부에 문제가 있고, 금융실명제 실시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도 기준액을 낮추고, 법인세율은 27% 정도로 낮춰야 함(김준영교수 성균관대).

- 과세특례자는 장기적으로 없애야 하고, 95년 지자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보완해야 함(김준한연구위원, 산업연구원).
- 소득세율 체계와 상속·증여세체계 개편을 96년 귀속소득분과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기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개혁안의 실효성을 저하시킴(전경련).
- 한국의 간접세 부담이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특별소비세율 추가인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함(기협).
- 사치성제품으로 생각되지 않는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과즙음료가 포함된 것은 특소세 제정취지에 맞지않음(최경선 대한상의 이사).
- 중소기업법인세율은 18%에서 17%로 낮추고 적용대상도 2억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야 함(무역협회).
: 조선 94.8.19., 3면; 세계 94.8.16., 9면; 경향 94.8.21., 2면; 세계 94.8.29., 8면; 한겨레 94.8.30., 6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3면)·제5호(52면)·제11호(88~89면)·제94-1호(68면)·제94-3호(101면) 참조

○ 소비자보호법 개정의견

- 소비자들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금융보험·의료·법률서비스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소비자들이 청구할 경우 그 업무를 한국소비자보호원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정보의 수집관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위해정보의 분석·평가 등 실무적인 종합관리를 위해 소비자보호원에 '위해정보평가위원회'를 설치함(행정쇄신위원회).
- 금융·보험·증권부문의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이원화되면 금융시장 혼란 등 각종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각 금융감독기관이 조정하도록 해야 함(재무부).
- 지금까지는 약품공정 등을 통해 제조기준만 제정하고 관리해왔으나 소비자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주무부처별로 안전기준을 제정, 고시하여 리콜제도시행과 병행한 안전관리를 강화함(경제기획원).
: 세계 94.8.26., 2면; 경향 94.8.24., 2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6호(101~102면) 참조

○ 외환제도관련 입법의견

- 96년부터 일반국민도 규모에 관계없이 외화를 마음대로 소지할 수 있으며,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은 96년부터 사전심사를 거쳐 허용하고, 현금차관을 제외한 일반 상업차관은 98년쯤부터 허용하나, 사회간접자본과 첨단기술도입용 상업차관은 95년부터 허용함(재무부).
- ①외환관리제도를 3단계로 개편하여 현재 5천달러인 개인의 해외여행경비를 1단계인 95년에는 허가금액을 대폭 올리고, 96년부터는 일정금액 초과때만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완화할 예정이며, 개인에게 별장같은 비사업용 해외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되, 빠르면 96년부터 금액을 제한해 허용한 뒤 투자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임. ②경상거래는 97년까지 2단계에 걸쳐 완전자유화하며 자본거래는 3단계로 99년까지 추진,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화할 수 있도록 하고, ③「외국환관리법」의 근간으로서 모든 외화를 은행에 넣도록 의무화 해온 외환집중제를 유사시에 대비해 법적근거만 두고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며, 필요조항은 관련법에 넣거나 대체입법함으로써 2000년대 외환제도에 적합한 새 법체계를 마련함. ④96~97년중 경상거래에 따른 외환지급을 전면 신고제로 전환해 완전 자유화하고 외화대출 용자비율(현재 소요자금의 70~1백%)을 95년부터 폐지할 것을 검토중임. ⑤현재 전년도 수출실적의 5%인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98~99년중 30%까지 높이고 일반기업들도 일정액 이하까지는 자산운용용 해외부동산투자를 자유화 함(박영철 금융연구원장,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산하 외환제도개혁소위원회).
- 건당 1만 달러이하 범위안에서 국내에서도 상품거래 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요금 지불과 같은 용역거래, 증여, 사채와 같은 금전대차 등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외국돈으로도 가능함(재무부).

: 조선 94.8.26., 11면; 경향 94.9.9., 1면; 중앙 94.10.10., 1면

○ 유통단지개발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96년부터 3분의 2이상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민간인이 세우는 농수산물 유통 단지에도 토지수용권을 발동하고, 그린벨트내에 일반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되며, 유통시설 설립 인허가절차를 대폭 축소하여 유통단지를 건

설하기 위한 부지는 강제매수할 수 있게 함(건설부).

: 경향 94.8.20., 9면; 한국 94.10.9., 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73면) · 제94-1호(69~70면) · 제94-2호(99면)
참조

○ 은행법 개정의견

- 95년부터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를 도입, 금융업만을 전업으로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은행지분을 12%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고, 여타 주주들에 대한 동일인 소유한도는 현행 8%에서 4%로 하향조정, 기존 대주주들의 경우 4%를 초과하는 지분은 매각처분하도록 하며, 금융전업기업가 대상에서 30대 재벌은 배제하고 설립목적이 특수한 은행이나 합작은행도 제외함.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는 자기자본의 20%에서 15%로, 동일인 지급보증한도는 40%에서 30%로 각각 낮추고, 은행이 쉽게 증자를 할 수 있도록 유상증자에 대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제도를 폐지하기로 함(재무부).
- ①95년부터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 외환, 신한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동일인 소유 지분한도를 현행 8%에서 4%까지 낮추고 금융전업 기업가에게는 12%까지 소유를 허용하며, 설립목적이 특수한 동화은행 등 비상장 4개은행과 민영화추진중인 국민은행 등 3개 국책은행도 동일인 지분을 4%로 낮추기로 하나 금융전업기업가의 진입이 금지되고 지방은행(10개)과 전환은행(2개), 합작은행(1개) 등 13개 은행은 소유구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금융전업 기업가의 참여를 배제하며, ②은행의 동일인 소유 4%초과지분에 대해서는 3년동안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그 기간중에는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하고, 증시안정기금 등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을 지금의 8%(의결권은 4%로 제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장으로 초과지분처분이 어려운 동화, 동남, 대동, 평화은행은 상장후 3년이내에 매각하도록 하고, ③금융전업기업가는 자기자금으로 은행주식을 취득해야 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업종의 지분은 단순투자를 위한 일정비율만이 인정되며, 다른 은행지분은 1%미만으로 제한하고, 30대그룹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 친족이 분리된 위성계열사 등은 금융전업기업가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④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에서

15%로, 지급보증한도는 40%에서 30%로 각각 축소하기로 하며, 동일인이나 재벌그룹에 대한 거액여신이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액여신총액한도제를 신설하기로 함. ⑤증자 등으로 은행의 자기자본이 커진 만큼 동일인 여신한도를 축소하되 법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뒤 기존초과분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⑥은행증자 사전승인제도를 사후보고제로 변경하고 현재 자기자본의 10%로 제한하고 있는 자회사 출자를 20%확대하면서 자율화하되, 자회사의 업종을 금융업으로 제한하기로 함(재무부).

: 국민 94.8.27., 7면; 세계 94.9.3., 7면; 한국 94.9.10., 10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97면) · 제94-4호(89면) 참조

○ 정부조달계약법 개정의견

- 공공공사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 가격기준(최저가 낙찰)외에 공사수행능력도 심사하고 오는 97년부터는 정부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형공사나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서비스 조달 때에는 반드시 외국업체들에게도 입찰 참여 기회를 주도록 함(재무부).

: 중앙 94.8.28., 5면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의견

- 미분양 아파트를 5채이상 사들여 5년이상 임대한 뒤 팔 경우(매입임대)와 건설업자등이 직접 주택을 5채이상 지어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건설임대)에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함(재무부).

- 사회간접자본 1종 및 2종시설 투자액의 15%를 손비처리하고 민자유치사업자가 조성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할 방침임(경제기획원).

-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입주 5년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하고,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촉진지구의 입주자와 사업시행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및 감면, 사업기간의 종토세를 감면함(건설부).

: 세계 94.8.29., 8면; 동아 94.9.16., 11면; 국민 94.9.15., 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4면) · 제4호(34면)

○ 조세범처벌법 개정의견

- 허위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료상을 조세범으로 규정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허위계산서에 나타난 부가가치세액의 2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리고, 경미한 범칙자를 제외한 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조세포탈시의 조세소멸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경리장부 의무보존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세금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죄를 지었을 경우의 벌금형(경합범)은 각 죄의 벌금액수를 단순합계하여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면허없이 가정에서 술을 담가 먹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사항이었으나 95년부터는 자가소비용일 경우 가정에서 술을 만들어 마실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삭제하기로 함(재무부).

: 경향 94.8.12.,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3호(103면) 참조

○ 주세법 개정의견

- 수입이 허용된 외국청주에 맞서기 위해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을 완화하여 탁주의 질을 향상시키고, 쌀소비를 촉진하기로 함. 이에 따라 탁주를 6대도시에 공급할 경우와 장기보존이 가능한 캔막걸리, 팩막걸리는 공급구역 제한대상에서 제외함(재무부).

: 조선 94.8.13., 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3호(103면) 참조

○ 중소기업관계법관련 입법의견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수요물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달제도에 있어서 중소기업특례제도 운용의 혁신이 필요함(중소기업연구원).
-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관련법률을 전면 통폐합하기로 함에 따라 ①그동안 양적 개념인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산정 기준에 질적 개념을 도입하여 '독립하여 소유하고

경영하는 자'를 중소기업자의 요건으로 추가하고, 수출입진흥 및 외국기업과 제휴협력을 증진하고, 지방중소기업의 효율적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종합연구원을 설립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②중소기업 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진흥복권을 발행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지도사의 등록 및 지도사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법」을 개정하며, ③「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과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각각 통폐합하여 「중소기업과대기업간의협력증진에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사업영역 분쟁이 있을 경우 민간업계의 세율 조정을 거친 뒤 정부의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고,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법적 및 세제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창업지원심의회의의 심의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함(당정).

- 중소기업관계법입법예고(안)에 있어서 ①단체수의계약대상에서 해제된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해 관련기업간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방침은 현행 구매법하에서도 현실적으로 경쟁입찰등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중소기업간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법률체제를 바꾸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제도운용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고, ②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조달시장개방 문제는 97년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를 보았는데 우리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 정부 구매제도를 서둘러 폐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도 정부 물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들을 지원함(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산하 중소기업연구원).

: 한겨레 94.9.8., 2면; 경향 94.9.12., 1면; 세계 94.8.16., 8면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각 직할시·도별 개발촉진지구의 면적은 당해 직할시·도별 총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일률적인 제한을 둔다면 지역불만의 핵심인 도간·지방간 격차를 감안하지 않는 것임(동아일보 해설).

: 동아 94.8.22., 3면

○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의견

- 땀질식 처방보다는 토초세를 완전 폐지하고 토지세제를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함(박은태·이동근·김원길 의원).
- 조세저항이 많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투기예방보다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해야 함(곽정출·노승우 의원).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유희토지 범위와 세부담을 축소하면 토초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함(곽태원 서강대교수).
- 토초세폐지는 부동산투기열풍을 다시 재연할 우려가 있음(강신조 의원).
- 토초세폐지의 경우 조세마찰이 해소되는 효과도 있으나 확실한 대안이 없이는 투기심리 및 사회적 불안감의 확산이 우려됨(홍재형 재무부장관).
- ①지가하락을 반영하는 장치로 토초세가 과세된 다음기간에 지가가 하락할 경우 그다음 과세기간 토초세계산시 직전기 지가하락분을 이월공제하고, ②토초세와 양도세의 이중부담 해소책으로 토초세 결정후 3년내에 양도때에 한해 100% 공제해주고 6년내 양도는 60%만, 6년이후 양도는 아예 공제해 주지 않을 방침이며, ③토초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줄이고자 전국단위의 토초세 정기과세는 않는 대신 지가급등지역에만 국지적으로 토초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④예정과세된 토지가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희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예정과세액을 환급하며, 비과세되는 과세 최저한을 과세표준 20만원이하에서 1백만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하며, 세율을 초과누진세율체계로 바꾸기로 함(재무부).
- 이월공제와 같은 제도로 토지소유자에게만 특혜를 베푸는 것은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고, 정기과세일 이전에 유희토지 기준을 벗어나면 예정과세액을 환급한다면 가건물급조의 낭비를 부채질 할 것임(한겨레신문 사설).

: 경향 94.8.11., 4면; 한겨레 94.8.21., 3면; 한겨레 94.8.23.,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87~88면)·제10호(87~91면)·제13호(77면)
참조

○ 특별소비세법 개정의견

- 일정 규격 이상인 대형 냉장고·컬러TV·VTR 등 가전제품과 그랜드형 피아

노 등의 세율은 20%에서 15%로 내리나, 세탁기만은 합성세제 사용으로 수질 오염의 주범이 되어왔으므로 10%에서 15%로 올림. 보석·모피·골프용품 등은 60%에서 25%로 대폭 내리도록 함(재무부).

- 유류에 대한 과세를 가격이 아닌 물량 기준으로 전환시켜 휘발유값 등이 오르면 세금도 덩달아 오르는 물가상승현상을 없애야 함(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 서울 94.8.23., 9면; 국민 94.9.9., 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92면) · 제94-2호(100면) 참조

○ 한국은행법 개정의견

- 통화신용정책 수립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신용정책 최고결정기관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율적 정책결정 기능을 보강해야 하고, 금통위에 비통화금융기관의 은행 유사업무와 금융기관 외국환업무에 대한 통제권을 주며, 재무부장관의 한은 업무감사권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정부 승인권을 폐지해야 함(한국은행).

- 통화신용정책은 경제정책의 일부로서 다른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운용돼야 하고 이를 위해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정부와 제도적 연결장치를 두어야 하며, 한은 독립문제는 정부와 중앙은행간 법규정 등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상호협조를 통해 중앙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함(재무부).

: 한겨레 94.9.28., 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101면) 참조

◎ 農林 · 水産

○ 농수산물수입관련법 개정의견

- UR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의 관리를 위해 국영무역을 하기로 한 쌀 등 97개 품목은 조달청,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유통사업단 등 품목별로 수입창구를 지정, 일원화하기로 하고 국영무역을 인정받지 못한 다른 품목들중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등은 허가권 공매제를 실시하고, 오렌지주스, 전분류 등은 수입추천을 국내산 농산물수매와 연계하고, 옥수수 등 사료곡물은 실수요

자에 대해서만 직접 수입추천을 하기로 함(농림수산부).

: 국민, 94.10.3., 7면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중매인에게 도매행위를 허용하되 받떼기 거래 등 산지수집활동은 금지하며,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상장수수료를 내리고 이익금의 일부를 적립, 경락가격이 현저히 낮아 손해를 보게 된 출하자에게 차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도매법인의 운영상태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매장면적을 줄이거나 늘려주며 경우에 따라서 도매법인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농림수산부).
- 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근대화를 위한 대대적 투자계획을 명시하고 중매인의 도매행위에 대해서는 영업규모에 따라 선별을 명시하고, 중매인의 도매행위에 대해서는 영업규모에 따라 선별허용하는 한편 상장수수료는 대폭 인하해야 함(민주당).
- 규격화가 어려운 배추·무 등 일부농산물에 대해서는 차제에 비상장품목으로 중매인이 거래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이정수 중매인연합회사무총장).
- 도매법인들에 대해 경락가격이 현저히 낮을 때 출하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등의 법개정안 내용은 실행이 어려움(가락시장 동화청과 관계자).
- ①농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소유상한(3~5ha) 이상으로 보유한 농지나 이농 또는 비농민이 1ha가 넘는 농지를 상속 받고도 1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가격(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마다 이행 강제금으로 물리고, 이는 기준을 초과하는 농지를 1년 안에 팔지 않을 경우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통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팔 때까지 해마다 강제금을 물리고, ②중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바꾸고, 원칙적으로 도매행위만 허용하나, 예외적으로 중개도 가능함(당정).

: 중앙 94.8.12., 28면; 서울 94.9.2., 10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3호(104~106면)·제94-4호(91~92면) 참조

○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의견

- 농업용수 공급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농약대금·재파

중대금 등을 직접 지원해야 함(민주당).

: 중앙 94.8.11.,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2호(102~103조) · 제94-3호(106면) 참조

○ 농협 등 협동조합법 개정의견

- 농·수·축협의 신용사업을 경제사업과 분리·통합해 별도의 금융기관을 설립하려는 정부방침에 반대하고, 단위조합장에게 상징적인 대표권만 주고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길 경우 농협기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음(원철희 농협 중앙회장).

-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하고 기획단에서 평가한 내용을 보아가며 별도 은행의 설립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당정).

- 농협·수협·축협·임협중앙회법을 개정해 중앙회사업범위에 의료사업, 농촌지역택지 및 주택공급사업, 창고사업, 묘지관리 및 장의사업 등 복지후생사업을 추가하여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산간지역에 병원 또는 간이진료소, 검진소 등을 설치해 의료서비스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공제사업과 연결해 운영할 방침이며 농어촌주택을 개량하거나 택지를 개발하는 데 생산자단체가 직접 참여하고, 묘지조성과 관리, 장의사업 등도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함(당정).

: 조선 94.8.13., 7면; 서울 94.9.22., 10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2호(103~106면) 참조

○ 연안어장보호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연안어장 보호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연안 공유수면을 매립하는자 등으로부터 일정액의 분담금을 징수하고, 연안해역 양식장 운영어민이나 어촌계에 대해 3년마다 어장청소를 의무화하고 바다에 폐수를 방류하는 산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릴 방침임(수산청).

: 세계 94.10.4., 8면

◎ 建設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의견

- 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 감리회사의 대형화가 절실한 시점에 기술자격 취득자

를 감리회사의 대표로 국한하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기술인의 양성과 함께 감리회사 사주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감리회사의 대표는 반드시 전문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건축기술사 자격증 취득자이어야 함(건축사협회).

: 세계 94.10.8., 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53면) · 제8호(104면) · 제12호(94면) · 제94-4호(92면) 참조

○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의견

- 현재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 · 어린이 놀이터 · 의료시설 · 유치원 · 노인정 등을 건설할 때 주변의 공해공장 및 주유소 등과 50m(도시형 공장은 30m)이상 떨어지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현재 가구당 0.34(지방 읍 · 면지역) ~ 0.6대(서울시)꼴로 돼 있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확보비율을 36%정도 확대하는 등 아파트 단지내 평균주차장비율을 현행보다 평균 27% 늘려 아파트단지의 주차난을 해소하며,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구매 및 생활시설을 통합, 슈퍼 · 의류점 · 부동산업소 · 이발소 · 음식점 등 각종 상점간의 용도변경이 관련구청에 신고없이도 가능하도록 시설구분을 없애기로 함(건설부).
- 건축설계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축직 공무원들에게 건축사보 시험을 거치지 않고 곧장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반면 이미 1차 시험에 합격한 건축사보들에게는 5년의 경력을 요구, 형평에 크게 어긋나고, 개정안은 건축사의 전문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법 개정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임(민간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보들).
- 대학에서 건축설계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건축사보 시험을 거쳐 설계 사무소에서 실무 실습경력을 쌓아 정식건축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과정으로 건축직 공무원들에게 건축사보자격을 주는 개정안은 설계 전문능력이 부족한 건축사를 양산, 국내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정상 교육과정을 밟은 건축사보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대한건축사협회).

: 한국 94.10.3., 3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8면) · 제8호(105~106면) · 제94-1호(74면)
참조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의견

- 준도시 지역에 '농어촌 산업지구'가 만들어지고 이 곳에서는 농수산물 가공공장이나 유통단지 · 농원 등을 쉽게 지을 수 있게 함(건설부).

: 중앙 94.9.14., 2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6~67면) · 제10호(94~95면) · 제12호(96면)
참조

○ 도시계획법 개정의견

- 「도시계획법」의 그린벨트 관련규정을 독립시켜 「환경녹지법(가칭)」을 제정하고, '환경녹지세'를 신설해야 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견

- 최근 임대주택의 신규건설이 저조해 전세값 상승요인이 되므로,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한 건설원가 연동제를 도입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근거마련과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개정 · 고시함(건설부).

- 94년말까지로 예정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혜택을 계속 연장해 입주자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전국 8만8천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5년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의 건설을 확대할 계획임(건설부).

: 중앙 94.8.24., 8면; 동아 94.8.29., 15면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의견

- 서민의 재산권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차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도록 우선변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임대보증금의 범위를 서울 및 직할시의 경우 현행 2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확대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도 서울과 직할시의 경우 현행 7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타지역의 경우는 우선변제보증금대상범위는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우선변제보증금 규모는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올리도록 함(행정쇄신위원회).

: 동아 94.8.29., 5면

○ 지가공시법(가칭) 제정의견

- 공시지가제도에 따른 개별지가 산정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토지공개념제도의 보완·유지 차원에서 현재 국무총리훈령으로 되어있는 지가산정 방법, 결정공고, 불복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포괄하는 「지가공시법(가칭)」을 마련하도록 함(김우석 건설부장관).

: 경향 94.8.19., 2면

◎ 科學技術 · 交通 · 遞信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의견

- 법률의 운용과정에서 10개항목은 입증이 곤란하고, 종합보험가입시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함으로써 이는 형평에 어긋나고, 8개항목 위반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지라도 수단 및 방법의 동원으로 8개항목위반이 아닌 것으로 될 수 있으므로 요령주의·편법주의 사고방식을 조장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9면)·제4호(37면)·제6호(92면) 참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위험을 막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위반할 때 현행 1만5천원의 범칙금을 3만원으로 올리고 면허정지 30일을 부과하도록 함(경찰청).

: 서울 94.8.18., 22면

○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 개정의견

- 전국 고속도로 IC나 분기점 1백80곳의 총 1백80만평에 달하는 유휴토지를 물

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 10곳, 5만평을 대상으로 민자유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내달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바로 민자유치 공모를 할 계획이며, 도로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함(도로공사).

: 동아 94.9.30., 10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37면) 참조

○ 소형차량보급확대관련 입법의견

-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배기량 8백cc이하의 차량을 경자동차로 분류, 에어컨 특소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소형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경자동차에 관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경자동차를 일반승용차와 구별하기로 함. 경자동차를 배기량 8백cc이하, 길이 3.5m, 넓이 1.5m, 높이 2m이하의 것으로 규정하고, 5인이하 유선형은 승용형, 6인이상은 승합형등으로 세분하고, 경자동차구입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지방세법」등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배기량 8백cc이하인 경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50% 경감해 주기로 함(민자당).

: 동아 94.9.17., 2면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심각한 교통체증 해소 방안의 하나로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과 연계한 자전거 이용을 적극 활성화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도로나 건물신축때 자전거 도로나 주차장신호,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도록 규정함(당정).

: 조선 94.9.10., 2면

○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의견

- 개방에 대비하고 통신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지분제한을 제고하여야 함(체신부).
- 통신기기 생산업체의 전화사업 등 통신산업 참여 지분제한을 완화해야 함(민자당).

- 내국인에 대한 지분제한은 완전히 철폐하여야 함(상공자원부).
- 현재 10%로 제한되어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지분을 33.3%까지 확대해야 함(건설부).

: 중앙 94.8.31., 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4~55면) · 제3호(69~70면) · 제94-1호(77면)
참조

○ 지식산업육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고부가가치화와 지식집약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식산업에 대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세제, 금융, 정부지원면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지식산업에 신규진출시 타법령에 의한 각종 규제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허심사 등에 있어 우선권을 제고하기로 함(국회 국제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 세계 94.9.1., 2면

○ 행정규제완화관련 입법의견

-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민간주차장도 현재 일률적으로 30분 단위로 된 주차요금계산을 5~10분 단위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12월부터 주차빌딩이나 역세권주차장, 사설주차장 등과 같은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계산단위부터 우선적으로 시·도지사가 자율 책정하도록 「주차장법」시행규칙을 개정함(행정쇄신위원회).
- ①운전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자만 처벌하던 것도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에 대해서는 운전자를 직접 처벌하도록 하고, 택시회사에도 모범택시를 허용하고 운전기사를 포함해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게 하며, ②부당요금을 받거나 약관을 어긴 이삿짐센터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10만원과 30만원에서 50만원과 6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이사화물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해 이삿짐센터에 대해 5백만원이상의 이사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임(공정거래위원회).
- 조리사 고용의무 대상업소 기준을 현행 객석면적 66m²(20평) 이상에서 1백50m²(50평) 이상으로 완화함(행정쇄신위원회).

: 국민 94.8.27., 7면

◎ 環境 · 保健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①집단묘지의 1기당 면적을 현행 9평에서 3평으로, 개인묘지는 24평에서 6평 이내로 축소하고, ②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설묘지, 화장장, 공설납골당 설치 의무를 부과하며 시한부 매장제도 도입하며, ③사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최고한도액을 시·도지사가 고지해오던 것도 지역사정에 따라 이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해 가격자율화의 근거를 마련하며 불법묘지설치자 및 개장명령위반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보사부).

: 세계 94.8.26., 2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96면) · 제8호(117면) 참조

○ 부정불량식품근절을위한 입법의견

- ①「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품검사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업소의 허가번호를 도용한 무허가식품의 제조판매행위를 형법상 사기죄에 준하는 처벌기준으로 엄벌하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금액을 높이며, 과징금으로 대체가능한 행정처분 범위를 축소하기로 하고, ②유해한 물질을 첨가한 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함(보건사회부).

: 세계 94.9.7., 25면; 서울 94.9.7., 22면

○ 수산물검사법시행령 개정의견

- 국내소비용 김, 미역 등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국민 보건상 개정되어야 함(이규택 의원).

: 국민 94.10.5., 4면

○ 유전자정보은행설치법(가칭) 제정의견

- 강력범죄자의 혈액채취·보관을 의무화하여 수사자료에 활용하도록 함(대검

중수부).

: 세계 94.10.5., 2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2호(112면) 참조

○ 음용수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음료수는 광천음료수가 아닌 단순한 지하수일 뿐이므로 광천음료수란 명칭대신 시판음료수 등으로 명칭을 바꿔야 하고, 지하수자원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순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제보다 허가제가 바람직함(한정상 지하수환경학회부회장).
- ①정수기는 이미 보사부에서 규격승인까지 해주고도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음용수관리법(가칭)」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일관성이 없고, ②무분별한 광고는 소비자의 음용수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소비를 부추겨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므로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③광천음료수 영업행위에 대한 영업세는 물값 징수와 별도로 부과되어야 하고, 징수한 취수 요금과 부담금은 전액 당해지역의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만 쓰여야 함(남상호교수, 건국대 환경공학과).
- 용천수를 광천음료수에 추가한 것은 산악이 많고 경사가 높아 물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은 우리나라 여건상 맞지 않음(강광과 상임이사,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지하수개발의 허가는 현행 신고제하에서도 오염방지시설 등의 설치의무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규정도 있어 거의 허가제와 동일한 수준임(김형철 환경처차관).
- 광천음료수회사 뿐만 아니라 생수를 많이 쓰는 맥주 및 청량음료수회사도 수질 개선부담금을 물어야 하며 용기도 환경오염이 적은 유리병이나 플라스틱병으로 대체되어야 함(이해찬 국회의원).
- ①수원개발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며, ②환경처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광천음료수에 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③광천음료수 원수의 범위를 현행 '암반대 수층내 지하수와 용천수 등 ...'에서 '등'을 삭제하여 하천수, 계곡수, 호소수 등 지표수를 광천음료수의 원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임(환경처).

: 국민 94.8.16., 2면; 국민 94.8.25., 1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3호(123면) · 제94-4호(94~95면) 참조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 ①진료내용을 가급적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도록 하고, ②의료기관의 진료과목에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를 추가하여 급증하는 산업재해환자와 응급환자를 위한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③의사면허시험에 현행 필기시험 이외에 임상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여 의과대에서 학생들에게 환자를 실제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진료능력을 교육하도록 하고, ④의사면허 필기시험과목을 현행 15개 과목에서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정신과학, 예방의학, 보건의약법 등 7개 과목으로 축소함(보건사회부).

: 서울 94.9.17., 2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7면) 참조

○ 의료보험법 개정의견

- 매년 계속 재사용하는 의료보호수첩 확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도록 하던 것을 읍·면·동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7일이 걸리던 확인기간도 신청 즉시 발급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의 의료보호수첩 재사용 확인제도를 개선함(행정쇄신위원회).

: 동아 94.8.29., 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110면) 참조

○ 의료분쟁조정법(가칭) 제정의견

- ①의료인과 환자사이의 의료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보사부와 각 시·도의 의료분쟁 조정기구를 설치, 소송에 앞서 이 기구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②분쟁조정에 따른 배상을 위해 의료배상책임 보험제도를 도입,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도록 하며 의료인의 보험가입도 의무화 하도록 하며, ③의료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의료사고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당정회의).

: 중앙 94.8.26.,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5호(62~63면) · 제13호(92~94면) · 제94-3호(124면)
참조

○ 장기이식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뇌사를 인정하지 않아 뇌사 판정의 법률적 근거가 없고, 대부분의 장기 이식이 뇌사자의 생전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뤄져 법률적·의학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문제이며, 뇌사는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식물인간'과는 달리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뇌사자의 장기를 적극적으로 이식하여 다른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선진의학의 추세임(의료계).
- 심장이 살아있는 생명을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단절시키는 뇌사개념은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며, 뇌사판정이 본인을 위해서라기 보다 장기이식을 위한 것이라면 생명을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장기이식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뇌사판정이 불가피하다면 뇌사판정위원회 같은 기구를 구성, 엄격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심재우 고려대 교수).

: 한국 94.10.4., 31면

○ 전염병예방법 개정의견

- 만성 B형감염을 제3종 법정전염병에 포함시키고, B형 감염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킴(보건사회부).

: 조선 94.9.10., 30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110면) 참조

◎ 法院 · 法務

○ 강력범죄예방관련 입법의견

- 강력범죄로부터 일반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의 양형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력범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3번이상 살인·방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종신형을 의무화하는 「삼진법」의 도입을 검토해야 함(법무부).

- '보호감호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았고, 현행 「형법」상 누범의 경우 형을 2배로 가중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은 살인·강도·강간 등 흉악범들에게 엄한 처벌을 두고있는 상황에서, 「삼진법」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증벌만 앞세운다고 범죄가 줄어들지가 의문임(법조계).

: 조선 94.9.26., 29면

○ 검찰청법 개정의견

- 검찰총장의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검사의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상향조정하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고등검찰청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제주지역부터 우선 실시하기로 함(당정회의).

: 중앙 94.8.18.,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5호(63면) 참조

○ 기초질서확립관련법 제·개정 의견

- 범칙금의 상한선을 연체 가산금까지 포함 최고 10만원으로 인상,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무질서추방 단속인력의 확대방안으로 대학생이나 노인등 자원봉사감시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학점이나 경력을 가산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원·산림경찰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며, 95년부터는 질서확립을 위해 공익요원을 배치하기로 함(국가기강확립실무협의회).

: 서울 94.9.7., 1면

○ 민법 개정의견

- 동성동본간의 혼인이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하나, 모계혈족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므로 동성동본혼인금지조항이 합리적인 근거를 잃고 있으며, 동성동본불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근친혼 금지조항을 신설해 부모의 8촌이내 혈족간에 혼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조용식 판사, 『대구지법 전체법관회의』).
- 동성동본금혼규정과 관련하여, 자식들은 부모의 유전인자를 각각 50%씩 받는 데도 혼인금지범위를 모계는 8촌이내, 부계는 모든 동성동본으로 정한 모순으로 인하여, 동성동본끼리 혼인을 하고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바, 혼인금지 범위를 부계-모계 모두 8촌 또는 10촌 이내로 규정함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함(대법원 법관회의).

: 한겨레 94.9.24., 14면; 조선 94.10.22., 27면

○ 범죄신고자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①범죄신고자가 신변보호를 요구할 경우 이사나 전업 알선, ②범죄신고자의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손실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 ③범죄신고자의 직장내 인사상 불이익차단 등을 보장, ④범죄신고시 신고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범죄신고자를 위한 보호기금을 조성하고 범죄신고자를 가급적 분리 신문해 신변안전을 보장할 방침임(법무부).

: 동아 94.9.30., 30면

○ 법령용어정비관련 입법의견

- '북한괴뢰집단', '북한공산집단', '수복'등 북한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14개 법령의 용어를 삭제하거나 다른 말로 바꾸는 법령용어를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1백 23개 법령에 대해서도 재정비할 것을 검토중인데,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발효등 남북관계변화에 따라 일부법령의 용어정비 필요성이 생겼고, 앞으로 분야별 세부합의서가 채택됨에 있어서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통일원).

: 동아 94.9.27., 4면

○ 사법제도개혁관련 입법의견

- 헌법소원의 변호사강제주의를 폐지하고,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증원(연간 6백 명이상)하며, 법학교수에게 법관자격을 부여하고, 법학교수를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고, 변호사 보수를 법정화함(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 서울 94.8.23.,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107~110면) · 제13호(100~103면) · 제94-1호(83~85면) · 제94-2호(113~115면) · 제94-3호(129~130면) 참조

○ 양심선언자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양심선언자를 보호하고 포상해 제2, 제3의 양심선언자가 나오도록 보호법을 제정해야 함(강철선 의원).

: 경향 94.10.5., 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3호(131면) 참조

○ 입양특례법 개정의견

- ①입양아를 양부모의 친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아가 성년이 되면 그 출신에 관해 알 권리를 인정하며, ②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동입양 가정에 대하여 양육보조금지급, 주택분양시 우선알선, 전문사회사업 서비스지원 등을 함(보사당정회의).

: 동아 94.8.27.,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3호(131~132면) · 제94-4호(97면) 참조

○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 체포영장제 및 체포적부심제를 도입하는등 국민의 기본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①구속전 형사피의자의 불법구금수사 시비를 없애기 위하여 정식구속에 앞서 판사의 사인을 받아 신병을 일시 구금, 조사할 수 있는 체포영장제를 도입하고, ②판사 앞에서 체포의 적합성을 가릴 수 있는 체포적부심사제와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판사와 대면, 구속사안에 해당하는지를 심문받을 수 있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제(영장실질심사제)도 채택하며, ③구속적부심 청구시에도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 ④검사가 모든 수사관서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석방명령권을 부여하고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⑤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정지제도를 도입하고 피고인이 증인이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보석을 할 수 없도록 함(당정회의).

- 「행형법」 개정안은 체포영장제에 있어서 영장의 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음을 근거로, 수사 주재자로서의 검사의 위치를 보다 강화하고 아울러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체포영장제보

다는 현행의 구인제도를 활용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여야 함. 구인장의 24시간과 체포영장의 48시간의 차이는 수사의 신속과 과학화로 극복하여야 하고, 불구속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 2회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필석재판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것임 (이영란교수 숙명여대 법학과).

: 한국 94.8.19., 2면; 세계 94.8.18., 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121~122면) · 제12호(110면) · 제13호(105~106면) · 제94-1호(85면) · 제92-2호(116~117면) 참조

Ⅲ. 주요입법예고법률안

1. 주요입법예고법률안목록

(1994.8.11.~1994.10.10)

- ◎ 統一·外交·國防 13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 內務·地方行政 138
 -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소방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안
 -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 社會·文化·教育 143
 - 공인노무사법개정안
 -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교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
 -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문개정안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

◎ 産業 · 經濟 150

- 관세법중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
- 기금관리기본법개정법률안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안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 상속세법중개정법률안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외자도입법중개정법률안
- 은행법중개정법률안
- 인삼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안
- 주세법중개정법률안
- 토지초과이득세법중개정법률안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 農林 · 水産 172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개정법률
- 농지개량조합법제정법률안
-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양곡관리법개정법률안
-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양곡증권법개정법률안
- 축산법중개정법률안
- 축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建設	181
○ 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	
○ 건축법중개정법률안	
○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科學技術 · 交通 · 遞信	187
○ 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개정법률안	
○ 도시철도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한국해운조합법중개정법률안	
◎ 環境 · 保健	191
○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의료기사법개정법률안	
○ 의료분쟁조정법안	
○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 法院 · 法務	198
○ 공무원부정범죄수익의몰수등에관한특례법안	
○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보호관찰법개정법률안	
○ 입양특례법개정법률안	
○ 행형법중개정법률안	

2. 주요입법예고법률안내용

(1994.8.11.~1994.10.10)

◎ 統一 · 外交 · 國防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9.13 (국가보훈처공고제1994-18호)

1.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군무원과 종군기자를 포함하려는 것임.

○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9.14 (국방부공고제1994-13호)

1. 개정이유

군인의 병영생활중 야기될 수 있는 인사상의 애로사항이나 개인신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제도를 신설하고, 업무수행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훈련·복지 및 사기증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군인의 신분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군인사제도의 체계화와 군전투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 단기복무대상자로 구분된 공군사관후보생 출신 조종장교의 복무구분을 장기복무로 변경하고 그 의무복무기간이 12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년으로 조정함으로써 대학장학생의 공군 조종사관후보생 과정의 지원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유도함.

나. 군인으로서 주간근무를 하면서 군이외의 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을 종전에는 그 수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수학기간의 5할을 가

산하여 복무하도록하고, 군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며, 국내교육기관에서 6월미만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가산의무 복무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군인으로서 주간근무를 하면서 군이외의 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을 종전에는 그 수학기간을 해당하는 기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수학기간의 5할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하고, 군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며, 국내교육기관에서 6월미만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가산의무 복무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20년이상 복무하고 전역할 경우 장교는 퇴역, 준사관 및 하사관은 면역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퇴역으로 통일하여 적용함으로써 신분간 위화감을 배제할 수 있게 함.

마. 장기복무후 전역하는 군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바. 병영생활의 명랑화와 군의 단결력 제고를 위하여 군 생활중 야기될 수 있는 근무여건, 인사관리, 신상문제등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고충처리제도를 신설함.

○ 병역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9.14 (국방부공고제1994-14호)

1. 개정이유

공익법무관계 신설에 따라 병역법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과 현행 규정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변호사자격이 있는 병역의무대상자중 군법무관 소요의 잉여자원을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법률사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공익법무관계 신설에 따라 병역법상 근거규정 마련

나.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군무관후보생출신장교의 복무기간을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장교의 복무기간 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 다. 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이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인 사법과 병역법상에 의거 제적처리 및 보충역 이등병처분의 이중처벌 하던 것을 군인의 권익보호차원에서 해당신분은 유지할 수 있도록 보충역의 장교·준사관제도를 신설함.
- 라.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을 현역복무중인 자중에서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선발된 자의 신상변동 등으로 인한 취소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상근예비역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 마. 상근예비역의 복무범위를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만 파견근무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군부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국방부장관의 승인하에 군을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함.
- 바. 입영 또는 귀향여비를 현재 징집·소집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병으로 지원하여 입영 또는 귀향하는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內務·地方行政

○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9.20

1. 개정이유

행정소송법의 개정('94.7.27. 법률 제4470호)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도 공무원의 인사에 관련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무관 승진시험제도를 개선하며,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핵가족시대의 공무원들의 출산 및 육아를 돕고 공무원 가정의 건강관리를 위해 공무원에게 육아휴직 및 가사휴직 기회를 부여하며,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권익보호를 위해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둬.
- 나. 종전에는 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는 반드시 승진시험을 거쳐 임용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처의 사정에 따라 승진심사에 의거하거나 승진시험을 거쳐 임용할 수 있게 하되, 제도변경에 따른 대상공무원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다.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 라. 남·녀 공무원이 1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년이 내의 기간 무급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마. 공무원이 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 자녀의 사고나 질병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 무급의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은 재직중 모두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기소 제외)될 경우에 반드시 직위해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소방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9.23 (내무부공고제1994-67호)

1. 개정취지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성능검사업무등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위험물안전기술협회를 설립하고, 비상문 폐쇄등 화재시 임명피해가 우려되는 행위를 하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는 소방서장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범칙행위에 대한 처리특례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가스시설 및 지하구등의 설치허가에 대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은 그 설치허가에 대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은 그 설치허가전에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건축물·가스시설에 대하여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지하구등에 대하여는 그 설치자가 설치전에 소방서장과 협의하도록

함.

- 나. 건축물이 신축되는 때에는 즉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축된 때부터 일정기간의 선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선임유예기간을 신설함.
- 다. 시·도지사가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설치허가시 실시하는 설계도서의 검토·중간검사 및 완공검사 업무를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지사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하는 한국위험물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하고, 기존 위험물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의 시설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정기검사업무는 그 규모에 따라 한국위험물안전기술협회 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라.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위험물안전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수료한 사람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제조소 등의 범위에 자가주유취급소 및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자가발전소용 제조소 등을 포함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일부 완화함.
- 마. 위험물제조소등이 완공되는 때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는 때에는 그날부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재선임하도록 하였으나 난방용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또는 재선임할 수 있도록 선임 유예기간을 신설함.
- 바. 소방시설점검업자는 소방시설의 점검업무만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효율적인 점검과 점검업자의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소비상시설의 정비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사. 성실하고 책임있는 소방시설의 설계·감리 및 공사로 기준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계·감리 및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하자보증과 관련한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내무부 및 시·도에 각각 소방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아. 대형 위험물시설에 대한 민간안전성능검사제도를 공공안전성능검사제도로 전환하여 위험물검사기능이 공공성과 안전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위험물 안전에 대한 기술연구축적과 제도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권자인 시·도지사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한국위험

물안전기술협회를 설립하도록 함.

자.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비상문 폐쇄·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비상문유도등의 소등·화재경보설비의 전원차단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적발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처분할 수 있도록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특례제도를 도입함.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안

예고일자 : 1994.9.23 (내무부공고제1994-66호)

1. 제정취지

지방자치시대 정신에 입각한 원활한 지방공무원교육훈련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다양한 지방자치행정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의 자율성과 책임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는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정별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다. 5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관장하기 위해 특별시장, 직할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공무원교육원,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 소속하에 교원연수원을 두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소속하에 지방공무원연수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교육훈련기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 및 피교육생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함.

마.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기관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9.3 (내무부공고제1994-60호)

1. 개정이유

5급에의 의무적 승진시험대신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심사승진이나 시험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본인 의사에 반한 4급이상 퇴직자의 결원보충승인제의 폐지 및 5급이상 지방공무원의 소청심사관할권을 시·도로 이관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며 출산·육아휴직제도와 가사휴직제도를 신설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94. 3. 10. 법률 제4741호)에 따른 관계규정을 정비하면서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되는 읍장·면장·동장을 별정직공무원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정치운동을 허용함.
- 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지방의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관련 조례 및 규칙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
- 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하던 5급이상 지방공무원의 소청사건을 시·도별로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함.
- 라.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실적이 현저한 자를 도서·벽지 또는 읍·면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 마. 명예퇴직한 자는 재임당시의 공무원의 정년에 달하기 전까지는 정무직 및 전문직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 사.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시에는 승진시험을 거쳐야만 하던 것을 시험승진 또는 심사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실적에 따라 특별승급 또는 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자.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된 때와 공무원이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의 사고나 질병간호가 필요한 때에는 1년이내의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본인 의사에 반한 파면·해임·면직 처분후 40일 이내에 후임자를 보충발령시 4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5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충 임용하도록 함.

◎ 社會 · 文化 · 教育

○ 공인노무사법개정안

예고일자 : 1994.9.27 (노동부공고제1994-40호)

1. 개정취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확정된 「각종 자격사 관련제도의 개선」의 후속조치로서 공인노무사의 자동자격취득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공인노무사의 직무수행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이해관련국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행정에 종사한 통산경력이 10년이상이고 그중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이 부여되던 것을, 이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정의 특별전문연수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함.

나. 노무법인의 인가 취소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

다. 노무법인은 사무소 명칭에 노무법인이라는 용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라. 개업노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에 대하여 서류열람을 신청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함.

마. 공인노무사의 업무추진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제도를 신설함.

바. 자격대여행위등에 대한 금지규정을 명문화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함.

사. 단순한 조사의 기피·방해 또는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

료로 바꿈.

○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26 (교육부공고제1994-27호)

1. 개정취지

신규교사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시 응시연령과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신규교사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당해 지역의 학교교육의 안정과 교원의 수급사정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연령과 기타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9.9 (교육부공고제1994-29호)

1. 개정취지

대학규모에 관계없이 대학 및 그 장의 직명을 총장 또는 학장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법이 개정(1991. 12. 31, 법률 제4,474호)됨에 따라 현재 당해 대학에 재직중인 학장 또는 총장을 총장 또는 학장으로 각각 그 임기 중에 직명만 변경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의 추천을 생략하고 그 임기는 당해 대학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재 학장 또는 총장으로 재직중인 대학의 장을 총장 또는 학장으로 각각 그 임기중에 직명만 변경하여 임용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추천을 생략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임기는 그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함.

○ 교육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9.12 (교육부공고제1994-30호)

1. 개정취지

교육대학이 4년제로 개편된지 10년이 경과하여 대학원 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수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이 조성되었고 많은 초등교원이 대학원진학을 희망

하고 있음에도 현행규정에는 교육대학에 대학원을 들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14만 초등교원의 학구열 해소와 전문성 신장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교육대학에도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민 기초교육인 초등교육의 발전과 초등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대학에 초등교육전공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방송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10.6 (공보처공고제1994-17호)

1. 개정취지

'95년 상반기 방송·통신 복합위성이 발사될 예정인 바, 국민의 문화정보 혜택의 확대, 산업적과급효과 및 위성방송의 세계적인 추세등을 감안, 국가전략적 차원의 장기적 안목에서 위성방송을 실시하고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편성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참여 제한을 두지 아니함. 다만, 보도전문편성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법인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0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함.

나. 위성방송법인이 유료위성방송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약관을 정하여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위성방송법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유료 위성방송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다. 위성방송법인은 지진·태풍·홍수등 재해발생시 그 예방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재해방송을 하여야 하며, 공보처장관은 필요시 동재해방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보처장관은 위성방송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송방식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위성방송법인이 공동출자하는 등의 형태로 방송지구국 설비를 일괄하여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위성방송공시청안테나를 통한 위성방송 공동수신을 허용하되, 종합유선방

송 등 각 방송매체간의 보완·균형발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종합유선방송국이 허가된 종합유선방송국역내에는 50가구이상의 집합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위성방송공사시청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바. 위성방송법인을 타인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위탁 위성방송법인 및 외국의 비국내위성방송법인으로 구분함.
- 사. 위탁위성방송법인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설비 이용에 관한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비국내위성방송법인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아. 전문편성(보도전문편성 제외)을 행하는 위성방송법인에 한하여 100분의 15범위이내에서 외국자본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함.
- 자.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전문편성방송이 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주된 방송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
- 차. 위성방송프로그램 심의, 광고방송등의 경우에는 방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

예고일자 : 1994.9.3 (교육부공고제1994-28호)

1. 개정취지

직업기술교육의 확충 및 충실화를 통하여 국제화·개방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문중심의 교육체제를 개편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 등의 산업교육기관 설치·운영등 산업교육진흥의 의무를 강화하고, 민간협의체인 산업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산학협동을 활성화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학생진로지도를 강화하여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도 중학교 졸업생수의 2분의 1이상의 학생수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산업기관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다. 산업기술발전과 산업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현장실습 대상 산업체선정을 중앙 및 지방 상공회의소에 설치되는 민간협의체인 산업교육협의회가 1차적으로 담당하도록 함.

마. 산업교육과 산업체의 장이 산업기술의 개량 또는 개발을 위하여 산업자문을 하거나 연구기기를 상호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교육협의회는 기술의 혁신 등에 의한 신기기를 산업교육기관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사. 산업교육과 산업현장을 연계하고 산업교육을 위한 산업계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상공회의소에 산업교육협의회를 둬.

아. 산업교육협의회는 장은 필요한 경우에 교육행정기관, 산업교육기관, 산업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함.

자. 산업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산업현장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차. 국가 등은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 산업체 등과 산업교육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30 (노동부공고제1994-38호)

1. 개정취지

행정규제완화과제중 수용과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대통령께 건의하여 확정된 행정쇄신기획연구과제인 “산업재해예방과 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산업안전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합의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

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한 곳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작업중지등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행위를 하기전 또는 한후 직상급자들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르도록 하였음.

- 다.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기술적인 사항만 지침으로 정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기술상의 지침과 작업환경의 표준에 관한 지도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라.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지도를 받도록 하였음.
- 마. 환경처와 이증으로 실시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업무를 환경처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함.
- 바. 사업주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재제를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양도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물질의 명칭, 취급시 주의사항등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였음.
- 사. 종전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사착공 60일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공사도면이 나오지 않는등 동 계획서 제출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그 제출기간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완화하였음.
- 아. 사업장에서 위험물질의 누출·화재 및 폭발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 및 인근지역에 즉시 또는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사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예방대책 및 사고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전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음.
- 자.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보수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시험·등록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차. 경미한 범위반 사항인 법령요지의 미게시, 안전표지의 미부착, 근로자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준수 등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문개정안

예고일자 : 1994.8.24 (노동부공고제1994-37호)

1. 개정이유

그간 정부에서 직접 담당하여 오던 산재보험 일선업무를 보험서비스의 전문성

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사로 위탁함에 따라 근로복지공사의 운영체제를 산재보험업무의 비수익적 성격에 부합하는 산재보험복지공단으로 개편하며, 근로복지공사법·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등 3개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산재보험관련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통합 정비함으로써 보험업무 위탁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함.
- 나. 공단의 사업은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의 지급등의 보험사업, 산재보험시설의 설치·운영사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등으로 함.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공단에서 산재보험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재원은 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정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적립금, 보험사업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함.
- 라.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하되 장기적인 재정의 안정유지와 그 수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의 예입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며, 그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도록 함.
- 마.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의 대상에 보험급여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도 포함시킴으로서 산재심사청구와 행정심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산재보험업무관련 이의심사제도를 일원화 함.
- 바. 근로복지공사는 근로복지공사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고용관계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하고 공사해산 당시의 정부출자금은 공사해산일에 공단에 출연된 것으로 봄.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9.12 (교육부공고제1994-31호)

1. 개정취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목적에 의학관련분야인 간호학과 약학을 추가하여 이를 명백히 하고, 현재 법인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병원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학관련분야의 범위에 간호학과 약학을 추가하고, 병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현 병원장의 임기부터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도록 함.

◎ 産業 · 經濟

○ 관세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20 (재무부공고제1994-59호)

1. 개정취지

UR농림축수산물 관세협상 결과를 관세법에 수용·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1993년 1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을 관세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UR농림축수산업 관세협상 결과를 관세법에 수용함.

① UR관세협상에서 양허한 농림축수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저가 농림축수산물의 일시적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농업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② UR관세협상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양허한 농림축수산물의 경우 당해 양허세율을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국내외가격차가 큰 농림축수산물의 수입급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나. 1993년 1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을 반영함.

①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을 하급심 결정이 지연된 기간만큼 연장토록하여 국민의 권리구제기회를 확대하고

②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심사청구를 법정기간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함.

○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25 (재무부공고제1994-71호)

1. 개정취지

납세자의 편의제고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이 부여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행위 및 무신고행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여 과세의 엄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세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명문화하는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는 세목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목에 관계없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무신고·단순과소신고등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정하도록 함.

나. 현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또는 1월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과소신고한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한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대신고한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내(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부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납세자가 국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심판청구를 거치하도록 하는것을 명문화 함(국세심판의 필수적 전치주의).

라.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개시 7일전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천재·지변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현재는 수정신고기한(6월 또는 1월)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00% 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0%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감면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함.

바.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행정구제절차(심사청구, 심판청구)진행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함.

○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25 (재무부공고제1994-72호)

1. 개정취지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징수유예를 허용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상호주의에 의해 징수유예를 허용함.

나. 현재는 독촉장의 발부를 납기경과후 7일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납기경과후 15일이내에 하도록 함.

○ 기금관리기본법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9.3 (경제기획원공고제1994-5호)

1. 개정이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그동안의 재정개혁조치로 1995년 폐지가 확정된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석유사업기금, 폐기물관리기금, 조달기금, 해외자원개발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설치근거법률을 동법 제2조에 의한 [별표]에서 삭제

나. 추가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식품진흥기금, 낙농진흥기금, 산업디자인·포장진흥기금, 산업설비수출기금, 산업안전관리공단기금, 어업기술훈련소 운영기금, 모자보건기금, 산업인력관리공단기금의 설치근거법률을 동법 제2조에 의한 [별표]에서 삭제

다. 1995년도부터 중소기업진흥기금이 승계하도록 되어있는 중소기업구조조

정기금의 설치근거법률을 동법 제2조에 의한 [별표]에서 삭제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안

예고일자 : 1994.9.15 (경제기획원공고제1994-6호)

1. 개정취지

가격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절차 마련,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강화,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발절차 간소화등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법률의 일부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무부장관이 매점매석행위에 대하여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고발 가능하게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함.

나. 변화된 경제사회여건을 감안하여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수준을 상향조정함.

다. 경제기획원장관, 주무부장관, 시·도지사등이 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권자, 부과절차등을 규정함.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20 (상공자원부공고제1994-92호)

1. 개정이유

1993년 12월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협정(UR/TRIPs)에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 이 협정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대비코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긴급사태 혹은 극도의 위기상황시에는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와 배치설계의 이용에 관한 협의없이도 통상이용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정을 할 수 있는 요건중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를 “공공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하고 이 경우에는 국내 수요를 위하여만 재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정을 한 사유가 종료하고 재발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침해한 자에 대하여 권리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단서 조항을 삭제함.

○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25 (재무부공고제1994-64호)

1. 개정취지

개방화·국제화의 새로운 경제환경하에서 기업의 대외경쟁력강화를 실효성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 계속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내에서 기업회계기준을 대폭수용하여 기업의 납세비용과 행정비용을 축소하도록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확충하는 등 기업의 조세환경을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법인세율을 다음과 같이 하향조정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과세표준금액 1억원 이하분	18 %	18 %
초과분	32 %	30 %

나. 기업의 내부자본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내용년수의 상·하 25%범위내에서 기업이 자기 기업의 실정에 맞게 내용년수를 책정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하고 10%의 잔존가액제도를 폐지하는 등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함.

다. 계속성이 지켜지는 범위내에서는 기업회계를 대폭 수용하여 기업의 납세비용과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을 축소함.

- ① 손익의 귀속시기등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하도록 함.
- ② 기업회계상의 장기할부 취득자산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제도를 수용하고 세법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고정자산의 임의적인 시가평가제를 폐지함.

③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

라. 기업이익을 사내에 유보하여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잉여금처분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초과유보소득세과세대상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방법을 국별한도제에서 일괄한도제로 전환하여 공제한도액을 늘려주고 공제한도초과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하여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함.

바. 기관투자자가 장외등록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과 같이 80%를 예금불산입하도록 하여 장외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함.

사.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하향조정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일 반	25 %	20 %
미 등 기 양 도	40 %	40 %

아. 일반 비영리법인과 비영리공익법인의 기부금 손금한도를 통일하고 준비금 제도로 전환하여 소득의 50%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인정하도록함.

자. 현재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이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행과 같은 납부방법과 법인세 면제대신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25 (재무부공고제1994-68호)

1. 개정취지

소규모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액부징수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 대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부가가치세법 과세특례자중 1과세기간 납부세액이 6만원(1과세기간 매출액 3백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납부세액이 12만원(1과세기간 매출액 6백만원)미만인 사업자에게까지 적용함으로써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소규모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나. 현재 사업자간 거래시에 세금계산서를 3매발행하여 2매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수를 2매로 축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비용을 줄이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소지를 축소하여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고자 함.

다만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세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사업자에게는 납세부담이 없게 하고자 함.

○ 상속세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25 (재무부공고제1994-66호)

1. 개정취지

상속·증여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율체계를 단일화·적정화하고, 재산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 범위를 확대하며, 영농상속인에 대하여 종지등 상속공제를 주택상속공제등 타물적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공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민을 지원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보고절차 개선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속·증여세 공제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①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액이 현재는 「1,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

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현행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거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최고 8억원까지 납세자가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② 증여세의 배우자공제액이 현재는 「3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천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5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5천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인상함.

나. 상속세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시행시기 : '96.1.1.).

현 행		개 정(안)	
5천만원 이하	10%	5천만원 이하	10%
5천만원~2억5천만원	20%	5천만원~2억5천만원	20%
2억5천만원~5억5천만원	30%	2억5천만원~5억5천만원	30%
5억5천만원~10억원	40%	5억5천만원 초과	40%
10억원 초과	50%		

다. 증여세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시행시기: '96.1.1.).

현 행		개 정(안)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이하	10%
2천만원~1억5천만원	25%	2천만원~1억5천만원	20%
1억5천만원~3억원	35%	1억5천만원~3억원	30%
3억원~5억원	45%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55%		

라. 농사를 직접짓는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농지등에 대하여 현재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중 주택상속공제등과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상속 공제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상속공제등 타 물적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공제하도록 하여 농어촌발전을 지원함.

마. 퇴직수당·공로금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이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현재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물가상승을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도록 함.

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되 출연일로부터 2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던 것을 실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기간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법인의 보고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사. 자녀가 부모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경우 현재는 증여자별로 각각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합산과세하도록 함.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25 (재무부공고제1994-63호)

1. 개정취지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그 기반이 마련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96년부터 실시하고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각종 공제제도를 통합·정비하고 공제수준을 높여 전반적으로 소득세부담을 경감하며, 소득세의 과세방식을 현행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성실신고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96년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금액(부부합산기준 4천만원)초과의 고액금융소득에 대하여는 기준금액 이하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기준금액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도록 함.

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소액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0%에서 '96년 15%로 인하하여 원천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 되도록 함.

다. '96년부터 3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차익 및 각종 공제회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장기에 걸쳐 형성된 소득을 소득발생연수로 나눈 연평균소득을 계산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그 평균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소득발생연수를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연분연승법으로 과세하도록 함. 다만, 공제회 소득중 종업원들로 구성된 공제회에서 발생한 소득은 퇴

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라. 채권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5%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고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40%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다만,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 채권이자에 대하여는 계좌거래시에는 15% 원천징수후 연분연승법으로 종합과세하는 방안과 25% 원천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방안중 납세자가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

마.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자료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연 2회(8월말, 익년 2월말)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가산세를 1%에서 3%로 강화함.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원천징수 자료제출은 '95년부터 제출하도록 함.

바. '96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부담증가를 완화하고 사업소득과 표현실화를 적극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5%~45%의 6단계 세율을 10%~40%의 4단계 세율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세율체계를 단순화 함.

현 행		개 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0~400만원	5%	0~1,600만원	10%
400~800만원	9%	1,000~3,000만원	20%
800~1,600만원	18%	3,000~6,000만원	30%
1,600~3,200만원	27%	6,000만원 초과	40%
3,200~6,400만원	36%		
6,400만원 초과	45%		

사. 세율체계조정에 따라 각 소득계층에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종 공제수준을 상향조정하고, 공제제도를 통합·단순화하여 세액계산의 편의를 도모함.

아.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특별공제등을 근로소득자외에 모든 소득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을 제고하며, 평균적인 지출비용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 제출없이도 연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록 표준공제제도를 도입하고 공제종합한도 제도를 신설함.

자. 현재 연월차수당등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한도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이를 근로소득공제에 흡수·통합시키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근로소득공제를 400만원 이하는 100%공제, 400만원 초과하는 30% 공제하고 공제한도를 620만원에 8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함. 이에 따라 근로자의 면세점은 4인가족 기준 587만원에서 1,057만원으로 높아지게 됨.

차. '95년부터 자율적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함)과세방식을 현행 정부부과 제도에서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함.

카. 양도소득세율을 다음과 같이 하향조정함(시행시기: '96.1.1).

현행	개정(안)
- 2년이상 보유분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분 40%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분 45%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50% ○과세표준 5억원 이하분 55%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 60% (국민주택 30%) - 2년마다 보유 60% - 미등기 전매 75%	- 2년이상 보유분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분 30%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분 40%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분 50% (국민주택 별도세율 폐지) - 2년마다 보유 50% - 미등기 전매 (현행유지)

타. 양도소득공제액을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통합조정함으로써 공제제도를 단순화함(시행시기 : '96.1.1.).

현행	개정(안)
- 양도소득공제 ○연간 150만원	- 양도소득공제액을 인상하고 소득공제를 양도소득공제에 흡수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 신고시 미공제 잔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에서 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5년이상보유 : ② 양도차익의 10% 공제 ③ 10년이상보유 : 30% 공제 - 양도소득특별공제 :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율(5%한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25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양도소득 특별공제제도를 흡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이상 보유 : 10% 공제 ○ 5년이상 보유 : 15% 공제 ○ 10년이상보유 : 30% 공제
--	---

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현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1개월 연장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도록 함.

○ 외자도입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23 (재무부공고제1994-62호)

1. 개정취지

최근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경제의 개방화·세계화 추세에 대응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종합행정서비스체제를 마련하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국내에서 독자적인 개발이 곤란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등을 확충하며 기타 외국인투자제도를 간소화·투명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종합행정서비스제도 마련

①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근거 마련

-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정보제공, 고충처리 등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재무부 및 관계부처 공무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외국인투자종합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설치

-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진흥관실에는 외국인투자진흥관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다른 실·국 등을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그 실장·국장 등을 외국인투자진흥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③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설립관련민원의 신속처리

-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설립관련 민원 중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는 민원은 외국인투자진흥관이 주관이 되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일괄심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설립관련 민원의 처리기간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순·경미한 사항은 15일 이내, 기타의 경우에는 45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5일, 15일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상기 처리기간내에 민원인에게 허가·승인 등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승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함.

나. 고도기술수반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충

-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하고 국내에서 독자적인 개발이 곤란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다음과 같이 확충함.

현 행	개 정(안)
- 법인세 또는 소득세 ○ 사업개시년도와 그후 3년간 100% 감면 ○ 그후 2년간 50% 감면	○ 최초 소득발생년도부터 5년간 100% 감면 ○ 그후 3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 ○5년간 50% 감면 - 토지 · 건물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 -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 ○관세 ·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소득발생년도부터 5년간 100% 감면 ○그후 3년간 50% 감면 ○5년간 100% 감면, 그후 3년간 50% 감면 ○관세 ·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100% 감면
---	--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5년이 되는 사업년도부터 감면기간을 기산

다. 외국인투자절차의 간소화 · 투명화

-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는 출자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긴 내국지급수단 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내국지급수단(원화)에 의하여도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출자한 법인 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은 이를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그 법인에 출자한 외국인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투자자로 보아 앞으로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

○ 은행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9.15 (재무부공고제1994-77호)

1. 개정취지

금융의 개방화 · 국제화에 대응하여 금융자율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이에 상응

한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적극 유도하고 편중여신 억제를 통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며, 금융기관의 소유분산을 통한 사금고화를 방지함과 아울러 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주체의 형성을 유도하는등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금융기관의 증자에 대한 사전 인가제도를 사후보고로 변경하고,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20%범위내에서 자회사 출자를 자율화함.
- 나. 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20%에서 15%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한도는 자기자본의 40%에서 30%로 각각 축소하는 한편,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동일인 또는 동일 계열 기업군에 대한 금융기간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의 총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함.
- 다. 금융기관의 임원의 자격요건을 현행 결격사유외에 추가로 신설하고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구체적 자격요건, 임원선임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은 공시하여야 할 은행경영상황에 관한 주요한 정보·자료 및 그 공시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은행에 관련내용의 공시를 요구할 수도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 경영공시제도를 강화함.
- 마. 금융기관의 이용자에 대한 권익보호의무를 신설하고,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의 보고시기, 보고절차등에 관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결정권한을 명문화함.

○ 인삼사업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12 (재무부공고제1994-58호)

1. 개정취지

UR타결결과 농산물 협정문에 의거 인삼류의 수입자율화가 불가피하게됨에 따라 인삼류의 유통질서 확립과 인삼경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수입되는 인삼류중 최소시장 접근물량에 대한 수입권자 지정, 수익금 처리절차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극삼의 정의를 재정립(백심(內白)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태극삼의 제조·유통을 자유롭게 함.

나. 행정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홍삼류의 국내판매권을 지정제에서 자유화 시킴.

다. 종전까지 규제하던 인삼수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최소시장 접근물량에 해당하는 인삼류의 수입권자·추천권자의 지정근거마련 및 수익금 발생시 경작자에게 환원시킬 수 있도록 인삼사업진흥기금에 출연토록 의무화라. 법 제15조의 개정과 관련 수출입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

- 제1항:300만원→1,000만원, 제2항:200만원→500만원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25 (재무부공고제1994-65호)

1. 개정취지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과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됨에 따라 현행 세금우대저축이자를 10%원천과세하고 법인세율이 인하되고 감가상각이 확대됨에 따라 일부 지원제도를 축소하는 등 기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자유치사업 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창업할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각종 조세감면을 배제하여 왔으나,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전략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허용하도록 함.

다. 감가상각제도를 개편하여 잔존가액을 폐지하고 기준내용연수를 25% 범위 내에서 기업이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반감가상각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감가상각비에 추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특별감가상각제도를 폐지함.

라. 공공법인에 대한 세율구조를 아래와 같이 조정함.

구 분	현 행	개 정
일반공공법인	과표3억원이하 : 18% 과표3억원초과 : 25%	과표1억원이하 : 18% 과표1억원초과 : 25%
협동조합법인	10%	12%

마. 기관투자가가 수취하는 국·공채 이자소득에 대한 현행 50% 내지 75%의 법인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제도도입과 함께 현재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저축 및 5%로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로 조정함.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비과세함.

사.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관세를 면제하는 등 '97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함.

아.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방법에 의해 조세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상 당액을 일정기간내에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용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 조세법처벌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25 (재무부공고제1994-73호)

1. 개정취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를 수수하는 행위(일명 자료상)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조세범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소시효기간과 장부보존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면허없이 주류를 제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함.

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2배이하의 벌금에 처벌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장부의 보존의무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라. 공소시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25 (재무부공고제1994-70호)

1. 개정취지

주류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개방화·국제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나친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현행 제도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탁주의 공급구역을 시·군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공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보존이 가능한 탁주는 공급구역제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농민·생산자단체의 주류제조업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농민·생산자단체의 주조사고용의무 면제대상 주류를 전 주류로 확대함.

다. 주류 제조의 신규진입 장애요인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요건인 기준제조수량제도를 폐지함.

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류판매장을 동일 시·군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이전시 사전신고제로 전환함.

마. 주류용기 모형의 다양화와 병마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납세자가 납

세증지, 납세병마개 또는 자동계수기 설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납세증지·납세병마개 사용제도를 개선함.

바.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토지초과이득세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25 (재무부공고제1994-67호)

1. 개정취지

세부담의 적정과 과세의 공평을 구현하기 위해 초과누진세율체계를 도입하고, 지가하락사의 보완규정을 마련하며, 일정기간내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전액 공제하도록 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정기과세의 경우 지가가 안정된 시기에는 전국 단위 과세를 중지하고 지가급등지역만 과세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조세마찰소지를 해소하는등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보완

① 세부담의 적정과 과세의 공평을 구현하기 위해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도입함.

현행	개정안
50% 단일비례세율	과표 1천만원 이하분 : 30% 과표 1천만원 초과분 : 50%

② 무주택자 1가구 소유토지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과 일치시킴.

현행	개정안
가구당 60~80평	가구당 200평

③ 임대용 토지중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다

만,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내에 한함.

- ④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가 다음 과세기간에 지가가 하락한 경우 그다음 과세기간 세액 계산시 직전기 지가하락분을 이월하여 공제
- ⑤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부담조정을 위해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범위를 확대함.

현 행	개 정 안
토지초과이득세 결정후 1년내 양도 : 80% 3년내 양도 : 60% 6년내 양도 : 40% 6년이후 : 필요경비공제	3년내 양도 : 100% 6년내 양도 : 60% 6년이후 : 현행과 동일

- ⑥ 기준시가 산정근거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및 동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임을 법률에 명시함.

나. 기타 시행상의 미비점 보완

- ① 정기과세의 경우 지가가 안정된 시기에는 전국단위과세를 중지하고 지가 급등지역만 과세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조세마찰소지를 해소함.

현 행	개 정 안
정상지가 상승율이상 지가상승한 유희토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3년단위로 과세	3년단위로 과세하되,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이 정기에금이자율의 상하 5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시 전국적 집행은 중지. 다만, 지가급등지역 및 예정과세된 지역에만 과세

- ② 과세기간중 토지소유권이 유상양도된 경우 취득자는 자신이 토지를 보유한 기간분의 토지초과이득세만 부담하도록 함.

- ③ 예정과세된 토지가 정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예정과세액을 환급함.
- ④ 과세최저한을 상향조정하여 소규모토지보유자를 보호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함.

현 행	개 정 안
과세표준 20만원이하	과세표준 100만원이하

- ⑤ 토지초과이득세 신고기간을 조정

현 행	개 정 안
9. 1. ~ 9. 30.	10. 1. ~ 10. 31.

- ⑥ 신고전에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예정통지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안내제로 대체하면서 안내기간 조정

현 행	개 정 안
7. 1. ~ 8. 10.	8. 1. ~ 9. 10.

- ⑦ 현행 신고불성실 가산세 제도는 폐지하고, 그 대신 신고납부기한내 신고납부를 권장하기 위하여 신고세액공제제도(세액의 10%)와 무납부가산세(세액의 10%) 제도를 신설함.
- ⑧ 도·농통합에 따라 기존의 읍·면지역이 새로이 시지역으로 편입되더라도 종전과 같이 읍·면지역으로 간주하여 과세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함.

○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25 (재무부공고제1994-69호)

1. 개정취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형태의 변화에 맞추어 일부 과세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하고 복잡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며,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 인하여 유통구조의 왜곡을 일으키는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및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특별소비세제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중 그 과세범위 및 세율을 다음과 같이 일부 조정함.

과 세 물 품	중 전 의 비 율	개 정 세 율
(1)보석등과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가격의 60%	기준가격초과 가격의 25%
(2)귀금속제품	물품가격의 20%	기준가격초과 가격의 25%
(3)고급모피	물품가격의 60%	기준가격초과 가격의 25%
(4)투전기등 오락용품	물품가격의 60%	물품가격의 25%
(5)골프용품과 수렵용 총포류	물품가격의 60%	물품가격의 25%
(6)고급가구	물품가격의 10%	기준가격초과 가격의 25%
(7)냉장고와 냉동고	□ 대형 20% □ 소형 15%	□ 물품가격의 15%
(8)전기세탁기	물품가격의 10%	물품가격의 15%
(9)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	□ 대형및관련제품 20% □ 소형 15%	□ 물품가격의 15%
(10)모타보트·요트와 동 관련제품	물품가격의 30%	물품가격의 25%
(11)피아노중 그랜드형의 것	물품가격의 20%	물품가격의 15%
(12)고급시계	물품가격의 20%	기준가격초과 가격의 25%
(13)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	물품가격의 20%	물품가격의 15%

(14)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물품가격의 25%	기준가격초과 가격의 25%
(15) 텔레비전영상투사 기와 동 관련제품	물품가격의 30%	물품가격의 25%
(16) 커피와 코코아	물품가격의 20%	물품가격의 15%
(17) 카카오마스	물품가격의 10%	비과세
(18) 고급음단	<input type="checkbox"/> 모제품 20% <input type="checkbox"/> 기 타 10%	<input type="checkbox"/> 기준가격초과 가격의 15%
(19) 터키식 탕	입장료의 100%	1인 1회 입장시 5천원

나. 보석등 7가지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행전체 물품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다. 하치장 미납세반출의 경우 현재 제조장과 하치장별로 각각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특별소비세납부는 당해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할 수 있도록 함.

라. 장애인용승용차를 구입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범위를 대리운전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그 면세범위를 확대함.

◎ 農林·水産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개정법률

예고일자 : 1993.9.10 (농림수산부공고제1993-67호)

1. 개정취지

현재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여러 회계와 기금에서 분산 지원되고 있어 효율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은 사업의 내용과 재원이 상호 중복되고 있어 농어촌발전기금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통합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농어촌발전기금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통합함.
- 나. 회계는 투자계정과 용자계정을 두고 투자계정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보조사업을, 용자계정에서는 종전에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시행하던 용자사업을 지원토록함.
- 다. 투·용자계정의 세입재원은 법률개정이전의 세입재원인 농수산물에 부과·징수되는 관세액, 배합사료에 부과·징수되는 관세액, 배합사료에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상당액의 일반회계 전입금, 농지 및 산림전용 부담금, 다른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외에 채권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및 재정투용자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추가하였음.

○ 농지개량조합법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3.9.3 (농림수산부공고제1993-63호)

1. 개정취지

- 1970년 1월 12일 제정된 농촌근대화촉진법의 내용중 “제3장 농업진흥공사”와 “제4장2절농업기계화사업시행”이 1990년 4월 7일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수용되고,
- 1980년대 후반부터는 농지중심의 개량·개발이 농어촌의 생활환경 시설까지를 포함한 농어촌개발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현행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절차, 토지 등의 수용과 보상, 농가주택개량사업, 농지개량시설의 보호관등을 새로 제정하는 농어촌정비법에 이관시킴에 따라
-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남아 있는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현행골격을 유지보완하되 생산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조합의 재정자립과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며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합육성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농지개량조합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합과 연합회에 관한 총칙을 새로이 규정하고
- 나. 조합의 재정자립과 건전한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원확보 및 정부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농지개량조합육성발전기금을 신설하였음.

다. 총회 의결사항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변경

- 제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처분

- 조합 적립금의 설정 및 처분

라.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 선거일 공고일 전 1년이내에 조합부과금의 체납사실이 있는 자

마. "조합구역내"라는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제한 문구를 삭제함.

바. 제40조에 규정한 조합사업자의 수탁자에 연합회를 추가하였음.

사. 탈퇴조합원의 책임조항에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상실전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이행하도록 신설

아.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였음.

자. 조합의 양곡대금 전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차. 농지개량계의 설치권한을 농림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고 농지개량계의 경비부과도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사항에서 시·도지사의 인가사항으로 이양하였으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가 농촌조합비 수준을 초과할 때에는 지방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카.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대리인을 조합(연합회)직원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함.

○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23 (농림수산부공고제1994-49호)

1. 개정의 주요내용 및 취지

가. 비료생산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판매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비료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비료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비료판매업 신고업무를 행정의 지방자치화에 맞추어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이양함.

다. 비료생산업 및 판매업의 등록(신고포함)기준중 시설기준을 폐지하여 신규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함.

- 라. 경제산업발전에 맞추어 자원 재활용 및 환경오염방지시책 수용을 위하여 부산물비료범위를 확대 세분화하고, 축산농가의 축산부산물(축분 및 뇨)비료화 절차개선 추진
- 마. 농림수산부장관 소속하에 “비료공정규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비료공정 규격 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비료의 품질향상을 기하고자 함.
- 바. 양질비료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업 및 비료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업환경보호 및 비료개발촉진” 규정을 신설함.
- 사. 세계무역자유화 추세에 부응하여 “비료의 수출입 및 판매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양환경 보전과 무분별한 각종 부산물 유입에 따른 병해충 피해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물 및 유기질비료에 대한 수입관리를 제도화함.
- 아. 국제무역자유화 추세 대비 수입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여 국내비료 생산업등록과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 자. 행정처분중 영업정지 기간을 최고 6월에서 3월로 완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비료수급 원활을 도모함.
- 차. 행정처분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처분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도록 함.
- 카. 생활환경 오염방지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각종 부산물의 비료화 추세에 따른 중금속 및 유해성분의 피해로부터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부산물비료도 자체품질 관리하도록 의무화 함.
- 타. 불법 및 유해비료의 처리근거(회수, 판매중지, 폐기 등)를 두어 불량비료 유통을 방지하고 환경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함.
- 파. 중금속 및 유해성분 피해 우려가 적은 농어업 부산물의 비료화 및 판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업 부산물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적용예외 규정을 추가 설정함.
- 하. 비료유통단속시 채취하는 시료를 유상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유재산보호를 도모함.
- 거. 비료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위탁근거 규정을 둠.

너. 주무부장관의 비료 “생산 및 매도명령권”, “비료가격결정권”을 삭제하여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함.

더. 벌금 및 과태료를 현실화하고 규제완화 일환으로 벌금형의 일부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함.

○ 양곡관리법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3.9.6 (농림수산부공고제1993-64호)

1. 개정이유

주곡의 자급실현등 양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양곡가공및 유통부문에 대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자금 및 미곡의 매
입자금을 지원하며 민간부문을 통하여 구매하는 일정량에 대하여 차액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매예시제의 도입 및 양곡 관리기금의 부채정리
근거와 기타식량의 절대부족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규제위주로 운영하던 현
행체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가 매입하는 양 이외의 일정량을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정부매입가
격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시가와 구매가의 차액을 양곡매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차액지급제의 근거를 마련함.

나. 농가가 예측가능한 영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예시하
도록 하는 구매예시제의 근거를 마련함.

다. 누적된 양곡관리기금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곡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지금까지 발생한 양곡관리기금의 부채는 별도의 부채정리기금을 두어 청산
하도록 함.

라. 수확기에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벼를 담보로 생산농가에 자금을 용
자할 수 있는 미곡담보융자의 실시근거를 마련함.

마. 생산자로부터 미곡을 매입하여 건조, 보관, 가공 및 판매를 종합적으로 담
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들 업체에게 예산에
서 시설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미곡의 매입자금을 융자
할 수 있도록 함.

- 바. 양곡의 가공 및 유통부문의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허가제로 운용하여온 양곡가공업 및 양곡매매업을 각각 등록제와 신고제로 전환하고 일정규격으로 포장된 양곡을 판매하는 경우나 농민이 생산한 양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신고없이 양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양곡판매의 일부를 자유화함.
- 사. 양곡의 예매, 양곡과 비료의 교환 및 음식판매업자에 대한 혼식 의무화 등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규정을 삭제함.
- 아. 법 또는 행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중한 벌칙을 완화하거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24 (농림수산부공고제1994-50호)

1. 개정취지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철폐하기로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타결과 그에 따른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관세화가 유예된 미곡류를 제외한 양곡에 대한 현행 수입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시장 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양곡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양곡에 대한 현행 수입제한 규정은 삭제하되,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결과 관세화가 유예된 미곡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곡류외의 양곡으로서 관세법 제43조의 8의 규정에 따라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일정한 수량의 농수축산물에 대해 양허한 세율의 적용을 받아 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함.
- 나. 농림수산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저율의 관세로 양곡을 수입하는 자 또는 그 수입양곡을 판매·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양곡의 판매가격, 매도의 방법·시가, 용도제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다. 농림수산부장관은 저가의 수입양곡으로 인한 국내 양곡유통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행계획서 상에 수입이익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기한 양

곡을 수입·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수입자격과 판매가격 차액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부과금은 양곡관리특별회계 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불입하도록 함.

○ 양곡증권법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3.9.6 (농림수산부공고제1993-65호)

1. 개정아유

양곡매입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새로운 양곡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종전의 양곡관리기금의 부채청산을 위한 양곡증권정리기금을 별도로 설치하고 현행 양곡증권법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양곡증권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양곡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종전의 양곡관리기금의 부채를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 상환토록 함.

나. 양곡증권의 발생한도는 기금이 승계한 부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다. 양곡증권 및 차관양곡원리금상환을 위한 기금을 설치함.

라. 기금운용비용과 양곡증권정리를 위한 재원을 매년 예산에 반영토록 함.

마. 종전의 양곡관리기금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기금 또는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승계토록 함.

- 종전의 양곡증권과 차관양곡상환 잔액은 기금이 승계

- 종전의 양곡증권중 한국은행 인수액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특별상각처리토록 함.

- 1993년10월31일 현재 자산중 “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금이 승계토록함.

- 기금이 승계한 이외의 자산과 부채는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승계토록 함.

○ 축산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3.9.4 (농림수산부공고제1993-66호)

1. 개정취지

행정규제완화 및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업의 허가조건을 완화하고

최고기 시장개방의 확대에 대비, 국내 소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규모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등록만 하도록 하고, 등록을 한 축산업자중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출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육용송아지의 평균매매가격이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장가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함.

○ 축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11 (농림수산부공고제1994-46호)

1. 개정이유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축산업의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협동조합을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양축인의 조합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94.5.24)와 공청회를 통하여 확정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94.6.14.)중 협동조합개편 기본방향에 맞추어, 민주적·자율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와 관련되는 축협법의 규정을 신설·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양축가"의 정의를 "양축인"으로 바꾸고, 업종조합의 명칭을 지역명 업종명에 축산업협동조합을 붙이도록 함.

나. 농·수·임업협동조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협동중앙회장을 협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다. 조합설립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조합구역내에 주소·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두도록 한 조합원 자격 요건중 주사업장을 축산경영사업장으로 하며, 1가구 2인까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라. 조합 대의원회의 구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합의 해산·합병과 조합장 선출방식의 선택을 위한 정관의 변경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

치도록 함.

마.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상임이사는 조합장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그 자격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또한 명예직임원에게는 정관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급하도록 함으로서, 조합장등 조합임원을 실질적인 명예직으로 함.

바. 부정사실 발견등 긴급을 요할 때 감사의 총회소집 근거를 신설하고, 조합장 궐위에 대비한 조합장 직무대행 순위를 이사회가 이수중에서 정하도록 함.

사. 조합장에만 적용하던 결격사유중 출자좌수의 제한과 연체채무에 관한 규정을 임원에까지 확대적용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중앙회 및 조합임원의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아. 조합직원은 조합장이 임명하되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는 상임이사의 제청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조합의 전무·상무의 명칭을 간부직원으로 하며, 조합간 직원의 인사교류 근거를 마련함.

자. 중앙회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되어 있던 조합의 여유자금을 수익보장을 위하여 중앙회에 예치하는 외에 국·공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

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합과 중앙회와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의 합병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타. 1구역에 2이상의 업종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며, 신설되는 업종조합의 경우는 신용사업 불인정.

파. 중앙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신용사업 이외의 사업담당 부회장 1인, 신용사업담당부회장 1인, 이사 15인이상, 감사 2인이상을 두되, 회장부회장과 감사중 1인은 상임으로 하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되 구성원 총수의 2/3이상을 회원 조합장인 이사로 하되, 이사중 일부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도록 함. 또한 중앙회장은 조합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하.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추천하도록하고,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는 총회가 회원조합장에서 선출함.
- 거. 부회장의 직근 하급직원으로 집행간부를 두며, 집행간부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직원중에서 부회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
- 너. 중앙회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중 경미한 사항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정책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 더. 비회원조합에 대한 장관의 감독권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회원조합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지도업무와 관련된 감독권에 한함)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하되, 위임 및 위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 러. 이법 시행당시의 조합 간부직원, 중앙회회장, 부회장, 비상임감사 및 감사는 이법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보고 상임이사는 이법에 의해 임명된 집행간부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날로부터 기산함.

◎ 建設

○ 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

예고일자 : 1994.8.26 (건설부공고제1994-236호)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건설기술자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시행절차 및 방법, 부실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한 세부적인 처벌규정과 행정제재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설분야의 기능계 건설기술자와 학력·경력자를 건설기술자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
- 나.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정함.
- 다.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자의 등록을 받아 건설기술자의 경력증명수첩 또는

- 카드를 발급하고, 그 기록사항을 유지 관리하도록 함.
- 라. 건설기술자와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취업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마.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설립함.
- 바.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등의 대상기관을 확대함.
- 사. 건설공사 용역사업 발주시 기술공모에 의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도록 함.
- 아.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행절차,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함.
- 자. 건설공사의 부실벌점에 관한 사항과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차. 건설기술용역 수행자의 성실의무를 정하고 부실한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제재하도록 함.
- 카.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를 상세하고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감리원 및 건설업자는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업자는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함.
- 타. 감리원 수첩교부에 관한 사항과 감리원의 수뢰금지, 결격사유와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파. 감리전문회사의 휴·폐업시 신고하도록 함.
- 하. 부실감리원에 대하여 1년이내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
- 거. 발주자는 그가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사업 및 건설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능력의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자를 우대하도록 함.
- 너.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설계를 부실하게 하여 발주자 또는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더. 감리원의 수첩대여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수첩대여자에게 감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25 (건설부공고제1994-231호)

1. 개정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

가. 지금까지는 건축허가신청을 할 때 건축물의 입지·용도·규모 등 도시환경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구조·설비등 세부기술적인 사항을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실시설계도서까지 제출하도록하여 공무원이 모든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기본계획도서만을 제출하도록하여 공무원은 건축물의 입지·용도·규모등 도시환경에 관한 사항만을 검토하여 허가를 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구조·설비등 기술적인 사항은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책임지고 확인한 후 착공신고시에 실시설계도서를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함.

나. 현재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되, 예외적으로 연면적 85m²(25.7평)이하의 단독주택에 한하여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구조안전 또는 도시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다. 현행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하여 건축주·시공사·감리자등 민간 건축주체들이 창의와 자율에 따라 건축공사를 해나가도록 하되, 공사가 일정한 진도에 다다를때마다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함.

라.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주는 시·군·구에 사용검사 신청을 하여 건축물이 설계도서와 법령에 맞게 건축되었는지를 검사받은 후 사용검사필증을 교부 받아야만 건축물을 사용(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사용검사제도를, 앞으로는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주는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 검사를 하지 않고 감리보고서만을 검토한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

마. 시공자가 위법·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감리자가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

도록 권한을 강화하여 위법·부실시공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감리자가 시공자에 대하여 시공도면(Shop drawing)을 작성하여 시공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공사를 하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자들이 건축공사를 하면서 각종 위법·부실공사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책임과 처벌규정이 없어 위법·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들을 현장관리인으로 하여(착공신고서에 기재) 책임과 처벌규정을 둬으로써 위법·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함.

아. 시·군·구 및 시·도에 건축분쟁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의 자율신장에 따라 늘어나게 될 건축주 및 시공자 등 건축주체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되, 시·군·구에서 1차조정후 이의제기시 시·도에서 2차조정을 하고 조정결과에 대하여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도록 함.

자. 공사계약 및 감리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건축주체 상호간의 권리·의무의 이행여부가 계약에 의해 감시·견제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건설협회 및 건축사협회 등으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하도록함과 아울러 건축주는 시·군·구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공사계약서 및 감리계약서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차. 현재는 정부가 모든 기술적기준을 법령으로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설부장관이 일정한 조직과 연구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건축관련전문단체도 기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술적기준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도록 함.

○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25 (건설부공고제1994-232호)

1. 개정이유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맞춰 우수한 건축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시험제도를 개선하고 건축사가 자유경쟁을 통하여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기술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축사무소제도를 개선하며 기타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현재 건축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력에 따라 일정경력(대학졸업자는 5년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7년이상, 고등학교졸업자는 10년이상등)을 쌓은후 1·2 차시험을 동시에 합격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대학졸업 즉시(전문대학졸업자는 2년,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경력을 쌓은 후)현행 1차시험에 해당하는 건축사보자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건축사보자자격시험 합격자는 5년이상 건축설계·공사감리 등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후 실기위주의 건축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수 있도록하며, 건축분야 기술자격취득자로서 일정 실무경력이 있는 자(기술사:즉시, 기사1급:5년이상, 기사2급:7년이상)는 건축사보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제화·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건축사가 자율경쟁을 통한 능률적인 업무수행과 기술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업에 따른 건축사의 사무소 구분,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를 폐지함.

다. 부실설계·공사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고의·과실로 구조·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에 현저한 위해를 끼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를 보조하는 건축사보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축사의 부실설계 및 공사감리로 건축주에 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책임의 보증과 회원에 대한 자금용자등을 위하여 건축사협회가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외국건축사도 1996년 1월부터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계약에 의

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9.13 (건설부공고제1994-249호)

1. 개정이유

위법한 형질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개선과제로 확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토지나 개간 토지에 대하여는 형질변경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보상하도록 하고, 국공유지를 불법으로 개간한 경우에는 개간비를 보상하지 않도록 함.

나. 지금까지는 공공용도로·관습상도로 및 사실상사도에 대하여는 구분하여 인근토지가격의 5분의 1 내지 5분의 4의 범위안에서 평가하고 있으나, 공공용도로의 평가기준을 현행 5분의 4에서 3분의 1로 하향조정하고 공공용도로와 기타도로에 대한 평가기준을 일치시키도록 함.

다. 앞으로는 건물의 일부만이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잔여건물을 보수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보수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어업권의 보상평가는 수산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어업권의 피해범위와 어획량등의 조사는 수산전문연구기관이 담당하고, 보상평가는 동 전문기관의 조사자료를 기초로 감정평가기관이 평하도록 함.

마. 영농보상액산정시 지금까지는 농작물별표준소득에서 자가노력비를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다년생농작물의 보상기준을 하향조정함.

바. 여러 종류의 가축 또는 가금을 함께 기르는 경우로서 가축의 수가 기준두수에 모자라는 경우로는 지금까지 축산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사육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사. 공공사업의 고시이전부터 관행업을 하던자로서 동일세대안의 세대원이 당해 공공사업으로 어업·기타 영업의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科學技術 · 交通 · 遞信

○ 交通安全진흥공단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9.23 (교통부공고제1994-53호)

1. 개정이유

교통수단의 발달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동차, 철도, 항공, 선박 등의 수송수단 증가와 이용 빈도가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등 교통안전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交通安全진흥공단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단이交通安全과 관련한 기반조성단계를 벗어나 종합交通安全 전문기관으로의 위치를 확고히 함에 따라交通安全진흥공단의 명칭을交通安全공단으로 변경함.

나. 공단부설기구인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설치 및 사업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자동차서비스사업 추진에 대비한 사업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공단의 사업범위에 추가함.

다. 분담금 채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방법을 국세채납처분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함.

라. 국유재산상에 주행시험장과 건물 기타 시설물을 기부채납 조건없이 건설 또는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철도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9.8 (교통부공고제1994-51호)

1. 개정이유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철도건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하사용토지보상과 인접피해건물개축등 사업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신속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도시철도심의위원회를 도시철도관리위원회로 개편하여 도시철도의 통합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타 법의 시행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도시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시에는 관계부처협의후 도시철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중 국무회의 보고 절차를 생략함.
- 나. 도시철도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시 관계서류는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 게 별도로 통보되므로 일반인 공람기간을 현행 30일이상에서 14일이상으로 단축함.
- 다. 도시철도건설자가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구분지상권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용의 재결을 받은 때에는 도시철도건설자가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라. 도시철도의 건설이나 개량공사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주차장법 제 19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봄.
- 마.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도록 함.
- 바. 도시철도심의위원회를 도시철도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철도사업 주체간 이견조정기능을 명문화하여 기능을 보강함.
- 사. 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17 (교통부공고제1994-48호)

1. 개정이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관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자동차이용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의 모든 용어를 한자표기에서 한글표기로 바꾸어 국민이 자동차관리법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자동차의 등록원부관리 및 신규등록등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나. 자동차를 판매한 사업자에게 신규등록신청의 대행을 의무화하여 자동차구매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무등록상태에서 차량이 운행될 소지를 사전 예방함.
- 다. 자동차등록번호는 등록관청이 전산망에 의하여 순서대로 이를 부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제시하는 번호중에서 자동차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라. 자동차 정기점검 제도를 자율점검 제도로 전환하여 자동차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함.
- 마. 자동차소유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계속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검사를 받도록 명하던 최고 절차를 폐지하고, 검사미필자에게 부과하던 벌금 및 과태료를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완화함.
- 바. 자동차정비업체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업체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정기검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함.
- 사.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아.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단체가 중고자동차 경매장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고자동차 유통구조의 현대화 및 적정가격 형성을 도모함.
- 자. 경미한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 전기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9.24 (체신부공고제1994-153호)

1. 개정취지

급속한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통신환경변화에 맞추어 소규모 단순공사를 시공하는 별종공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기준 완화와 공사업 개시신고 폐지등 공사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쟁

을 촉진하고 전기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종공사업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등록제로 완화하여 신규진입을 용이하게 함.

나.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기준중 공사용기기에 관한 사항 및 공사업 개시신고의무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함.

다. 통신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발주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괄발주를 인정함.

라.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이 저조한 경우 공사업의 영업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으나 별종공사업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소규모업자를 보호함.

○ 한국해운조합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10.7 (교통부공고제1994-56호)

1. 개정취지

국내외 해운환경의 자율·개방화 추세와 정부의 경제행정규제완화 시책에 맞추어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크게 완화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한국해운조합이 당면하고 있는 조합원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내항해운업의 자율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의 업무에 신용사업, 내항선박 전산화업무등을 추가하여 조합의 역할 및 기능을 보다 강화함.

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업체로 하여 내항해운업자 중심으로 해운조합을 육성·발전해 나가도록 함.

다.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각각의 기능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라. 조합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하거나 무상사용·수익하게 한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객터미널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環境 · 保健

○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9.8 (환경처공고제1994-57호)

1. 개정취지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배기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며, 지역별 대기환경기준달성을 위한 각종 대책추진을 환경처장관의 지도를 받아 관할 시·도지사가 직접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기환경보전에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각국이 기후·생태계변화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들 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대체물질 개발등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나. 환경처장관은 대기오염도(오존)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오존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다. 시·도지사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대기오염개선을 위하여 관할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배출실태를 파악하고 연도별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추진하도록 함.

마. 시·도지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에 매연을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게 하거나, 연료의 연소시 저오염연소기(저NOx버너)를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사업주가 대기오염물질배출을 스스로 줄이도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함.

사. 국민생활에 심한 불편이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화력발전소 같은 시설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아직까지 관리되고 있지 않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주유소등)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도록 함.

자. 운행중인 자동차의 효과적인 대기오염 저감대책으로 배출가스 오염방지장치등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소유자에게 공해저감을 위해 필요한 정비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9.8 (환경처공고제1994-58호)

1. 개정취지

공공수역의 오염부하량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등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환경오염사고시의 사전예방조치와 오폐수처리제의 관리규정을 두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시·도지사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할 때에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배출부과금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자 및 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에 대해서 배출량등의 비율에 따라 부과·징수함.
- 조업정지등으로 인하여 주민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는 병원, 제련소등에 대해서는 조업정지등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함.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만 하던 것을 민간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함.
- 유류유출등에 의하여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방제조치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등에 따른 수질오염확산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방제조치와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징수 규정을 둬.
- 수질오염사고를 야기시킨 자 및 최초 발견자등에 대해서는 관할 환경관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

-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송유관, 유류 및 유독물저장시설등의 특정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예상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사고를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하여 특정시설 설치자의 출연금 등으로 수질오염방제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분뇨처리시설등 공공시설의 원활한 입지확보를 위해 공공시설설치예정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도시기본계획등에 반영하도록 함.
- 오·폐수처리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조업등록을 하고, 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도록 함.

○ 의료기사법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11 (보건사회부공고제1994-78호)

1. 개정이유

안경업소에 대한 고객의 알선·소개 기타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며 벌칙요건을 일부 조정하고 벌금액 및 과태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등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관한 조항이 각각 별도조항으로 되어 있어 준용규정이 많고, 법조문의 해석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정비함.
- 나.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1인 2개소 이상의 업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업소의 운영의 충실을 기하도록 함.
- 다. 안경업소의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안경업소에 대한 고객알선·소개 기타 유인행위를 금지함.
- 라. 협회가 목적을 벗어난 사업수행을 할 경우 정관의 변경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마. 면허취소후 2년간은 면허증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면허취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사. 벌칙요건을 일부조정하고 벌금액 및 과태료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함.
- 아. 기존 뇌파검사등 생리학적검사 분야 종사자에 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임상병리사 시험응시에 있어 일부시험과목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함.

○ 의료분쟁조정법안

예고일자 : 1994.9.3 (보건사회부공고제1994-90호)

1. 제정취지

의료인과 환자사이에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정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의료과실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지방의료분쟁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각 위원회에 사무국을 둠.
- 나. 중앙조정위원회는 헌혈 또는 수혈부작용 및 의료용구부작용으로 인한 의료분쟁 및 2개 시·도 이상의 관할에 속하는 의료분쟁의 조정을 담당하고 지방조정위원회는 당해 시·도안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을 조정함.
- 다. 중앙 및 지방조정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1/3은 변호사 및 법률학교수 등으로, 1/3은 의료인으로, 1/3은 소비자대표로 함.
- 라. 의료분쟁에 관한 조사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조사소위원회를 둠.
- 마. 조정위원회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직원으로서 조사관을 둠.
- 바.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계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해당 의료기관이 소재한 시·도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조정신청은 의료사고를 안 날부터 3년, 의료분쟁의 원인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내에 제기하도록 함.
- 사. 의료분쟁에 관한 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결정을 거치거나 이 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한 후 12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아. 조사소위원회의 조정결정은 관계당사자가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
- 자.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배상금은 의료기관이, 헌혈 또는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은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용구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은 의료용구의 제조업소와 수입회사가 각각 부담함.
- 차. 의료기관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카. 배상금 또는 보상금으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 타.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상속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조정사건의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조사·조정 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파.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되 다만, 당해 의료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하. 정당한 권한없는 제3자가 조정사건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30 (보건사회부공고제1994-85호)

1.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가. 개정이유

지방자치제 실시에 맞추어 그 체계에 맞게 자치단체의 명칭을 개정함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중요한 보건문제중 하나인 “만성 B형간염”에 대한 예방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 질환을 제3종법정전염병에 포함시키고 “B형 간염”을 정기예방접종 시행대상 질환으로 추가하기 위함.

나. 개정의 주요골자

- ① “만성 B형간염”을 제3종전염병에 포함시키고 “B형간염”을 정기예방접종의 시행대상 질환에 추가함.

- ②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자치 체계에 맞게 개정함(“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9.5 (환경처공고제1994-56호)

1. 개정취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추진으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아울러 지역별 폐기물처리책임원칙을 강화하고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폐기물을 유해성 여부에 따라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함.
- 나. 지역별처리책임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 전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함.
- 다. 폐기물의 광역관리를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시·도지사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사업장폐기물 처리까지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마. 일반폐기물배출자,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특정폐기물배출자별로 각각 달리 규정하던 폐기물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규정함.
- 바. 폐기물 발생량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업종 별로 폐기물 발생량을 총량 또는 종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정폐기물배출자는 환경처장관에게, 일반폐기물배출자는 시·도지사에게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함.
- 아.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 일반폐기물처리업과 특정폐기물처리업으로 구분된 폐기물처리업을 통합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업종별로 환경처장관으로부터 받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에 폐기물재활용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을 추가함.

차.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처리가 되도록 함.

타.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형식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형식승인대상시설의 성능시험, 형식승인의 표시, 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사항을 정하고자 함.

파. 일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기술관리인 임면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자 함.

하. 폐기물처리담당자에 대하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자 함.

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사항을 기록하는 장부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고자 함.

너. 폐기물재활용신고의무자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에 준하는 처리비용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더. 사후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스스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예고일자 : 1994.8.13 (환경처공고제1994-49호)

1. 제정취지

일상생활 및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역별 필수기반시설이며, 모든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임에도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시설설치가 어려워 환경보전 및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와같이 부정적인 요인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시설설치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별 필수기반시설로 설치되도록 도시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대규모 개발·조성사업시 사업시행전에 처리시설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를 해태할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나. 폐기물처리비용을 입지지역과 비입지지역간에 차등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자 함.
- 다. 처리시설의 입지조사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민불만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상피해에 대한 사전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타용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시설지구지정제를 도입하고 토지의 수용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함.
- 마. 시설주변영향지역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고, 직접영향권에 대하여는 집단이주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바. 처리시설 영향지역에 각종개발사업의 유치가능하도록 토지이용 허용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설치함.
- 사. 시설설치에 따른 피해보상 및 주변지역주민의 지원방법 결정을 위한 주민협의를 영향권의 주민의 관여를 제한함.
- 아. 적정시설모델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부대시설까지 시설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하도급 제한 및 지역주민상주감시원 제도 근거를 마련함.
- 자. 효율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소각·매각·재활용 등 통합처리시스템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민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法院 · 法務

○ 공무원부정범죄수익의몰수등에관한특례법안

예고일자 : 1994.10.7 (법무부공고제1994-15호)

1. 제정취지

문민정부 출범후 “깨끗한 정부”의 실현을 목표로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척결을

위한 강력한 사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아직도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몰수대상재산의 확대

- ① 특정공무원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몰수보다 그 대상을 확대
- ② 특정공무원범죄 : 형법상 뇌물죄, 회계관계직원에 의한 국고등 횡령·배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죄 및 국고손실죄
- ③ 회계관계직원에 의한 국고등 손실죄와 관련된 불법재산도 몰수가능
- ④ 몰수대상재산을 특정공무원범죄로 직접 얻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확대

나. 불법수익의 추정

- ① 몰수대상 확대에 따른 입증의 불가능 또는 어려움을 제거하여 그 실효성 제고
 - 그 기간내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범인의 재산운용상황 또는 범령에 기한 급부의 수령상황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고액이라 인정되고
 - 그 취득한 재산이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불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죄에 관련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

다. 몰수재산처분의 특례

- ① 회계관계직원에 의한 국고등 손실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가의 특별회계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대하여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요구 가능
- ② 국가는 위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범죄행위와 관련 몰수·추정으로 국고에 귀속된 금원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급

라. 몰수추정보전제도의 신설

- ① 몰수·추진을 피하기 위한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불법재산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② 기소전 또는 기소후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몰수·추징보전 명령을 발하여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
- ③ 부동산, 동산, 채권등 몰수·추징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른 세부적 보전 절차 및 기타절차와의 조정 규정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11 (법무부공고제1994-12호)

1. 개정취지

우회적 상속의 여지를 축소하고자 상속세를 면제하는 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93.12.31.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회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보호관찰법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11 (법무부공고제1994-13호)

1. 개정이유

현행 출소자 사후관리 관련 법률이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으로 2원화됨에 따라 업무중복 및 혼선을 시정하고 상호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출소자 사후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출소자 사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보호관찰의 업무를 규정한 「보호관찰법」에 「갱생보호법」을 흡수 통합하여 전문개정하고, 전문개정된 법률의 명칭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함.

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제를 폐지하는 대신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실조사 및 심사자료 검토·보고를 주된 임무로 하는 심사관제를 신설하고(제10조제2항) 그 직급을 2급내지 4급상당의 별정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하향조정함.

다. 현행 “보호위원”을 “보호선도위원”으로 개칭하고(제18조 등), 특정 보호

- 관찰대상자의 지도·원호를 담당할 특별보호선도위원을 보호관찰소의 장이 적시에 위·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라.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에 갱생보호업무 및 검사로부터 위탁받은 선도·교육의 실시업무 등을 명문화 함.
- 마. 소재불명된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정지제도를 가퇴원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 바. 갱생보호의 방법중 관찰보호 관계규정을 삭제하여 갱생보호사업은 숙식제공, 생업조성금품지급,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범법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직접 원호업무에 특성화 하도록 함.
- 사. 갱생보호회를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개칭함.
- 아. 갱생보호회의의 사무소, 정관, 감사, 설립등기 관계규정을 신설함.
- 자. 한국갱생보호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의 설치를 법제화 함.
- 차. 갱생보호위원의 자격요건을 기금의 출연, 취업처의 제공 등 직접적인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로 특성화 함.

○ 입양특례법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9.1 (보건사회부공고제1994-88호)

1. 개정취지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로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합리적인 입양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입양특례법상 국내입양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범명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으로 함.
- 나. 모든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야 하며 이것이 곤란한 경우 입양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입양아동의 건전양육에 협력해야 함을 규정함.
- 다. 입양대상아동의 범위를 보호시설에 의뢰된 자에서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자까지도 포함하여 확대함.
- 라. 입양시에는 입양기관을 경유하도록 함.
- 마. 양자될 자를 양친될 자의 친생자 또는 입양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친생자로 신고함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정함.

- 바.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파양청구소송의 제기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입양알선기관장의 후견직무 재개 및 파양된 아동의 시설보호조치를 규정함.
- 사. 입양기관이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아. 입양기관의 업무범위를 양부모 사전교육, 사후관리, 국외입양자에 대한 모국방문사업 등으로 하고 이를 의무화함.
- 자. 입양기관에 대한 허가취소등 행정처분시 먼저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
- 차. 입양가정에 대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주택분양시 우선알선, 전문사회사업서비스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 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중 일부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음.
- 타.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외 입양알선업무를 행하거나 입양기관이 허가취소등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신설함.

○ 행정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8.25 (법무부공고제1994-14호)

1. 개정이유

- 가. 행정법중 시대적 변화에 부적합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선진교정제도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설정함.
- 나. 미결수용자에게만 적용된 규정을 명문화하여 수형자에 적용되는 규정과 명확히 구분하여 정비함으로써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수형자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것을 구체적 준용규정으로 바꾸고 조문별로 수형자에 관한 규정과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및 미결수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 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도록 변호인 접견 규정을 신설함.

- 다. 친족이 아닌 자와의 접견·서신은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하였으나 “교화상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접견·서신에 관한 규정을 대폭 완화함.
- 라. 징벌의 종류중 7일 이내의 감식, 2월 이내의 접견·서신금지, 2월 이내의 작업정지, 5일 이내의 운동정지를 삭제하고, 3월 이내의 도서열독금지는 1월 이내의 도서열람제한으로 기간을 단축함.
- 마. 계구의 종류중 방서구를 폐지하고, 수용자자해방지에 필요한 안면보호구로 대체하며, 계구의 양식·사용방법을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함.
- 바. 행형성적이 우수하여 사회적 처우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개방시설에 수용, 개방처우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 사. 수형자의 사회생활적응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기업체등에 외부통근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 아. 미결수용자에게 식량, 의류의 자변을 원칙으로 한 규정을 고쳐, 본인이 자변을 원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자변을 허가하도록 함.

IV. 최신법령 목록

(1994.8.11. ~ 1994.10.10)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조 약 1236	대한민국정부와불가리아공화국정부간의사증 면제에관한교환각서	1994. 8.22
1237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1994. 8.22
1238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	1994. 8.22
1239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 국제전기통신연합협 약및업무규칙에관한분쟁의해결에관한선택의 정서	1994. 8.22
1234	대한민국정부와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동기구 산하과학기술정책위원회가입에관한각서교환	1994. 9.12
1240	대한민국정부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 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 를위한협정	1994. 9. 7
1241	대한민국정부와스페인왕국간의투자의상호증 진및보호에관한협정	1994. 9.22
1242	대한민국정부와스페인왕국간의경제협력에관 한협정	1994. 9.22
1243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소득 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 협약	1994. 9.29
1244	대한민국정부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 의문화협력에관한협정	1994. 9.29
1245	대한민국정부와뉴질랜드정부간의사증면제에 관한교환각서	1994. 9.29
1246	대한민국정부와루마니아정부간의소득및자본 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 협약	1994.10. 8

공 포 번 호	진 명	공포연월일
대 통 령 령 14359	국방부군비검증단령	1994. 8. 19
14360	국방군수본부령개정령	1994. 8. 19
14361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8. 19
14362	천기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8. 19
1436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4. 8. 19
14364	직업훈련심의위원회규정중개정령	1994. 8. 23
14365	선박직원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8. 23
14366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8. 23
14367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1994. 8. 25
14368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개정령	1994. 8. 25
1436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8. 25
14370	검사정원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8. 31
14371	군검찰사무운영규정중개정령	1994. 8. 31
14372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4. 8. 31
14373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시행령	1994. 9. 1
14374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9. 5
14375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9. 8
14376	발명진흥법시행령	1994. 9. 9
14377	귀순북한동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9. 9
14378	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9. 9
14379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9. 9
14380	국가정보연수원설치령	1994. 9. 9
1438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9. 13
14382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9. 16
14383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9. 17
14384	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개정령	1994. 9. 22
14385	국방부군사법운용지원단령	1994. 9. 24
14386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4. 9. 24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4387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 9. 24
14388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1994. 9. 26
14389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1994. 9. 26
14390	재외공무원복무규정증개정령	1994. 9. 29
14391	지방재정법시행령증개정령	1994. 9. 30
14392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증개정령	1994. 9. 30
14393	군인복무규율증개정령	1994. 9. 30
1439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령증개정령	1994.10. 4
14395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개정령	1994.10. 4
14396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증개정령	1994.10. 4
14397	병역법시행령개정령	1994.10. 6
14398	산업재해보상보험금지급규정증개정령	1994.10. 7
총 리 령 462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증개정령	1994. 8. 23
463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1994. 9. 13
464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 한규칙	1994. 9. 13
465	상수원관리규칙증개정령	1994. 9. 24
466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증개정령	1994. 9. 30
외 무 부 령 176	여권법시행규칙증개정령	1994. 8. 31
내 무 부 령 624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증개정령	1994. 9. 3
625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증개정령	1994. 9. 3
626	도로교통법시행규칙증개정령	1994. 9. 10
627	청원경찰법시행규칙증개정령	1994.10. 1
재 무 부 령 1992	정부보관금취급규칙개정령	1994. 8. 20
2000	시설대여업법시행규칙증개정령	1994. 8. 20
2001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증개정령	1994. 8. 25
200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증개 정령	1994. 8. 25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2003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0. 4
국 방 부 령 447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개정령	1994. 8.23
448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9.10
449	군인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9.30
교 육 부 령 654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4. 8.30
655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9.26
문화체육부령 1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1994. 8.12
농림수산부령 1152	어항법시행규칙	1994. 8.19
1153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1994. 8.20
1154	비료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9.26
상공자원부령 47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9.17
건 설 부 령 559	특정다목적댐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8.12
560	건축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8.13
561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8.16
562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4. 8.16
563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8.17
564	주택건설공사감독업무등에관한규칙폐지령	1994. 9.15
보건사회부령 937	공중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8.11
938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정중개정령	1994. 8.13
93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8.13
940	마약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8.13
94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1994. 8.25
942	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령	1994. 8.25
943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9.12
944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1994. 9.12
945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9.27
946	의료보험법시행규칙개정령	1994. 9.27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947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협법시행규칙 중개정령	1994. 9.27
948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1994. 9.27
교 통 부 령 1030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시행규칙	1994. 9.12
103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0. 1
체 신 부 령 877	무선설비형식검정및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중 개정령	1994. 9.13
878	전자파장해검정규칙중개정령	1994. 9.13
879	우편법시행규칙개정령	1994. 9.13

국내입법의견조사 94-5 입양제도의 개선

1994년 12월 25일 印刷

1994년 12월 30일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주) 한국컴퓨터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값 4,000 원

